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경영학박사 학위논문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예견되는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권에 관한 연구
- CISG와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



2011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학원

국제지역학연(협) 국제통상전공

이 재 현

경영학박사 학위논문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예견되는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권에 관한 연구
- CISG와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은 채

이 논문을 경영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학원

국제지역학연(협) 국제통상전공

이 재 현

이재현의 경영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1년 2월



목 차

ABSTRACT	v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7
제 3 절 선행연구	9
제 2 장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권의 개관	14
제 1 절 이행기의 구제권	15
1.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구제권	15
2. 매수인의 의무와 매도인의 구제권	28
3. 계약해제권	32
제 2 절 이행기일전의 구제권	42
1. 이행정지권	42
2. 계약해제권	44
3. 손해배상청구권	49

제 3 장 이행기일전 구제권의 이론적 고찰 및 판례분석 ... 51

제 1 절 이행기일전 이행정지권의 이론적 고찰	53
1. 이행정지권의 요건	53
2. 이행정지권의 행사 및 효력	56
3. 매도인의 운송정지권	58
4. 이행정지권의 소멸	61
제 2 절 이행기일전 이행정지권 관련 판례분석	63
1.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행정지권 행사의 사례	63
2. 적합한 이행정지권 행사 사례	69
3. 운송정지권에 관련된 사례	72
4. 이행정지의 통지에 실패한 사례	74
5. 대금지급의 지연으로 이행정지권이 인정된 사례	78
6. 상대방의 계약이행과정에 대해 이행정지권이 인정된 사례	80
7. 소결론	83
제 3 절 이행기일전 계약해제권의 이론적 고찰	89
1. 이행기일전 계약해제권	89
2. 분할이행계약에서의 계약해제권	95

제 4 절 이행기일전 계약해제권 관련 판례분석	100
1. 견본의 지연인도로 계약을 해제한 사례	100
2. 대금지급 거절로 계약해제권이 인정된 사례	102
3. 대금지급의 실패로 계약해제권이 인정된 사례	106
4. 물품의 불인도로 분할이행계약을 해제한 사례	108
5.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분할이행계약 해제사례	111
6. 지급거절이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인정된 사례	113
7. 소결론	116

제 4 장 이행기일전 구제권 적용상의 문제점과 실무적 대응방안

122

제 1 절 이행정지권	124
1. 이행정지권 적용상의 문제점	124
2. 실무적 대응방안	125
제 2 절 계약해제권	127
1. 계약해제권 적용상의 문제점	127
2. 실무적 대응방안	128
제 3 절 계약해제시의 손해배상청구권	131
1. 계약해제시 손해액의 산정	131
2. 실무적 대응방안	131

제 5 장 결론	133
참고문헌	137
부록 : CISG 계약국목록	149



**The Remedies on the Anticipatory Breach
i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Focusing on the CISG and its Cases -**

Lee, Jae Hyun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and Commerce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n a reciprocal contract such as a sales contract, if a party willing to perform its obligation anticipates the other party's future breach, should nevertheless perform its own obligation by the contract even the future breach becomes evident or clear. Subsequently, it falls into an unfair position in the contract.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provides some provisions of preparatory remedy of innocent party facing the other party's future breach. That is, the right of suspension(Art. 71), the right of avoidance before the time of

performance(Art. 72), and the right of avoidance of instalment contracts(Art. 73). These provisions enable the innocent party suspecting future breach to suspend its own performance or even to avoid the contract in advance. However, a party which alleges anticipatory breach and invokes remedies thereof, should aware of their hazardousness since these remedies become its own repudiation of performance when they are exercised inappropriately. Significant features that a party should note are as follows :

First, A Party may suspend its own performance when "it becomes apparent" that the other party will not perform "a substantial part" of its performance. And the party suspending performance must immediately give notice to the other party and must continue with performance when the other party provides adequate assurance of his performance or the disturbance ceases.

Second, to avoid the contract before time of performance, a party may invoke Article 72 of CISG. This article provides that the innocent party may declare avoidance of the contract when it is clear that the other party will commit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prior to the date for performance. The innocent party may declare avoidance when it is "clear" that the breach will amount up to a "fundamental breach". In this case, the party intending to declare the avoidance of the contract must give a reasonable notice to the other party if time allows.

Third, Article 73 (2) allows the party to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with respect to a future instalment. If one party's failure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s with respect to any instalment gives the other party

good grounds to conclude that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will occur with respect to future instalments, the other party may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for the future instalment. The declaration of the avoidance should be sent in a reasonable ti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guidelines of these provisions mentioned above and exercise thereof for whom engages in business.

When relying on the CISG, the parties should understand the essentials of the dispute about the liability of their obligation. Moreover, they should understand the essentials, conditions and provisos of the remedies. Thus, this study provides precautions in light of practical affairs and considers the invocation and the application of the remedies for the parties of business, by means of the investigations of some international cases of the remedies to make decisions about liabilities in diverse situations. This study is expected to possibly become guideline in practical business, by actual parties of business apply the knowledge of the breach of the contract and the remedies.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기업은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서 필요한 자원을 획득¹⁾한다. 이러한 과정은 구매라는 행동으로 이루어지고, 구매는 공급자의 판매와 함께 매매(賣買)라는 경제주체간의 행위를 완성한다. 일련의 매매는 계약²⁾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³⁾ 계약은 교환(거래)의 조건을 정의하는 것으로, 거래쌍방이 서로 상대방이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는 사항들을 나열하고 있으며, 상대방이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하는가도 규정하고 있다.⁴⁾ 그러나 계약의 불완전성(non-completeness)⁵⁾으로 인해 거래가 원만히 이행·종료되지 않을 수 있는데, 계약법의 존재는 이러한 제반문제들을 어느 정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술한 일련의 과정과 문제는 국제거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불완전계약의 요인은 국제거래에서 더 나타나기 쉬울 것인 바, 기업(국제상사)

1) 기업이 시장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 다시 말해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는 이유는 시장기업들이 일반적으로 더 효율적이라는 간단한 개념에서 나온 것이다. ... 기업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활동들은 독립기업에 아웃소싱 해야 한다는 것이 전통적 지혜이다. (D. Besanko, D. Dranove, M. Shanley, S. Shaefer, *Economics of Strategy*, 3rd Ed., John Wily & Sons Inc., 2002.; 박원규 역, 「전략경제학」, 시그마프레스, 2005 (이하 박원규 역, 전략경제학이라 한다), 137면).

2) 계약을 하는 이유는 기업들이 거래상대방을 완전히 믿지 않기 때문이다(박원규 역, 상계서, 145면).

3) 오원석, “계약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무역거래과정의 이해”, 「무역상무연구」 제4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9, 3~4면.

4) 박원규 역, 상계서, 144~145면.

5) 계약을 불완전하게 하는 요인은 제한적 합리성, 비대칭적 정보, 이행사항 규정과 확인의 곤란 등이 있다(박원규 역, 상계서, 145~148면).

과 기업인은 이를 교정하기 위하여 계약과 계약법에 관하여 통달할 수는 없더라도 이에 대한 일정 수준의 이해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원석(2009)⁶⁾은 국제무역거래의 중심인 물품거래의 수출과 수입에 관련하여 국제무역을 절차중심이 아니라 계약중심으로 접근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는 수출입거래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매매당사자간 체결되는 매매계약의 성립·이행 및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무역거래를 법리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실무자들에게 있어 국제물품매매에서의 계약과 계약법, 즉 이를 규정하고 있는 준거법(governing law)을 이해하는 것은 계약의 불완전성과 불확실성(uncertainty)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⁷⁾

또한 국제물품거래는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하고 있는 거래 당사자 간에 체결되는 매매계약(sales contract)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각국은 이러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용법규를 달리하고 있고 그 해석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불확실성의 문제가 대두된다. 그렇다고 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할 수도 없으며, 당해 계약에 어느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그리하여 국제물품매매에 적용될 법률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국제물품매매계약을 통일적으로 규율할 법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필요에 의해 오래 전부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동일한 법원칙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다. 20세기 초반부터 계속되어진 이러한 노력은 1980년 제정된 UN 국제물품매매 계약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이하 CISG라 한다.)⁸⁾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CISG는 전

⁶⁾ 오원석, 전계논문, 3~4면.

⁷⁾ 잘 발달된 계약법 체계는 계약이 불완전한 경우에도 거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준다(박원규 역, 전계서, 148면).

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국제물품매매계약을 규율하고 상이한 사회적·경제적 및 법적 제도를 고려하는 통일법의 채택으로 국제거래에서 법적 장애를 제거하는데 기여하고 국제거래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국제물품매매에서 국가 간 상이한 국내법규의 적용을 배제하고 통일된 관습을 성문화하여 국제물품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함이다.⁹⁾ 우리나라는 2004년 2월 17일에 가입을 하였고 2005년 3월 1일부터 국내에 발효되었다. CISG의 큰 특징은 그 목적 면에서 국제성과 통일성의 증진에 있지만¹⁰⁾ 양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구제권 포함)와 의무를 체계적으로 규정하였다는 것¹¹⁾과 계약이 원활히 유지·이행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¹²⁾

하지만 CISG는 그 제정과정에서 영미법계, 대륙법계, 이슬람법계 및 사회주의법계의 통합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그 제정과정에 어려움이 많았고, 이에 따라 CISG가 계약에서 규율하는 범위는 다소 제한되어 있다. 또한 CISG에 가입하고 그 효력이 국내에 발효되는 국제조약이라는 협약의 특성

8) 20세기 초부터 계속된 노력은 몇 차례의 대전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좌절되어 왔는데, 1966년 UN은 국제무역법의 점진적인 조화에 관심을 가지기로 결의하고 국제연합 국제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UNCITRAL)를 발족하였고 1968년 1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국제거래법의 점진적 조화와 통일의 촉진에 목적을 두고 설립된 동 위원회는 ULIS와 ULF 두 통일법-1964년 헤이그협약에서 채택된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통일법(Uniform Law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ULIS)과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통일법(Uniform Law on the Formation of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ULF)-을 놓고 각국 정부의 의견을 청취하여 본 결과, 이 통일법들이 국제적으로 널리 채용될 전망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양 통일법을 각국이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개정작업을 시작하였다. 위원회는 1970년부터 1978년까지 위원 구성에 주의를 기울여 양 통일법의 개정작업을 수행하였고, 1978년에 다시 한 번 미비점을 수정한 후에 두 개의 개정초안을 하나로 하여 발표하였다. 1980년 유엔총회는 비엔나에서 외교 회의를 개최하였고 초안에 다시 한 번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을 채택하였다.

9) 2010년 10월 현재 CISG에 가입한 국가는 76개국이며, 터키와 도미니카 공화국 두 나라가 올해 비준서를 기탁하여 2011년에 그 효력이 양 국가에 발효될 예정이다(부록 : CISG 제약국목록 참조).

10) 강호경, “비엔나 협약의 해석”, 『국제무역연구』 제8권 제2호, 한국무역통상학회, 2002, 55면, 60면.

11) 양영환·오원석·박광서, 『무역상무』, 삼영사, 2008, 492면.

12) 최준선, 『국제거래법』, 삼영사, 2008, 205면.

때문에 그동안 많은 국가들이 이에 가입을 꺼려왔었다.¹³⁾ 이에 사법통일국제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 UNIDROIT)¹⁴⁾는 1994년 비입법적(non-legislative)인 방법으로 법의 통일 내지는 조화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 PICC)(이하 PICC라 한다.)¹⁵⁾을 채택하였다. PICC는 기존의 상관습법(lex mercatoria)과는 달리 그 내용이 자세하고 명료하며, 각 조항과 주해 및 실례를 포함하고 있어 UCC(Uniform Commercial Code, 미국통일상법)의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와 같이 CISG의 리스테이트먼트 기능을 할 수 있다.¹⁶⁾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당사자들은 계약에 따른 각자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한 당사자가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계약위반이 발생하면, 피해당사자는 위반당사자의 의무의 위반을 근거로, CISG¹⁷⁾나 PICC¹⁸⁾의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CISG의 경우 매수인은 CISG 제45조에서 제52조까지

13)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2010년 현재 76개국이 CISG의 계약국이며, 이에 영국을 제외한 대다수의 무역국이 포함되어 있다.

14) UNIDROIT는 ULIS와 ULF의 제정을 주도했었다.

15) UNIDROIT 원칙은 2004년에 개정되어 초판의 한 조항을 변경하고 몇 개의 주석을 변경하였다. 2004년 신판의 내용은 초판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총 18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UNIDROIT 이사회는 2004년 신판의 서문에서 UNIDROIT 원칙이 1994년부터 10년간 실무에서 획기적인 기대를 넘어서는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16) 따라서 동 원칙은 CISG와 동등한 통일법이 아닌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특히 CISG를 보충하거나 해석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오원석,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CISG와 UNIDROIT Principles의 내용상 차이와 상호관계”, 『국제상학』 제15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0, 87면.).

17) 단 계약의 준거법으로 CISG가 적용되어야 한다. CISG는 협약 제1편 제1장에서 협약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되며, 해당 국가가 모두 계약국인 경우, 또는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계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동 협약을 계약의 준거법으로 원용할 수 있다. CISG는 계약에 그 적용을 명기하지 않더라도 양 당사자의 국가가 계약국인 경우, 한 당사자가 계약국인데 그 당사자의 국내법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에도 원용할 수 있다.

18) PICC의 적용에 관하여 PICC는 동 원칙의 전문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다. PICC는 당사자들이 그들의 계약이 본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합의한 경우에, 당사자들이 그들의 계약이 “법의 일반원칙”이나 “상인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고 합의한 경우에, 당사자들이 그들의 계약에 적용될 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으며, 덧붙이자면 PICC는 국제적인 통일법규범을 해석 또는 보충하는데, 국내법을 해석하거나 보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규정된 구제수단을 통하여 그의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매도인은 CISG 제61조에서 제65조까지 규정된 구제수단을 통하여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CISG 제71조에서 제79조까지는 양 당사자에게 공통된 구제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PICC는 제5장에서 당사자의 의무를, 제6장에서 이행일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7장에서 CISG의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불이행과, 그에 따른 구제권을 규정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기 자신의 의무의 각 이행기(time of performance)에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기는 당해 매매계약에서 약정되고 당사자들이 거론하지 않은 사안은 CISG에 의하여 보충되어 결정된다.¹⁹⁾ 그러나 이러한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나 상대방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 판명되거나 혹은 명백하여 진다면, 당사자는 자신의 의무이행에 대한 대가를 기대할 수 없음에도 계약과 협약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즉, 경우에 따라 그러한 미래의 위협(threat)때문에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혹은 계약이 부여하는 그의 옹당한 권리를 누릴 수 없음에도 자신의 의무만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CISG는 제3편 제5장의 제1절에서 이행기 이전의 예견되는 계약위반에 대한 이행정지권 및 사전 계약해제권과 분할인도계약의 장래의 계약위반에 대한 계약해제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PICC 역시 동조 제7.3.3조 및 7.3.4조에서 불이행의 예견에 대한 구제권이 규정되어 있다. 당사자는 이러한 ‘예견되는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권’을 통하여 그의 권리를 보장·보호받아야 한다.

한편 CISG는 어떠한 국가의 국내법에도 의존하지 않는 자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영미법과 대륙법의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해석상의 견해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CISG 제3편 제1장에서 제4장까지 규정하고

19) 허해관, “국제물품매매협약상 상대방의 계약위반이 예견됨에 따른 대응수단”, 『무역학회지』 제34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09, 92면.

있는 매수인과 매도인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및 구제권과 손해배상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있으나 제5장 제1절의 이행정지권, 이행기일전 계약해제권, 분할이행계약에서의 계약해제권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계약해제와 관련한 연구에서 이행기일전 계약해제권 및 분할이행계약해제권을 언급하는 경우는 있으나 이 또한 충분하지는 않다.

특히 본고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구제권들은 자칫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자신이 계약위반을 범하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요건과 효력에 대하여 숙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많은 사례들에서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불이행 혹은 계약위반이 자신의 계약상 의무를 자동적으로 무효화하고, 상대방의 계약위반 혹은 장래에 그러할 징조가 드러나면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무이행을 정지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역으로 계약위반을 저지르고 마는 우를 범하는 경우들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이행기일전 구제권들은 그 행사에 요구되는 전제조건이 모호하여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고,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과 그 효력에 있어서도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를테면 이행정지권의 경우 그 전제조건인 ‘상대방이 그 의무의 어떤 실질적인 부분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게 판명되는 경우’에 대하여, 실질적인 부분(substantial part)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인지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행기일전 계약해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장래에 상대방이 중대한 계약위반을 할 것이라는 것이 명백하여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가 중대한 계약위반을 구성하는지, 그 개연성이 어느 정도여야 명백한 정도인가 하는 의문이 발생한다.

분할인도분의 장래분에 대한 계약해제권에서도 현재 수령한 상대방 의무의 계약부적합이 어느 정도여야 협약에 따라 장래의 인도분에 대한 계약해

제를 선언할 수 있는지 CISG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본고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이행기일전 구제권에 대하여 그 의의와 행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실무상 행사의 유의점을 제시하여 이 조항들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실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와 당사자 간에 발생 가능한 분쟁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

둘째, 다양한 상황에서 논제에 관한 위반발생여부와 효력이 달라질 수 있는 바, 그에 관한 실무상 유의사항을 제공하여 실무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국제거래의 특정상 소송보다는 중재로 분쟁이 해결되는 것을 감안할 때, 당사자 간의 책임소재에 관한 분쟁과 각 구제권에 관한 법령과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자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당사자의 책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처방법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셋째, 국제무역을 이행하는 국내의 계약업무 당사자들이 국제물품매매 거래에 적용할 CISG와 PICC 원칙상의 예견되는 계약위반과 관련하여 그 구제권에 대한 요건 및 그에 대한 이행기일전 구제방안에 관련된 판례를 통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실무에 활용하여 무역계약 체결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비하여 분쟁을 미연에 예방하고, 규율할 수 있는 실무상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이행기일전 구제권에 관한 CISG 조항의 법리적 측면에 대하여 고찰하고 실제 국제매매계약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논자는 문헌적 연구방법을 채용하여,

국내외에서 발표된 저서와 논문 등의 선행연구 자료와 판례들을 분석하였다. 즉 이행기일전 계약위반의 구제권과 관련한 해석상의 모호함과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는 문제를 국내외 저서와 논문으로 발표된 선행연구에 기초하고 다양한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며, 특히 각 판례에서 CISG 및 PICC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주제에 관한 연구가 이미 몇 차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논자는 그러한 선행연구에 기초하되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이외에 그에 상응하는 PICC의 내용에 대해 고찰하고, 나아가 CISG상 예견되는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에 관하여 가급적 최근의 국제 판례들을 발췌, 분석하여 이러한 조항들이 최근 어떻게 원용되고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연구의 깊이를 더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국문 번역본은 외교통상부의 공식번역본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외교통상부의 공식 번역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부 용어들이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의 범위는 CISG 제3편 제5장 제4절(이행기일전의 계약위반과 분할이행계약; 제71조-73조)을 한정하여, 이행기일전 계약위반에 관한 구제권, 즉 이행정지권, 중대한 계약위반이 예상되는 경우의 이행기일전 계약해제권, 장래의 중대한 계약위반이 예상되는 분할이행계약의 해제권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고는 총 5장으로 구성되며, 제1장은 서론으로 본고의 목적 및 범위와 방법, 선행연구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2장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권의 개관」은 이행정지권과 이행기일전의 계약해제권, 분할인도계약에서의 계약해제권에 대하여 연구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먼저 이행기일전 구제권 행사의 전제조건인 CISG와 PICC가 규율하고 있는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위반과 계약해제권에 관하여 그 법리와 적용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그리고 이행정지권

과 이행기일전 계약해제권의 의의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제3장 「이행기일전 구제권의 이론적 고찰 및 판례분석」에서는 각각 이행정지권, 예견되는 중대한 계약위반에 대한 계약해제권, 분할인도계약에서 장래의 분할부분에 대한 계약해제권의 행사를 위한 요건과 동 행사에 의한 효력에 대하여 그 법리를 검토하였다. 또한, 위 구제권들의 해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사례에 대한 각국 법원 및 중재판정부의 판례 및 판정을 검토하여 사실관계와 그 판정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각 구제권들이 가진 쟁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연구한 각 조항의 법리와 사례들을 적용하여, 도출한 쟁점들에 관하여 해석상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4장 「이행기일전 구제권 적용상의 문제점과 실무적 대응방안」에서는 실무상에서 예견되는 계약위반에 대하여 각 구제권을 적용하고자 할 때의 어려움과 그러한 구제권들을 실제로 적용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제5장 「결론」은 요약 및 본고의 총결부분으로서 앞에서 연구한 내용들을 요약하고 정리하여 결론을 내리고 본 연구의 한계점과 앞으로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 3 절 선행연구

국제물품매매에서 예견되는 계약위반과 그 구제권에 관한 선행연구로서의 학위논문은 연구자가 조사한 바로는 아직 국내에는 없다. 국제물품매매 계약을 주제로 한 학위논문들은 대부분이 계약위반과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

와 그 효과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간혹 이에 계약해제권이나 당사자의 구제권과 관련하여 이행기일전 계약위반이나 그에 대응하는 구제권들에 관하여 간단히 언급하는 정도의 연구는 있으나 예견되는 계약위반의 요건에 관한 연구나 그 구제권에 대한 고찰은 취약한 상태이다.

예견되는 계약위반에 대한 학술논문으로는 국내의 몇몇 학자들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연구한 바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천수·노승재(2005)²⁰⁾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에 관하여 연구하면서 그러한 계약위반이 예견될 때의 구제권 행사의 요건 등을 법리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하강현(2008)²¹⁾은 다양하고 복잡한 국제매매거래의 상황 하에서 어떠한 경우에 각 구제권을 원용할 수 있는지 국제물품매매업무를 수행하는 무역실무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이행기일전 계약위반에 대한 권리구제의 개념 및 그 적용기준을 연구하였다. 특히 이행정지권과 관련하여서는 그 권리의 구성요건이 모호하여 해석상의 분쟁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그 권리의 행사방법과 효력에 있어서도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러한 해석상의 모호함과 분쟁의 소지가 있는 문제를 비교하여 고찰하며 동 문제들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나아가 허해관(2009)²²⁾은 자신의 의무가 이행기에 놓인 당사자로서는 상대방이 장차 그의 의무를 불이행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추후 상대방의 불이행이 현실화될 때에 비로소 그에 대한 구제를 구하

20) 이천수·노승재,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3호, 국제지역학회, 2005, 808~824면.

21) 하강현,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의 이행정지에 관한 고찰”, 『무역학회지』 제23권 제2호, 무역학회, 1998, 295~322면;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이행기전의 계약해제에 관한 고찰”, 『국제거래법연구』 제7집, 국제거래법학회, 1998, 125~145면; “국제물품매매에서 이행기전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권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8, 3~26면.

22) 허해관, 전제논문, 91~115면.

는 수밖에 없다면 계약의 상호 대가적 의존관계에 비추어 부당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하며, 상대방의 계약위반이 예견될 때 각 구제권의 발생요건과 행사에 관한 제한을 제시하고, 특히 이행기일전 구제권을 잘못 행사하였을 때 이를 원용한 당사자가 안게 될 위험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무역실무에서 주의하여야 할 사항들을 지적하였다.

오석웅(2009)²³⁾은 CISG상의 이행기일전 계약위반과 그에 대한 계약해제의 요건을 법리적으로 연구하였다.

한편 김진우(2010)²⁴⁾는 이행기일전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CISG 제72조의 입법취지와 성질, 동 제72조의 입법역사와, 각국법의 비교를 통하여 이행기일전 계약해제의 행사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석완(2010)²⁵⁾은 운송정지권과 관련하여, 정형거래조건과 운송계약체결의무와 운송계약의 준거법 그리고 선하증권 등 운송증서의 운송정지권의 효력 여부를 살펴보고 운송정지권의 운송계약에 대한 원용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면서, 각국 국내법과 운송계약 준거법에서 운송정지권의 효력 여부와 관련된 매도인의 운송정지권 행사가능여부에 대해 고찰하였다.

예견되는 계약위반에 대한 해외의 논문은 다음과 같다.

CISG는 제정 전에도 그 초안을 두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었는데 그러한 노력은 CISG가 발효되기 전까지도 계속되었다. Bennett(1987)²⁶⁾은 CISG에서 해당 각 조항의 입법역사와 의의 그리고 목적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나아가 이행기일 전 구제권에 대한 각 조항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

²³⁾ 오석웅, “CISG에 있어서 이행기전 계약해제요건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35집, 한국법학회, 2009, 259~280면.

²⁴⁾ 김진우, “CISG 제72조에 따른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 『법학논고』 제32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265~292면.

²⁵⁾ 양석완, “운송유지권의 효력과 원용가능성에 관한 법적 쟁점”, 『한국해법학회지』 제32권 제1호, 한국해법학회, 2010, 265~297면.

²⁶⁾ T., Bennett, Comments on Article 71, 72 and 73 in Bianca-Bonell, ed.,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Giuffrè: Milan, 1987, pp.513~537.

였는데, 이는 이후의 연구들에서도 계속 논의되고 있다.

나아가 Bridge(2005)²⁷⁾는 CISG 제정 25주년을 맞아 CISG 제72조와 제73조에 관하여 그 동안 나타난 문제와 쟁점들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특히 CISG 제72조와 관련하여 CISG 제71조와의 관계, 제72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실제로 중대한 계약위반을 의식하고 있는지의 문제, 중대한 계약위반의 정의의 모호함, 이행불능과 면책조항에 따른 CISG 제71조의 적용, 이행기일전 계약해제와 손해경감의무에 따른 문제, 이행기일전 계약해제를 원용할 때 사전통지 시에 적절한 보장을 기다릴 수 있는 합당한 기간 등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Ziegler(2005)²⁸⁾는 CISG 제71조의 이행정지권과 관련하여 동 조항의 제정과정과 이행정지권 행사의 요건에 대하여 연구하여 이행정지권을 행사하기 위한 충분한 근거와 그렇지 않은 근거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또한 이행정지권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연구하면서 정당한 이행정지와 부당한 이행정지의 사례를 제시하여 이행정지권과 관련한 법리를 연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Silveira(2005)²⁹⁾ 와 Liu(2005)³⁰⁾는 이행기일전 구제권들에 대하여 그 요건과 행사에 대한 법리를 자세히 연구하였다. 특히 Liu는 사례를 들어 각 구제권들의 실질적 행사에 대하여 논하였으며 해당 구제권에 관

²⁷⁾ M. G., Bridge, "Issues Arising Under Articles 64, 72 and 73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Journal of Law and Commerce*, vol.25, 2005, pp.405~421.

²⁸⁾ A., von Ziegler, "The Right of Suspension and Stoppage in Transit(and Notification Thereof)", *Journal of Law and Commerce*, vol.25, 2005, pp.353~374.

²⁹⁾ M. A., Silveira, "Anticipatory Breach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Nordic Journal of Commercial Law*, vol.2, 2005. available on http://www.njcl.utu.fi/2_2005/article1.htm

³⁰⁾ C. Liu, "Suspension or Avoidance Due to Anticipatory Breach: Perspectives from Arts. 71/72 CISG, the UNIDROIT Principles, PECL and Case Law", available on <http://www.cisg.law.pace.edu/cisg/biblio/liu9.html>

하여 PICC 및 PECL³¹⁾과 CISG를 비교·고찰하였다.

본고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기초로, CISG의 해당 구제권인 이행정지권, 이행기일전 계약해제권의 행사 요건과 사례를 분석하여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조항들의 법리를 면밀히 연구검토 하였으며, 각국 법원과 중재판정부의 판례를 검토하여 실무상 유의점을 제공함으로써 국제물품매매 업무에 종사중인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한다.



³¹⁾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제 2 장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권의 개관

국제물품매매거래는 대부분 별 어려움 없이 완결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의무(obligation)와 계약위반(breach)의 결과에 관한 분쟁(dispute)은 늘 발생하기 마련이다.³²⁾ CISG가 가지는 큰 의의중 하나는 계약해제(avoidance)의 조건을 엄격히 하여 일단 성립된 계약이 소멸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가급적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³³⁾ 따라서 계약위반이 발생하였을 때 CISG의 구제수단(remedies)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계약위반이라 함은 당사자가 그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perform)하지 않거나 불완전이행 또는 계약에 부적합한 이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계약위반을 논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당사자의 의무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또한 실무자에게 있어 CISG와 함께 동 협약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PICC상의 양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구제권 포함), 계약위반의 요건과 계약해제에 관하여 숙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일 것이며, 마지막으로 본고의 연구목적인 예견되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에 따른 구제권을 살펴보기 위하여서는 CISG와 PICC상의 계약위반 및 중대한 계약위반에 대하여 숙지하고 비교·고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장에서는 CISG에 따른 매도인과 매수인 양 당사자의 의무와 의무 위반에 따른 상대방의 구제권, 그리고 CISG 및 PICC상의 계약위반과 계약해제법리에 관하여 다루고자 한다.

먼저, CISG에서는 각 당사자의 의무와 구제권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³²⁾ J.O.,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이하 Honnold, *Uniform Law*로 인용함) 서문.

³³⁾ Zuppi, *Pace International Law Review, Review of the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p.45.

두고 있다. CISG 제3편 제1장(제25조에서 제29조까지)에서는 물품의 매매에 관한 총칙(General Provisions)을 다루고 있고, 제2장(제30조에서 제52조까지)에서는 매도인의 의무와 매도인의 의무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장(제53조에서 제65조까지)에서 매수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CISG 제5장(제71조에서 제80조까지)에서는 양 당사자에게 공통되는 구제권으로 이행기일전(履行期日前)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권과 손해배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PICC에서는 제5장에서 계약의 내용과 제3자의 권리에 관하여, 제6장에서 이행에 관하여, 제7장에서 불이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 1 절 이행기의 구제권

1.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구제권

1) 매도인의 의무

CISG에 의하면 “매도인은 계약과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하며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³⁴⁾ 그러므로 매도인의 기본의무는 물품인도의무와 서류교부의무, 소유권이전의무³⁵⁾이다. 매도인은 계약과 CISG의 규정에 따라 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³⁶⁾

³⁴⁾ CISG, 제30조.

³⁵⁾ 이러한 소유권이전의무는 매매계약을 특징지우는 매도인의 핵심적인 의무이다. 그러나 소유권의 이전을 위하여 물건법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필요한가는 CISG가 규율하는 사항이 아니고, CISG(제4조 b호)가 정하는 바와 같이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물건(物權)의 준거법에 의할 사항이지만, 소유권을 이전할 매도인의 의무 자체는 CISG가 규율한다.···즉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물품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는가는 물권의 준거법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지만, CISG는 매도인에게 협약 상 요구되는 행위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박영사, 2010, 126면).

(1) 물품인도의무

CISG는 물품인도에 대하여 그 방법, 장소 및 시기를 규정한 다음,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이 인도되었을 경우에 대하여 그 구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³⁷⁾

CISG에 의해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해야 할 인도장소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과 관습³⁸⁾에 의하여 결정된다.³⁹⁾ 즉, 매매계약에서 인도장소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된 장소가 물품인도장소가 된다. 당사자간의 거래관습이 없고 매매계약에서 약정하지 않아 매도인이 물품을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물품운송을 포함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로 매매계약이 물품운송을 포함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운송하기 위하여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며⁴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매도인의 인

36) 다만 CISG의 내용과 당사자 간에 약정한 내용이 서로 다를 때에는 계약상의 의무가 우선하게 된다 (J. O., Honnold, *Documentary History of the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Kluwer, p.418); CISG와 INCOTERMS는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하며 만약 충돌하면 INCOTERMS가 우선하며 계약에 명시적 표현이 있다면 명시적 계약이 더 우선한다(오원석, “UN통일매매법에서 국제무역관습의 수용여부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12권, 한국무역상무학회, 1999, 174면).

37) CISG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국제물품매매통일법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a Uniform Law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LIS) 제19조 제1항에서는 인도는 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제공하는 것임을 규정함으로써, ULIS상 인도의 개념은 계약적합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좁은 개념이었다(이천수, “국제물품매매협약에 관한 유엔협약상 매도인의 의무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02, 233면).

38) 여기에서는 정형거래조건이 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매당사자들이 인도장소와 인도방법을 구체적으로 약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인도에 관한 이러한 제 문제는 보통 관습, 즉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즉, 개정될 INCOTERMS 2010에 따르면 EXW는 매도인의 영업소, FAS는 선측, FCA, CIP, CPT는 매도인의 영업소나 화물터미널, FOB, CFR, CIF는 본선상에서, DAT는 목적지 터미널, DAP나 DDP는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각각 반입인도 또는 적재인도 방식으로 인도가 이행된다. 따라서 정형거래조건은 매매관습이면서 인도관습이라고 할 수 있다.

39) CISG, 제31조.

40) CISG, 제31조 (a)호.

도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본다.⁴¹⁾

두 번째로 전술한 물품운송이 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계약이 특정물에 관련되거나 또는 특정(特定)한 재고품에서 인출되는 불특정물이나 제조 또는 생산되는 불특정물에 한정되어 있고, 당사자 쌍방이 계약 체결 시에 그 물품이 특정한 장소에 있거나 그 장소에서 제조 또는 생산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두어야 한다.⁴²⁾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둔다는 것은 매수인이 물품 점유를 취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경우 인도되어야 할 물품특정(specification)과 포장 및 매수인에 대한 인도준비완료의 통지가 수반되어야 한다.⁴³⁾

마지막으로 기타의 경우, 즉 불특정매매로서 계약의 내용에 운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계약 체결 시에 영업장소를 가지고 있던 장소가 인도장소가 된다.⁴⁴⁾⁴⁵⁾

물품인도시기에 관하여 CISG는 역시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인도기일이 계약에 의하여 확정되었거나 또는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그 기일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⁴⁶⁾ 둘째, 인도기일이 계약에 의하여 기간이 지정되어 있거나 또는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

41) 오석웅,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31집, 한국법학회, 2008, 240면.

42) CISG, 제31조 (b)호.

43) 이천수, “CISG상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 『국제무역연구』 제8권 제1호, 한국무역통상학회, 2002, 292면.

44) CISG, 제31조 (c)호.

45) PICC에서는 이행의 장소가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로부터 결정될 수도 없는 경우, 금전채무는 채권자의 영업소에서, (동 원칙 제6.1.6조 제1항 (a)호), 기타 모든 채무의 경우에는 자신의 영업소에서(동 원칙 제6.1.6조 제1항 (b)호) 이행이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계약의 이행장소에서 의무이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행인도의 경우에 물품거래의 경우만을 전제로 한 CISG 제31조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오석웅, 상개논문, 248~249면).

46) CISG, 제33조 (a)호.

이 동 기간 내의 어느 기일을 선택할 것이라는 사정(circumstances)이 없는 한 그 기간 내의 기한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⁴⁷⁾ 마지막으로,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매도인은 계약체결 후 합리적 기간내(within a reasonable time)⁴⁸⁾에 인도해야 한다. 이 때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만큼의 부가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매도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⁴⁹⁾

매도인은 CISG에 따라 물품인도에 수반되는 기타 의무로 물품특정 및 통지의무⁵⁰⁾, 운송수배의무⁵¹⁾ 및 부보에 관한 정보제공의무⁵²⁾를 부담해야 한다.

(2) 서류교부의무

47) CISG, 제33조 (b)호.

48) CISG와 PICC는 ‘합리적인기간’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각 판례를 통하여 살펴봄이 옳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협약의 일반적인 해석에 의하면 합리적인 기간은,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합리적인 기간 이내’라고 추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UNIDROIT 사무국이 제시하는 PICC의 주해서는 예시를 통해 ‘이행기’(동 원칙 제6.1.1조)의 합리적인 기간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건물건축업자 A는 현장굴착작업을 하면서 이례적인 어려움에 직면했고,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그에게는 없는 특수한 장비가 필요하였다. A는 그러한 장비를 갖고 있는 다른 건축업자 B에게 즉시 전화를 하였고, B는 그러한 장비를 A에게 임대하는데 동의하였다. 그런데 동 장비가 A에게 언제 인도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말도 오고가지 않았다. 따라서 이행(장비인도)은 제반 상황으로 보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실행되어야 한다. 상기의 어려움 때문에 동 굴착작업이 중지되고 있으므로 A는 동 장비를 긴급히 필요로 하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상황의 경우에는 아마도 “합리적인 기간 내”라 함은 동 이행이 거의 즉시 실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행기’에 관하여는 본고 제3장 및 제4장에서 자세히 고찰하기로 한다.

49) 오석웅, 전제논문, 241면.

50) CISG, 제32조 제1항: 매도인이 계약 또는 이 협약에 따라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한 경우에, 물품이 화인, 선적서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그 계약의 목적물로서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을 특정 하는 탁송통지를 하여야 한다.

51) CISG, 제32조 제2항: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운송수단 및 그 운송에서의 통상의 조건으로,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2) CISG, 제32조 제3항: 매도인은 물품의 운송에 관하여 부보 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구가 있으면 매수인이 부보 하는데 필요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물품에 관한 서류를 교부(hand over documents relating to the goods)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계약에서 요구된 시기와 장소 및 형식에 따라⁵³⁾ 동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⁵⁴⁾ 매도인이 요구한 시기 전에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 매도인은 계약에서 요구된 시기까지는 서류상의 모든 결함을 보완할 수 있으나 다만 이러한 권리의 행사가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이나 비용을 야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⁵⁵⁾ 그리고 이 경우 매수인은 CISG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保有한다.⁵⁶⁾ CISG에서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통상 국제물품매매에서 물품의 인도는 상징적 인도(symbolic delivery)에 의하는 것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다.⁵⁷⁾

(3) 소유권이전의무

소유권이전의무는 매도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의 하나라는 것에는 이론이 없다.⁵⁸⁾ 그러나 CISG는 매도인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매각될 물품의 소유권에 관하여 가질 수 있는 효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⁵⁹⁾ 이는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많은 국가들이 서로 다른

53) 서류인도의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적으로 계약에 따르게 된다. 계약에 명시적 규정이 없으면 묵시조항인 정형거래조건에 따르게 된다. 13가지 정형거래조건 가운데 일부 조건을 제외하고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2가지 서류, 즉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제공했다는 일치의 증빙서류인 상업송장과 인도의 증빙서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IF와 CIP조건에서는 이 두 가지 서류 외에 보험증권이나 다른 보험담보서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특히 신용장거래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할 서류가 신용장에 하나하나 열거되어 있다(오원석·박성철, 「무역상무의 이해」, 문영사, 2005, 328면).

54) CISG, 제34조 제1문.

55) CISG, 제34조 제2문.

56) CISG, 제34조 제3문.

57) 오석웅, 전제논문, 240면.

58) 오원석·박성철, 전제서, 324면; 석광현, 전제서, 126면.

법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소유권이전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의 구체적인 규정을 정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⁶⁰⁾ 그리고 국제거래는 물품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물품의 인도도 직접인도가 아닌 운송인에 의한 간접인도방식을 취하고 있고 대금의 지급도 통상 은행을 통한 간접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소유권이전방식을 통일하고 소유권의 이전의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워서 CISG는 소유권이전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⁶¹⁾ 따라서 소유권이전의무가 어떻게 이행되는지에 관하여는 국제사법에 의하여 적용되는 국내법에 의존하게 될 것이며,⁶²⁾⁶³⁾ 국제거래에서는 소유권이라는 개념 대신 위험의 이전과 연계된 인도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⁶⁴⁾

(4) 계약적합성 의무

CISG에 따라 매도인에 의하여 인도되는 물품은 계약 혹은 본 협약에 의하여 적합한 물품이어야 한다. 즉 매도인은 수량(quantity), 품질(quality), 포장(packaging) 등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권리적인 측면에서도 그 권리 이행에 지장이 없는 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계약에서 요구되는 물품의 수량, 품질 및 명세(description)에 일치하고 또한 계약에서 요구되는 방법으로 용기에 담기거나 포장된 물품을 인도하여

⁵⁹⁾ CISG, 제4조 (b)호.

⁶⁰⁾ 석광현, 전게서, 126면.

⁶¹⁾ 오원석·박성철, 전게서, 325면.

⁶²⁾ 이천수, 전게논문 300면.

⁶³⁾ 석광현, 전게서, 126면.

⁶⁴⁾ 양영환·오원석·박광서, 「무역상무」, 삼영사, 2008, 480면.

야 한다.⁶⁵⁾ 이와 같이 매도인은 물품에 대한 수량적합성, 포장의 적합성, 권리적합성, 품질 및 명세의 적합성의 의무를 부담한다.⁶⁶⁾

그 중 품질 및 명세의 적합성에 관하여 CISG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expressly)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품질에 대한 계약적합성의 판단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물품의 통상사용목적(ordinary use), 특정사용목적(particular use)에의 적합여부와 견본(sample) 및 모형(model)과의 일치여부이다.⁶⁷⁾ 즉, 첫째로 특별히 사용목적을 명시하지 않고 매매된 물품은, 인도된 동 물품과 동일한 명세의 물품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⁶⁸⁾ 통상적 사용목적에 대한 적합성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매도인의 영업소 소재지국 내지 그 지역에서의 통상적인 사용목적을 기준으로 한다. 두 번째로 특정사용목적이 명·묵시적(expressly or impliedly)으로 계약 체결 시에 매도인에게 알려진 경우, 인도된 물품은 이러한 특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⁶⁹⁾ 그러나 제반사정으로 보아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술과 판단(skill and judgement)을 신뢰하지 않았거나 이를 신뢰하는 것이 불합리했던 경우에는 제외된다.⁷⁰⁾ 마지막으로 견본 또는 모형을 제시하여 교섭이 이루어지고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물품은 매도인이 견본 또는 모형으로 매수인에게 제시한 물품의 품질을 보유하여야 한다.⁷¹⁾

⁶⁵⁾ CISG, 제35조.

⁶⁶⁾ UNCITRAL 사무국이 편찬한 판례법집은 CISG 제35조에서 규정하는 매도인의 물품계약적합성의무가 계약이행에서의 결정적인 측면을 담당하는 의무라고 평가하고 있다(UNCITRAL *Digest of Case Law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nd Edition, United Nations Publication, 2008, p.10; 이하 CLOUT Digest로 인용함).

⁶⁷⁾ 이천수, “국제물품매매협약에 관한 유엔 협약상 매도인의 의무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02, 228면.

⁶⁸⁾ 하강현, “국제물품매매에서 물품의 일치성에 관한 고찰”, 「무역학회지」 제32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07, 406면.

⁶⁹⁾ 하강현, 상계논문, 408면.

⁷⁰⁾ 하강현, 상계논문, 409면.

⁷¹⁾ 오원석,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물품에 대한 매도인의 계약적합의무”, 「무역학회지」 제27권 제3호,

2) 매도인의 의무위반에 따른 매수인의 구제권

CISG에 의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이나 본 협약에 따른 어떠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CISG 제46조에서 제52조까지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 74조에서 제77조까지에 규정된 바의 손해배상⁷²⁾을 청구할 수 있다.⁷³⁾ 또한, CISG 제71조에서 제73조까지에 규정되어 있는 이행전의 계약위반과 분할인도계약에 관한 조항을 통하여도 그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⁷⁴⁾ 매수인은 이러한 구제권을 선택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적으로 원용할 수 있다. 매수인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상실하지는 않는다.⁷⁵⁾ 매도인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수인이 청구할 수 있는 주요 구제수단은 이행청구권(right to compel performance), 대체물인도청구권(right to request for substitute goods), 하자보완청구권(right to demand for cure), 부가기간지정권(right to fix an additional period of time for performance), 대금감액권(right to reduction of the price), 계약해제권(right to avoidance the contract), 손해배상청구권(right to claim damages)등이 있다.

(1) 이행청구권⁷⁶⁾

한국무역학회, 2002, 8면.

⁷²⁾ CISG, 제74조에서 제77조까지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 및 제78조, 제79조의 이자 및 면책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 모두에게 공통된 규정이다.

⁷³⁾ CISG, 제45조.

⁷⁴⁾ 이에 관하여는 본고 제3장 및 제4장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⁷⁵⁾ CISG, 제45조 제2항.

⁷⁶⁾ 이행청구권은 대륙법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나, 영미법계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구제권이었다. 그 타협안으로 CISG에서는 제한적으로나마(CISG 제28조: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의한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더라도, 법원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양립할 수 없는 구제를 청구하지 않는 한⁷⁷⁾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⁷⁸⁾ 이행청구는 물품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와 일부만 인도한 경우뿐 아니라 그 이외의 급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모두 인정된다. 예컨대, 서류 교부를 청구하거나 물품의 조립이나 설치 또는 지시사항 이행을 요청하는 것도 이행청구에 속한다.⁷⁹⁾ 현실적으로 국제물품매매에서는 양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매도인에게 이행을 요청하기 보다는 매수인은 계약해제를 선언한 후, 다른 곳에서 대체품을 구입하고, 그 차액을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약해제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계약해제가 불가능하거나 대체품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대체물인도청구권

은 본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사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자국의 국내법 하에서 특정이행을 명하는 재판을 할 경우가 아닌 한 특정이행을 명하는 재판을 할 의무가 없다)이행청구권을 매수인과 매도인의 공통구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77) PICC에서는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을 당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또는 비금전적인 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PICC 제7.2.1조, 제7.2.2조) PICC에서 이행청구(특정이행)권의 범리는 CISG의 내용과 비슷하다. 그러나 그 청구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특정의 이행이 배타적이고 개인적 특성(exclusively personal character)을 지닌 경우 이러한 특정이행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예컨대 개인의 예술적인 행위나 기밀관련 이행과 같은 성질의 특정이행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채권자가 특정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투기의 목적이 있거나 채무자에게 손상을 줄 수도 있으며 시장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간 내에 특정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으면 특정의 이행을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다는 제한을 두어 CISG(이행청구를 규정하는 CISG 제46조 제1항은 그 기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대체물인도청구, 하자보완 청구를 규정하는 제46조 제2항, 제3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청구와 통지를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를 보충하고 있다.

78) CISG, 제46조 제1항.

79) Germany, Landgericht Mainz, 12HK070/97, 26-11-1998, CLOUT 346. 매도인의 선적, 운송, 양륙, 설치 등 의무를 매도인의 물품인도 의무의 일부분으로 보고 그 의무를 위반한 매도인을 상대로 매수인이 CISG 제45조에 근거한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판시하였다.

매도인에 의해서 인도된 물품이 계약에 적합하지 않았을 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⁸⁰⁾ CISG는 대체물인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므로 그 제한을 엄격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대체물인도가 계약해제보다 매도인에게 더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 요건은 첫 번째로, 물품부적합이 CISG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계약위반⁸¹⁾을 구성할 것, 두 번째로 CISG에서 규정하는 통지⁸²⁾와 함께 또는 그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대체물인도를 청구하여야 할 것이 그 내용이다. 그러나 인도된 물품이 매수인이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상태로 반환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체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⁸³⁾

(3) 하자보완청구권

매도인에 의해서 인도된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에 매수인은 그 부적합의 하자보완⁸⁴⁾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⁸⁵⁾ 그러나 하자보완청구가

⁸⁰⁾ CISG, 제46조 제2항.

⁸¹⁾ CISG, 제25조.

⁸²⁾ CISG는 제39조, 제40조, 제44조에서 매수인이 물품의 계약부적합을 매도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설정(또는 제한)하고 있다(Honnold, *Uniform Law*, p.354).

⁸³⁾ CISG, 제82조 제1항.

⁸⁴⁾ CISG는 제48조에서 “제49조를 따를 것을 조건으로, 매도인은 인도기일 후에도 불합리하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 또는 매수인의 선급 비용을 매도인으로부터 상환 받는데 대한 불안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비용으로 의무의 불이행을 하자보완 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은 이 협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PICC는 그 제7.1.4조에서 불이행당사자에 의한 보완에 관한 조항으로 불이행당사자의 불이행의 보완권리를 규정하여 권리침해를 당한 당사자가 계약해제통지를 한 경우에도 행사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 CISG 제 48조에서 의문시되었던 점을 명료하게 하였다. 즉, CISG가 매도인의 하자보완 권과 매수인의 계약해제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았던 것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오원석,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CISG와 UNIDROIT Principles의 내용상 차이와 상호관계”, 96면).

⁸⁵⁾ CISG, 제46조 제3항.

불합리한 경우, 예컨대 수리비가 물품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하자보완청구는 대체물인도청구와 마찬가지로 CISG에서 규정하는 물품부적합통지와 함께 또는 그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⁸⁶⁾

(4) 부가(추가)기간지정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행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기간만큼의 부가(추가)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⁸⁷⁾ 부가(추가)기간지정권의 주요한 의의중 하나는 매수인이 지정한 부가(추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⁸⁸⁾

(5) 대금감액권

매수인은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할 경우에 대금이 이미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매수인에게 실제로 인도된 물품이 인도 시에 가졌던 가액이 계약에 적합한 물품으로 동 인도 시에 가졌을 가액에 대하여 갖는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대금감액은 물품부적합이 계약위

⁸⁶⁾ CISG, 제48조 제2항: 매도인이 계약불이행을 하자보완 하고자 매수인에게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은 요구조건에서 제시된 기간 내에 불이행에 대한 하자보완청구가 가능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의 이행과 양립하는 구제를 요구할 수 없다 (이천수, “CISG상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 305면).

⁸⁷⁾ CISG, 제47조 제1항.

⁸⁸⁾ 매수인은 부가(추가)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확정적인 기일이나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도 확정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즉 부가(추가)기간 지정은 매도인의 인도의무와 관련하여 그 인도의무불이행이 중대한 계약위반임이 명확하지 않은 때를 대비하여 합리적인 부가(추가)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행이 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행최고의 의미를 가진다. 또한 동 기간 내에 매도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한 매수인은 동 기간 중에는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할 수 없다(CISG, 제47조 제1항, 제2항).

반의 중대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여부와, 매도인의 과실 여하에 관계없이, 또한 장애(impediment)에 기인한 매도인의 면책사유⁸⁹⁾ 여부에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다.

대금감액권은 금전적인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청구권과 유사하지만⁹⁰⁾ 요건이나 그 효과에 차이가 있다. 대금감액은 손해의 발생을 요구하지 않으며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에서와 같은 면책사유⁹¹⁾가 허용되지 않는다. 즉 매도인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더라도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과 대금감액권이 동시에 존재하더라도 손해배상액과의 산정방식의 차이로 인해 매수인이 대금감액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다. 또, 대금감액은 금액을 0까지도 감액할 수 있게 하므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곤란한 경우에 유용한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⁹²⁾

그러나 매도인이 CISG 제37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그 의무의 불이행을 치유하거나, 매수인이 매도인에 의한 동 조항들에 따른 이행을 인수하기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⁹³⁾

(6) 손해배상청구권

매도인의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⁸⁹⁾ CISG, 제79조.

⁹⁰⁾ 대금감액은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배상과 비슷하다고 언급되고 있다(P. Huber., "The CISG" p.254).

⁹¹⁾ 김진우, "국제물품거래에서의 매수인의 대금감액권", 「국제거래법연구」 제18권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2009, 63면.

⁹²⁾ Austria, Oberster Gerichtshof, 3Ob193/04K 23-05-2005, CLOUT 747. 이탈리아의 매수인은 오스트리아의 매도인에게서 재판매의 목적으로 커피메이커를 구입하였다. 구입한 커피메이커는 재판매 이후 실제 사용단계에서 하자가 발견되었고, 매도인에 의한 하자보완 이후에도 계속하여 하자가 발생하여 결국 재판매의 목적에 부적합하였다. 법원은 매수인이 커피메이커의 가격을 0까지 감액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⁹³⁾ CISG, 제50조 제2문.

가진다.⁹⁴⁾ CISG상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해제권 등 기타 권리구제와 양립할 수 있으나⁹⁵⁾, 매수인이 대금감액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액수만큼 손해배상의 범위가 줄어든다.⁹⁶⁾ 손해배상은 상실이익의 완전배상, 고의·과실 불문, 예견가능성의 원칙과 인과관계성의 원칙을 필요로 한다.

CISG에서 손해배상은 다른 청구권들과 다르게 면책법리를 가지고 있는데, 당사자가 그의 의무의 불이행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장애에 기인하였다는 것과 계약 체결 시에 그 장애를 고려하거나 또는 그 장애나 그로 인한 결과를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는 자신의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⁹⁷⁾ 이러한 면책요건을 인정받기 위하여 불이행당사자(계약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러한 장애 및 동 장애가 그의 이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면책이 인정되더라도 CISG상 면책은 손해배상청구권에만 적용되므로⁹⁸⁾ 피해당사자는 손해배상청구권 이외의 모든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면책은 장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만 그 효력을 가진다.

(7) 계약해제권

계약 또는 CISG에 기인하는 매도인의 의무의 불이행이 중대한 계약위반인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⁹⁹⁾할 수 있다.¹⁰⁰⁾ 또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⁹⁴⁾ CISG, 제45조 제1항 (b)호.

⁹⁵⁾ CISG, 제45조 제2항.

⁹⁶⁾ 이는 CISG의 해석이 중복배상(double-dipping)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복배상에 대한 영어표현은 double-dipping(I. Schwenzer & C, Fonntoulakis, *International Sales Law*, Routledge - Cavendish Publishing, p.393)과 double recovery(Honnold, *Uniform Law*, p.338), double compensation(Müller-Chen, *Commentary on Article 50* in : P. Schlechtriem & I. Schwenzer,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larendon Press, p. 605)이 있다.

⁹⁷⁾ CISG, 제79조 제1항.

⁹⁸⁾ CISG, 제79조 제5항.

이행을 위한 부가(추가)기간을 지정하였는데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거나 불이행을 선언한 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¹⁰¹⁾

2. 매수인의 의무와 매도인의 구제권

1) 매수인의 의무

CISG에 의하여 “매수인은 계약과 이 협약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의 인도를 수령(受領)하여야 한다.”¹⁰²⁾ 따라서 매수인의 주된 의무는 대금지급의무와 물품의 인도수령의무인데, CISG는 부가적으로 물품검사(examination) 및 하자(lack of conformity)의 통지(notice)의무를 매수인에게 부여하고 있다.¹⁰³⁾

(1) 대금지급의무

대금지급에 관하여 CISG는 그 제54조에서 제59조까지에 이르러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의 내용을 정하고,¹⁰⁴⁾ 대금을 정하지 않은 경우의 대금결정방법을 명시한다.¹⁰⁵⁾ 나아가 중량에 따른 대금의 결정방법,¹⁰⁶⁾ 대금의 지급

99)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이 계약해제권 역시 당사자들에 공통하는 구제수단이다.

100) CISG, 제49조 제1항 (a)호.

101) 계약해제권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본절의 3. 계약해제권에서 하기로 한다.

102) CISG, 제53조.

103) 이러한 매수인의 의무는 우리나라 민·상법상의 매수인의 의무와 유사하나 협약은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양영환·오원석·박광서, 전거서, 486면).

104) CISG, 제54조.

105) CISG, 제55조.

106) CISG, 제56조.

장소¹⁰⁷⁾와 지급시기¹⁰⁸⁾ 및 지급일 도래의 효과¹⁰⁹⁾에 대하여 규정한다. 그러나 CISG는 대금지급의 수단과 통화에 관하여 규정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는 통상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¹¹⁰⁾

대금의 결정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나, 당사자 사이에 명·묵시적인 대금에 관한 합의가 없었을 경우, 당사자들은 계약 체결 시에 당해거래와 유사한 상황 하에서 매매되는 물품에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대금을 묵시적으로 물품매매대금으로 간주한다.¹¹¹⁾ 대금지급시기 역시 계약에서 결정될 것이지만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품이나 물품의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때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물품이나 이를 지배하는 서류를 인도한다는 조건으로 물품을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매도인은 물품의 처분을 유보¹¹²⁾할 수 있다.¹¹³⁾ 대금지급은 당사자가 약속한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에서, 그러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지급되어야 한다.¹¹⁴⁾¹¹⁵⁾

107) CISG, 제57조.

108) CISG, 제58조.

109) CISG, 제59조.

110) 석광현, 전계서, 211면.

111) 양영환·오원석·박광서, 전계서, 487면.

112) 본고의 제3장 제1절 이행정지에 관하여 다루면서 자세히 고찰하도록 한다.

113) 양영환·오원석·박광서, 전계서, 487면 참조.

114) 대금지급장소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민법이나 상법이 CISG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양영환·오원석·박광서, 상계서, 488면).

115) 대금지급시기와 장소에 관하여 PICC는 본고 제2장 제1절에서 매도인의 물품인도와 관련하여 전술한 것과 같이, '이행의 장소가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이로부터 결정될 수도 없는 경우, 금전채무는 채권자의 영업소에서(동 원칙 제6.1.6조 제1항 (a)호), 기타 모든 채무의 경우에는 자신의 영업소에서(동 원칙 제6.1.6조 제1항 (b)호) 이행이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오석웅, 전계논문. 248~ 249면).

(2) 인도수령의무¹¹⁶⁾

매수인은 계약과 CISG가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인도를 수령¹¹⁷⁾하여야 한다.¹¹⁸⁾ 이러한 수령의무에는 매도인이 물품인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를 수행할 의무를 포함한다.¹¹⁹⁾

(3) 물품검사 및 통지의무

매수인은 당해 사정에 비추어 실행 가능한 짧은 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또는 물품이 검사¹²⁰⁾되도록 하여야 한다.¹²¹⁾ 물품검사는 원칙적으로 인도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물품의 운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목적지에서, 그리고 물품의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물품이 전송(轉送: redispach)될 경우에는 새로운 도착지가 검사장소가 된다. 물품의 검사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해당거래의 관행적인 방법으로 검사하면 된다.¹²²⁾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물품 부적합의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로서 물품의

116) 물품수령 장소는 원칙적으로 CISG 제31조에서 규정하는 매도인의 물품인도 장소이고, 물품의 인도를 포함하지 않는 매매의 경우에는 물품소재지 혹은 매도인의 영업소가 매수인의 물품수령 장소가 될 것이다(허해관, “국제물품매매협약상 매수인의 의무”, 『무역학회지』, 제35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10, 376면). 물품수령 장소와 시기에 관하여도 PICC의 제6.1.6조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117) 물품을 수령한다는 것은 물품을 물리적으로 점유하는 것을 의미한다(이해일, “국제물품매매법상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비교사법』 제12권 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5, 797면).

118) CISG, 제53조.

119) CISG, 제60조.

120) 검사는 계약상 물품이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운송 중 검사가 어렵기 때문에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까지 연기될 수 있다(CISG, 제38조 제2항).

121) CISG, 제38조 제1항.

122) 양영환 · 오원석 · 박광서, 전제서, 489면.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을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당 부적합의 내용을 상세하게 통지하여야 한다.¹²³⁾ 통지¹²⁴⁾의 범위는 물품의 부적합이지만, 여기에는 물품의 수량, 품질, 명세, 포장과 권리상의 부적합도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CISG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정하여진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해당 불일치에 관련된 청구권을 상실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물품검사의무의 해태는 매수인의 계약위반을 불러일으킨다기보다, 이를 불이행시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에 대하여 동 부적합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상실한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2) 매수인의 의무위반에 따른 매도인의 구제권

매수인이 CISG와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도인은 CISG에 따라 이행청구권¹²⁵⁾ 및 계약해제권을 갖는다. 또한 매도인은 CISG에 규정된 대로¹²⁶⁾ 이행정지권과 예견되는 계약위반에 대한 계약해제권, 분할인도분의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그리고 매도인은 물품명세확정권¹²⁷⁾을 갖는데 이는 매수인의 의무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권이라기보다는, 계약의 유지를 위한 매도인의 고유의 권리로 보는 것이 옳다.¹²⁸⁾ 위의 손해배상청구권¹²⁹⁾과 이행청구권¹³⁰⁾의 범리는 매도인의 의

¹²³⁾ CISG, 제39조 제1항.

¹²⁴⁾ 통지에 관하여 자세히는 본고 제3장 및 제4장에서 법리와 실무상의 유의점과 함께 고찰하기로 한다.

¹²⁵⁾ 부가(추가)기간지정권을 포함한다.

¹²⁶⁾ CISG, 제71조에서 제79조까지.

¹²⁷⁾ CISG, 제65조.

¹²⁸⁾ 매매계약상 매수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의 형태, 규격 및 기타 사항을 확정(specification)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약정된 기일 내에 매수인이 그 명세를 확정하지 않는다면 매도인이 이행하는데 곤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CISG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매도인 스스로 확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무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권과 유사하므로, 본고에서는 상세히 다루지 않기로 한다.¹³¹⁾

3. 계약해제권

1) 계약해제의 개념과 중대한 계약위반

(1) 계약해제의 의의

CISG상 계약해제권은 당사자의 계약위반(breach)을 이유로 이행책임이 면제되는 권리를 말한다.¹³²⁾ CISG는 제49조에서 매수인의 계약해제권을, 제64조에서 매도인의 계약해제권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계약해제권은 계약에서 약정하였거나 CISG에서 규정한 계약해제요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발생한다. CISG는 계약해제의 요건으로서 '중대한 계약위반'¹³³⁾(fundamental breach)이라는 개념을 계약위반의 정도의 척도로서 사용하여 주요 계약해제의 사유로 하고 있고, 그 외에 부가(추가)기간지정에 의한 계약해제로서 피

있다. 매도인이 스스로 한 확정이 매수인에게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매도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매수인의 요구조건에 따라 물품명세를 확정하여야 하고 또한 그 세부사항을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매수인이 상이한 물품명세를 작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지는 매수인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상이한 물품명세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매도인의 확정은 구속력을 가진다. 그러나 물품명세확정권이 매도인의 의무인 것은 아니다. 즉 매도인은 확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것이 중대한 계약위반을 구성할 경우에는 계약해제를 행사할 수도 있다, 물품명세확정권은 매도인의 고유의 권리이다. (이경화 “국제물품매매협약상 계약해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19면.).

129)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과 매도인 양 당사자가 모두, 그리고 다른 구제권과 같이 행사할 수 있다.

130) 매수인의 이행청구권과 비교되는 점을 들자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지급이나 인도의 수령뿐만 아니라 이자지급, 협력의무의 이행 등 추가적인 의무까지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131) 계약해제권에 관하여는 후술 3.계약해제권을 참고.

132) 오원석, “권리구제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UCC의 비교”, 「중재」 제311호, 1996, 106면.

133) fundamental breach는 본고에서는 “중대한 계약위반”이라 한다.

해당사자가 지정한 계약이행을 위한 부가(추가)기간 내에 위반당사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정된 부가(추가)기간 내에 의무이행 거절의 선언을 한 경우 피해당사자에게 계약해제권을 부여한다. CISG상의 이러한 계약해제의 의의는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이행 여부가 불확실한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CISG는 본고의 서문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계약의 해제를 가능한 한 억제하고 있으며, 계약의 유지·이행을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제권이 중요한 이유는 상대방의 중대한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 이르기까지 당사자가 계속하여 계약에 구속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CISG는 계약해제 후 매매당사자의 계약관계를 종결시켜 계약을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도록 하고 있다. 피해당사자는 계약해제 후 대체거래를 통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그래도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¹³⁴⁾ 목적물이 쉽게 대체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해제권의 행사가 오히려 거래당사자에게 유용한 구제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이행기 전에 미래의 이행불능이 예상된다면 조기에 계약해제권을 행사¹³⁵⁾하고 대체거래 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손해경감 차원에서 오히려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 중대한 계약위반

전술한 바와 같이, CISG는 계약해제의 요건으로 중대한 계약위반이 있었거나, 부가(추가)기간 지정 후에도 동 기간 내에 상대방이 그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거나 그 의무이행을 거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CISG는 제49조

¹³⁴⁾ 석광현, 전제서, 195면.

¹³⁵⁾ CISG 제72조에 의하여 사전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이에 관하여는 후술하도록 하겠다.

에서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계약해제권을, 제64조에서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계약해제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양 조항은 공히 그 요건으로 '계약 또는 협약 상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이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되는 경우'¹³⁶⁾를 규정하고 있는데, 중대한 계약위반에 대해서는 CISG 제25조¹³⁷⁾가 규정하고 있다.

중대한 계약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일방당사자가 계약에 위반된 행위를 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의 위반이란 CISG에서 규정하는 모든 종류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의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구분하지는 않는다. 즉 부수적인 의무의 위반도 중대한 계약위반이 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전자와 후자 모두 이것이 상대방에게 계약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상대방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상대방에게 기대할 수 있는바'라는 점에서 상당 부분 주관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¹³⁸⁾ 따라서 실질적인 손해는 계약위

¹³⁶⁾ CISG, 제49조 제1항 (a)호, CISG, 제64조 제1항 (a)호.

¹³⁷⁾ CISG, 제25조 :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은, 그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상대방에게 주는 경우에 중대한 것으로 한다. 다만, 위반당사자가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도 동일한 상황에서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¹³⁸⁾ 따라서 중대한 계약위반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문제는 하나로 단언하여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는 선례, 판례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중대한 계약위반의 판단여부는 계약의 내용 안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제철용 코크스 매매계약에서, 코크스의 품질이 너무나 저급하여 제철, 제련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면 계약위반이 될 수 있다. 혹은 인도된 코크스가, 제작 시에 제철용으로 쓰이기 위해 강점결탄 혼입 제작한 코크스가 아니고 약점결탄이 다량 혼입된 것으로 가스화용(도시가스, 화공용)에 적합한 물품이었다면 매매계약에서 그 대상이 분명히 제철용 코크스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 매수인이 제철용 코크스를 매수하여 국내 제철회사에 재판매할 것임을 양 당사자가 알고 있었다면 이는 충분히 중대한 계약위반을 추단할 근거가 될 것이다. 매수인이 국내제철회사에 재판매하여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국내제철회사와의 계약이행에 차질이 생겨 오히려 이로 인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매수인이 석탄, 고체연료취급회사로 제철용 및 화공용 코크스를 모두 취급하고 있으며,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국내 판매 재고를 충족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고, 매수인이 재고부족의 급박한 상황 등에 처하여 있지 않으며 양 당사자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 매매계약에서 제철용 코크스 매매를 명시하고 있는데 화공용 코크스가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중대한 계약위반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물론 계약위반에는 해당하지만 이러한 경우 원래의 계약대로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대금감액이나 손해배상을 통하여 구제권을 행사하거나, 협상을 통하여 가격을 재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반이 중대한가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CISG는 위반한 당사자가 위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동일한 부류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¹³⁹⁾도 동일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중대한 계약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규정하고 있다. 즉 계약위반 당사자가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초래된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동일한 부류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도 동일한 상황 하에서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손해가 초래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2) 계약해제권의 행사

CISG는 제26조¹⁴⁰⁾에서 계약해제에 그 통지(notice)를 계약해제의 요건으로 부과하고 있다.¹⁴¹⁾ 또한 계약해제의 통지시기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할 것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¹⁴²⁾ 그리고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계약해제 의사에 통지 이전에 위반당사자에게 부적합의 내용을 통지하였어야 하며¹⁴³⁾ 이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¹³⁹⁾ 동일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은 계약위반 당사자의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합리적인 사람이란 지적 또는 전문성 면에서 수준의 상거래의 규범을 준수하는 모든 합리적인 사람들을 말한다(A. Babbiak, "Defining 'Fundamental Breach'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emple International & Com. L. J.*, 1992, p.122).

¹⁴⁰⁾ CISG, 제26조 :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 행하여진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¹⁴¹⁾ CISG에서 계약해제의 통지는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통지를 수신할 것을 위반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전달과정에서의 멸실이나 실수 혹은 지연의 위험을 발신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불공평한 경우, 특히, 당사자가 상대방의 불이행이 실제로 있거나 상대방의 불이행이 있을 것임이 예견되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여야 하는 통지의 경우 발신주의가 적합하다는 것이다. 침해당한 자를 보호하는 원칙을 규정한 이러한 내용은 CISG 제27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PICC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종류의 통지에 대하여 도달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PICC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은 약정을 통하여 발신주의를 택할 수 있다.

¹⁴²⁾ CISG, 제49조 제2항, CISG, 제64조 제2항.

¹⁴³⁾ 이러한 통지의무의 해태 시에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당해 부적합에 의존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며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대금감액권을 제외한 기타 구제권을 원용할 수 없다.

계약해제의 통지의 형식으로는 CISG는 별다른 형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계약해제 통지의 내용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러한 계약해제 의사의 표시는 명료해야 한다. 즉, 계약해제 통지 이전의 부적합에 대한 통지 자체는 계약해제의 선언이 아니며 계약을 해제한다는 문구가 명백히 포함되어야만 명료한 해제통지가 될 수 있다. 계약해제의 행사는 위 조건을 갖춘 계약해제의 선언이 있으면 이루어진다.¹⁴⁴⁾

계약해제권은 계약자유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또는, 사정의 변경에 의한 계약해제사유의 소멸에 의하거나, 계약해제권 행사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소멸하며,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원상회복의무¹⁴⁵⁾에 대한 원상회복불능상태일 때 소멸하게 된다. 또한 매수인의 경우, 매수인이 계약 체결 시 계약물품의 부적합을 알았거나 몰랐을 수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¹⁴⁶⁾

3) 계약해제의 효력

계약해제는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를 소멸시키고 원상회복의무를 발생시킨다.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의무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쌍방의 계약상의 의무는 소멸하게 된다.¹⁴⁷⁾ 또한 계약을 해제한 당사자는 계약해제권과 양립할 수 없는 구제권인 이행청구권·대금감액권 등과 같은 구제권을 원용할 수 없다.

그러나 계약해제가 당사자들을 모든 의무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은 아니

144) 피해당사자는 계약해제를 반드시 법원에 신청(재판상 청구)할 필요는 없다. 계약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를 통해 행해지는 “선언”(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다(Honnold, *Uniform Law*, p.327).

145) 이는 후술 3) 계약해제의 효력에서 다루기로 한다.

146) CISG, 제35조 제3항.

147) 계약해제의 효력에 대하여는 CISG 제81조가 규정하고 있다.

다. 계약해제는 분쟁해결(dispute settlement)을 위한 어떠한 계약조항이나 계약의 해제에 따라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여타 모든 계약조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¹⁴⁸⁾ 즉 분쟁해결을 위한 조항 등은 당해 분쟁이 해결될 때 까지 유효하다는 것이다. CISG의 해석은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을 그러한 예로 들고 있는데, 분쟁해결을 위한 조항은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중재조항은 당사자들로 하여금 당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해제 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이는 계약해제 후에도 소멸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해제는 계약위반 혹은 그로 인해 생긴 부수적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역시 소멸시키지 않는다.¹⁴⁹⁾

또한 당사자들은 계약해제 후에 CISG 제81조 제2항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즉,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자신이 계약상 공급 또는 지급한 것의 반환(restitution)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당사자 쌍방이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매수인의 경우 그의 원상회복 의무는 이미 인도된 물품을 반환하는 것이 될 것이며¹⁵⁰⁾, 매도인의 경우 기 지급받은 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때 유의할 것은 매수인의 경우 인도 이후 계약해제 시 까지 인도된 물품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경우에 매도인에게 물품뿐만 아니라 그 물품으로부터 얻은 이익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며 매도인의 경우 대금지급일 이후 반환하는 날까지의 원금에 대한 이자까지 지급해야

148) CISG, 제81조 제1항 제2문 : “해제는 계약상의 분쟁해결조항 또는 해제의 결과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그 밖의 계약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49) CISG, 제81조 제1항 제1문 :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무를 제외하고 당사자 쌍방을 계약상의 의무로부터 면하게 한다.”

150) 이 때 매수인이 반환해야 할 물품의 상태는 물품 수령 시와 완전히 동일할 필요는 없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물품이면 족하다. 만약 수령한 물품에 사소한 손상이 있더라도 원상회복불능에 의한 계약해제권 상실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며, 다만 이 때 계약위반 당사자에게 배상받을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는 것이다.¹⁵¹⁾

계약을 해제에까지 이르게 한 중대한 계약위반당사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며, 또한 상대방이 원상회복을 하기 위한 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4) PICC상의 계약해제법리

(1) 불이행

PICC에서는 CISG의 계약위반(breach)에 대응(對應)하는 용어로 불이행(non-performa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PICC는 제7.1.1조에서 불이행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불이행은 당해 계약 하에서 당사자에 의한 그의 어떠한 의무의 이행이 없는 것을 말하며, 이는 불완전한 이행이나 지체된 이행을 포함한다. 본 조항의 불이행은 무 이행(complete failure to perform) 및 모든 형태의 불완전한 이행(defective performance)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는 면책되지 않는 불이행(non-excused non-performance)과 면책되는 불이행(excused performance) 양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또한 동 원칙에서 다루는 구제권들에 대하여 당사자는 상대방의 불이행이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나 자신이 위험을 부담하는 사건에 기인하는 한도 내에서는 그러한 불이행을 원용할 수 없다.¹⁵²⁾

(2) PICC에서의 계약해제의 요건

¹⁵¹⁾ 이자에 관하여는 CISG 제8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이자에 관한 규정은 CISG 제78조에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위반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이익의 손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특히 매수인에 비해 매도인의 이자반환 의무는 반드시 발생한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¹⁵²⁾ PICC, 제7.1.2조.

PICC는 제7.3.1조에서 계약해제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CISG에서 계약해제의 요건으로 중대한 계약위반을 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PICC에서도 계약해제의 주요 요건으로 계약의 중대한 불이행(fundamental non-performance)을 들고 있다. 즉,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의 불이행이 중대한 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의무의 불이행이 중대한 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불이행이 당해 계약 하에서 피해당사자가 기대할 권리가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지의 여부¹⁵³⁾, 둘째, 불이행하게 된 동 의무의 엄격한 이행이 계약의 핵심인지 여부, 셋째, 불이행이 고의적이거나 무모한 것인지의 여부, 넷째, 불이행이 피해당사자에게 상대방의 장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믿을 만한 이유를 제공하는지 여부, 넷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불이행당사자가 그의 이행이나 그 준비의 결과로 형평에 반하는 손실을 겪게 되는지 여부이다. 또한 당사자는 CISG에서와 마찬가지로, 이행지체의 경우, 상대방이 허여된 기간(time allows)이 도과하기 전에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PICC도 CISG와 마찬가지로 불이행에 대한 면책의 여하를 가리지 않으며, 동 원칙의 주해서는 제반사정의 고려를 통해 중대한 불이행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¹⁵⁴⁾

(3) 계약해제의 행사

CISG와 마찬가지로 PICC의 계약해제의 행사도 상대방에 대한 계약해제

153) 다만 그러함이 공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또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어야 한다.

154)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 주해서. PICC의 공식주해는 <http://www.unilex.inf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 통지으로써 이루어진다. 즉, CISG의 경우에서와 같이 요건을 충족한 계약 해제에 대한 선언으로 계약해제권의 행사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PICC 제 7.3.2조에 의해 계약해제권은 상대방에 대한 통지으로써 행사되며, 이행이 늦게 제공되었거나 기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부적합한 이행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계약해제통지를 하지 않은 피해당사자는 계약해제권을 상실하게 된다.¹⁵⁵⁾ PICC에서는 모든 통지에 도달주의¹⁵⁶⁾를 택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해제의 통지에서도 동일하며 CISG에서 규정하는 계약해제에 관한 통지의 발신주의와는 상반되는 규정이다. PICC에서 계약해제의 통지는 불이행당사자가 이를 수령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에 대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현대의 통신기술을 고려하여 볼 때 CISG에서 우려하고 있는 통지의 멸실이나 훼손, 지연 등에 의한 손해는 그다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경우와 같은 이유로 일어난 분쟁에 대하여는 CISG를 적용할 것인가 PICC를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매매계약에서 당사자들이 특별히 통지에 관한 CISG의 규정들을 배제하지 않았다면 CISG의

¹⁵⁵⁾ 이는 CISG 제49조 제2항, 제64조 제2항의 내용에 상응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PICC는 CISG와는 달리 계약해제의 요건으로 사전에 계약불일치에 대하여 통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대하여 동 원칙 제7.2.2조 비금전채무의 이행 (e)호에서 “이행청구 당사자가 불이행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이행 청구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명시한 점과, 제7.3.2조에서 “이러한 부적합한 이행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계약해제통지를 하지 않은 피해당사자는 계약해제권을 상실한다”고 명시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PICC에 따르면 계약해제의 통지는 부적합을 발견한 때로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CISG에서 부적합의 통지를 계약해제의 요건으로 한 것은 불이행당사자 (혹은 위반당사자)에게 해당 부적합에 대한 추완(追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의 유지와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CISG의 기본정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우선 해당 부적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상세한 통지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제반 사정 하에서 합리적인 기간 동안 해당 통지에 대한 상대방의 대응을 지켜보고 계약해제를 선언하는 것이 차후 분쟁해결 절차가 발생하더라도 계약해제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없거나 동 효력에 관한 분쟁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¹⁵⁶⁾ PICC는 제1.10조에서 다음과 같이 통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1) 통지가 요구되는 경우에, 이는 당해 상황에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통지는 그것이 수신인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3) 제2항에서 말하는 통지는 그 수신인에게 구두로 행하여지거나 그의 영업소나 우편주소지에서 전달될 때에 그에게 “도달 한다” (4) 본조에서 말하는 “통지”는 선언, 요구, 청구 기타 의사표시를 포함한다.

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 하면 일방적인 계약위반에 대하여 계약해제 통지의 도달에 대한 책임까지도 피해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UNIDROIT 사무국은 PICC에서도 명시적 약정에 의하여 당사자들이 발신주의를 택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약정은 전달과정에서의 멸실이나 실수 혹은 지연의 위험을 발신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불공평한 경우, 특히, 당사자가 상대방의 불이행이 실제로 있거나 상대방의 불이행이 있을 것임이 예견되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행하여야 하는 통지의 경우에 적합하다. 이는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통지의 유효한 수령의 입증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¹⁵⁷⁾

(4) 계약해제의 효력

PICC 제7.3.5조에 따라 계약해제는 양 당사자 모두를 그들의 장래의 이행을 행하고 수령할 의무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또한 계약해제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는 소멸하지 않으며 계약해제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계약 소정의 규정이나 계약해제 후에도 작용하여야 할 여타의 계약조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즉, 계약해제는 일반적으로 양 당사자 모두 장래 그들의 이행을 실행하고 수령할 의무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그러나 CISG에서와 마찬가지로 계약해제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권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된다. 그 외에도, 그 자체의 성격과 내용에 의해 계약해제 후에도 계속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의도된 계약조항 또는 약정은 계속하여 존속할 수 있다.

또한 PICC에 의한 계약해제 역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¹⁵⁷⁾ 오원석·최준선·허해관, 전제서, 32면.

PICC 제7.3.6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자신이 급부한 모든 것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자신이 수령한 모든 것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물품의 성질상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한, 그 가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약이 일정한 기간에 걸쳐 이행되어 왔고 또한 동 계약의 분할이 가능한 때에는 그러한 반환은 계약해제가 그 효력을 발생한 후의 기간에 이행된 것에 한한다.¹⁵⁸⁾

PICC는 원상회복의무에서 원물반환(原物返還)이 불가능 또는 부적절한 경우 가액반환(價額返還)을 인정하고 있다. 이행의 일부만을 수령한 피해당사자가 동 이행부분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PICC가 물품의 매매뿐만 아니라 서비스계약까지도 규율하고 있기 때문으로, 물품매매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원물반환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 2 절 이행기일전의 구제권

1. 이행정지권

CISG 제71조는 불안의 항변 또는 악화의 항변¹⁵⁹⁾으로서의 이행정지와 운송정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임박한 계약위반시의 운송정지권은 20세기 초의 국제매매법 제정 노력 이후 모든 초안들에 포함되어왔으며 결국 이는 ULIS 제73조에 포함되었는데 그 내용은 CISG 제71조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¹⁶⁰⁾ 그러므로 CISG 제71조에 대한 준비 작업은 주로 전제조건의 새

¹⁵⁸⁾ 즉, 분할가능(divisible)한 계약에서, 원상회복의무는 사전에 별 탈 없이 이행된 내용에까지 소급 될 수는 없다.

¹⁵⁹⁾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259~260면.

¹⁶⁰⁾ Hornung, Commentary on Article 71, in: Peter Schlechtriem & Ingeborg Schwenzer ed.,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2nd (Eng)

로운 규정과 함께, 예견되는 계약위반에 대한 새롭고 객관적인 정의에 도달하는 것이 그 목표였으며 두 당사자 사이의 이익의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으므로 ULIS 제73조와 달리 이행정지 혹은 운송정지의 통지를 필요로 한다. 이에 더하여, 이행정지권은 위반당사자가 이행보장을 제공할 가능성을 제공하여 계약의 원활한 유지·이행을 추구하는 CISG의 기본 정신을 따르고 있다.

매매계약 체결 후 상대방이 의무의 실질적 부분을 이행하지 않을 것임이 판명되는 경우 당사자는 자신의 의무이행을 정지할 권한을 가진다.¹⁶¹⁾ 이러한 이행정지권은 매도인과 매수인 양 당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매도인에게만 부여되는 특별한 이행정지권으로 매도인은 운송정지권을 가지며, 이는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운송정지권의 발생요건 등은 이행정지권의 그것과 같으나 매도인의 이행정지권을 발생하게 하는 사유가 존재하였는데 이 사유가 명백하여지기 전에 매도인이 물품을 발송하였다가 그 후에 그 사유가 명백하게 된 경우에 행사하는 이행정지권을 특별히 이와 같이 칭하는 것이다. 운송정지권으로 매도인은 물품이 매수인에게 교부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

이행·운송의 정지는 당연히 의무이행의 일자를 연기시킨다. 그러나 이는 계약의 진행에는 영향을 주지만 자동적으로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하지는 않으며 원 계약의 진행으로의 회귀는 동조 제3항에 의하여 가능하다.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702.

161) CISG, 제71조 : (1) 당사자는 계약체결 후 다음의 사유로 상대방이 의무의 실질적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자신의 의무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a) 상대방의 이행능력 또는 신용도의 중대한 결함.

(b) 계약의 이행 준비 또는 이행에 관한 상대방의 행위.

(2) 제1항의 사유가 명백하게 되기 전에 매도인이 물품을 발송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물품을 취득할 수 있는 증권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매도인은 물품이 매수인에게 교부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 이 항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물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3) 이행을 정지한 당사자는 물품의 발송 전후에 관계없이 즉시 상대방에게 그 정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그 이행에 관하여 적절한 보장을 제공한 경우에는 이행을 계속하여야 한다.

2. 계약해제권

1) 이행기일전 계약해제권

의무의 이행기가 경과하였을 때 발생하는 일반적인 계약해제와 비교하여, CISG 제72조¹⁶²⁾에서 규율하는 예견되는 계약위반(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은 이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상대방에 의한 계약위반이 나타날 조짐이 있는 경우와 관련되어 있다. 동 조항하의 구제권은 아마도 그 요건에 따라 물품의 인도기일 이전에 행사될 것이고 그러므로 계약위반에 대한 효과적인 부가적 구제수단이 될 것이다. 왜냐 하면 피해당사자가 상대방의 불이행의 위협(threat)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신속한 대응으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 이외에, 이행기 이전에 계약해제를 하는 것은 피해당사자가 계약해제 후, 매도인일 경우에는 당해 계약물품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¹⁶³⁾ 매수인의 경우 대체물을 매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계약을 해제하는 당사자는 합리적으로 신속

¹⁶²⁾ CISG, 제72조 : (1) 계약의 이행기일 전에 당사자 일방이 중대한 계약위반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시간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행에 관하여 적절한 보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통지를 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요건은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¹⁶³⁾ Germany, Landgericht Berlin. 99O123/92, 30-09-1992. 양 당사자는 두 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해계약(두 번째 계약)에 의하면, 매도인은 소매상인 매수인에게 신발을 인도해야 하고, 대금지급 기일은 송장일로부터 60일 후였다. 매도인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매수인은 과거의 계약(당해계약 이전에 체결하였던 첫 번째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지급능력에 의혹(doubt)을 이유로 당해계약의 대금지급을 위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매수인에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매수인은 과거 계약에서 매도인이 인도한 신발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매도인은 당해계약을 해제하고 계약의 목적물(신발)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법원은 당해계약에 대한 매도인의 손해배상청구를 확인(sustain)하면서, 계약해제를 위하여서는 장래의 계약위반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하나, 이러한 가능성이 거의 완벽하게 확실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 건에서 장래의 계약위반의 가능성은 계약해제를 정당화한다고 판결하였다.

한 대체거래를 통하여 위반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조기에 확정¹⁶⁴⁾할 수 있다.¹⁶⁵⁾

이행기일전의 계약해제권은 전적으로 피해당사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는 CISG의 일반적인 구조와 접근법을 반영하고 있다. 즉, 당사자들이 그들의 책임 하에 계약의 과정을 성립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CISG 제72조는 그 내용을 풀어보면 두 개의 별도의 구제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계약위반의 예견은 원래 단순히 채무자의 이행거절만을 규정한다고 생각되어져 왔는데¹⁶⁶⁾ ULIS 제76조¹⁶⁷⁾는 이러한 개념을 일반적인, 장래의 중대한 계약위반까지 확장하였다. 실제로 CISG 제72조 제3항은 이러한 하나의 구제권이 두 개의 구제권으로 나누어진다. 즉 장래의 중대한 계약위반이 명백할 것이라는 제1항의 전제조건과, 상대방이 의무의 이행거절을 선언한다는 제3항의 전제조건이 두 가지로 나누어졌다. 동조 제3항의 이행거절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견되는 장래의 중대한 계약위반과는 구별되어 취급되며, 동조 제3항은 계약의 이행거절 그 자체로서 동조 제1항을 위한 장래의 중대한 계약위반의 충분한 근거로 취급된다.¹⁶⁸⁾ 상대방의 이행거절의 선언이 있으면 당사자는 제1항·제2항에서 요구하는 전제조건 없이도 이행기 이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동조 제1항에서 전제조건으로 일반적인 상황이나 계약의 이행거절까지는 도달하지 않는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고 있는데 반하여, 동조 제3항은 오로지 이행거절 당

164) CISG, 제75조 :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해제 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수인이 대체물을 매수하거나 매도인이 물품을 재매각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계약대금과 대체거래대금과의 차액 및 그 외에 제74조에 따른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165) Honnold, *Uniform Law*, p.439.

166) 이전에도 영미법상에는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개념이 존재해 왔다. 이는 현실적 계약위반(actual breach of contract)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존재해 왔다.

167) ULIS, 제76조 :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조정된 일자 이전에 한 당사자가 중대한 계약위반을 범할 것이 명백하다면(it is clear), 상대방은 계약해제를 선언할 권리를 가진다.

168) 이는 당사자들의 의무의 거절이나 태만에 대한 CISG의 태도를 보여준다(Hornung, Commentary on Article 71, p.720).

사자의 선언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구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두 가지 전제조건은 명백히 다르며, 이는 동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통지의 요건을 동조 제1항의 장래의 중대한 계약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CISG 제72조는 또한 CISG 제71조에서 규정하는 이행정지권과도 구별되는데, 그 기초는 예견되는 계약위반의 위협이라는 점에서 이행정지권과 유사하나, 이행정지권이 단지 운송이나 이행의 정지라는 일시적인 구제수단이라는 점에 지나지 않는 것에 비하여 CISG 제72조에서는 이를 보충하여 정지의 상태를 끝내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CISG 제71조의 이행보장의 실패가 CISG 제72조의 전제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¹⁶⁹⁾ CISG 제71조의 이행보장 실패의 상태는 계약의 과정을 자연히 다음 두 가지 상황으로 이끈다. 첫째로 이행기가 도래하여 실질적으로 계약위반을 발생하게 하거나, 둘째로 아직 이행기는 도래하지 않았으나, 그 위협의 수준이 증가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CISG 제71조의 이행보장의 실패는 피해당사자에게 CISG 제72조를 원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이행보장의 실패가 이행거절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피해당사자는 그 시점에서 CISG 제72조를 원용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후술하는 CISG 제73조의 분할이행계약의 해제 역시 미래의 위협에 대해 다루고 있으나 이는 제 72조의 계약해제권과는 다르게 한 특정한 계약유형에 제한된다.

전술하였듯이, 상대방이 중대한 계약위반을 범할 것임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는 이행기 전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이러한 계약해제는 간혹 위험(hazard)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CISG 제72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을 해제한 한 당사자는 여전

¹⁶⁹⁾ 후술 제3장 제1절의 4. 이행정지권의 소멸을 참고.

히 상대방의 이행을 인수해야 하고, 더욱이 이와 같은 당사자의 부당한 계약해제는 이행거절이 되어서 오히려 상대방이 본조 제1항에 따른 계약해제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이다.¹⁷⁰⁾ 그러므로 이행기일전에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CISG 제72조에서 요구하는 이행기일전 계약해제에 대한 요건을 정확히 숙지하고 원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 분할이행계약에서의 이행기일전 계약해제권

CISG 제73조는 분할이행계약¹⁷¹⁾에서 일부의 이행에 관하여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 당해 분할부분·장래의 분할부분에 대한 계약해제의 문제를 규정한다.¹⁷²⁾ 분할인도계약¹⁷³⁾이란 하나의 통일적인 매매계약으로서 적어도 2회 이상에 걸쳐 물품을 분할하여 인도할 것을 규정하거나 이를 허용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말한다.

170) 예를 들어, 매수인에게 인도되어야 할 계약물품을 제3자에게 부당하게 매각하거나 계약물품의 제조공장으로 지정된 공장을 매각하는 매도인의 행위 등은 이행거절에 해당한다(Honnold, *Uniform Law*, p.438).

171) CISG의 영문은 'instalment contract' 또는 'contract for delivery of goods by instalments'라고 하여 국문 본은 이를 '분할인도계약'이라고 번역하는데 이를 '분할이행계약'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석광현, 전게서, 270면).

172) CISG, 제73조 : (1) 물품을 분할하여 인도하는 계약에서 어느 분할부분에 관한 당사자 일방의 의무 불이행이 그 분할부분에 관하여 중대한 계약위반이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분할부분에 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어느 분할부분에 관한 당사자 일방의 의무 불이행이 장래의 분할부분에 대한 중대한 계약위반의 발생을 추단하는 데에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장래에 향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해제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3) 어느 인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매수인은, 이미 행하여진 인도 또는 장래의 인도가 그 인도와의 상호 의존관계로 인하여 계약체결 시에 당사자 쌍방이 예상했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인도 또는 장래의 인도에 대하여도 동시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73) 우리 민법은 분할인도계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 UCC)은 이에 분할인도계약의 위반에 대한 명문을 두고 있는데, 제2-61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instalment contract를 정의하고 있다. : An "instalment contract" is one which requires or authorizes the delivery of goods in separate lots to be separately accepted, even though the contract contains a clause "each delivery is a separate contract" or its equivalent. UCC, Art.2-612 (1).

분할이행에 관한 PICC의 규정¹⁷⁴⁾에 따르면 당사자의 이행은, 필연적으로, 때로는 한 번에 제공되거나 아니면 기간에 걸쳐 실현되어야 한다. PICC는 원칙적으로는 당사자는 그의 의무를 일시에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컨대 특정한 수량의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와 같이, 사안에 따라서는 일시이행을 할 수도 있고 분할이행을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¹⁷⁵⁾

CISG는 분할이행에 관하여 제73조 제1항에서 분할인도에 관한 해제권은 인도된 개별부분에 한정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조 제2항 및 제3항은 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개별인도부분이 다른 부분, 예컨대 이후의 인도부분이나 이전의 인도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은 분할인도부분의 계약위반이 미 이행된 장래의 분할부분에 대하여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제3항은 계약에 의해 이행된 분할부분이 이미 행하여진 인도 또는 장래의 인도에 대하여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구제수단은 매수인과 매도인 양 당사자에 공히 적용되는데 반해 제3항은 매수인에게만 적용된다.

분할이행계약의 분할부분의 인도는 그 목적물이 반드시 동종의 물품이거나 대체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분할인도가 동등한 비율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다.¹⁷⁶⁾

¹⁷⁴⁾ PICC, 제6.1.2조, "...그 일시이행이 가능하고 또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의 의무를 일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¹⁷⁵⁾ PICC는 제6.1.2.조의 주해에서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

<1>. A는 B에게 100톤의 석탄을 "3월에" 인도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A로서는 동 100톤의 분할인도를 하는 것, 예컨대, 동 3월에 주당 25톤씩 인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고 또한 편리할 것이다. 그러나 제6.1.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A는 100톤을 일시에 인도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는 <1>과 같으나, 다만 이제 B가 그의 작업상의 필요에 따라 석탄을 단계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B는 그의 보관시설의 규모가 작아서 동 100톤이 일시에 송부되어 오면 적절히 대응할 수도 없다. A는 그러한 B의 사정을 알고 있다. 이러한 제반사정을 볼 때 이제 A는 동 3월중에 오히려 분할인도를 하여야 한다.

¹⁷⁶⁾ 석광현, 전게서, 271면.

3.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배상액의 산정 면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대체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이고 두 번째는 대체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다.

계약을 해제한 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대체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손해배상청구액은 계약가격과 대체거래시의 가격과의 차액이 된다.¹⁷⁷⁾ 이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계약금액과 대체거래시의 차액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CISG 제75조가 계약금액과 대체거래가의 차액뿐 아니라 CISG 제74조에 의하여 회수 가능한 기타의 모든 손해배상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일반적으로 CISG 제74조에 근거하여 회수할 수 있는 추가손해배상액은 지체손해나 검사비용, 보관비용, 반송비용 또는 대체거래에 의한 운송비용등을 포함하고 있다.¹⁷⁸⁾ 또한 이 때 대체거래는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합리적인 대체거래라 함은 매도인의 경우 가능한 한 높은 가격으로 물품을 매각하는 것을 말하며, 매수인의 경우 가능한 한 낮은 가격으로 대체물품을 매입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한편 CISG 제76조¹⁷⁹⁾는 시가(時價:current price)에 의한 손해액산정을

177) CISG, 제75조 : 계약이 해제되고 또한 해제 후에 합리적인 방법과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수인이 대체품을 구매하거나 또는 매도인이 물품을 재매각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계약대금과 대체거래의 대금과의 차액뿐만 아니라 제74조에 따라 회수 가능한 기타의 모든 손해배상액을 회수할 수 있다.

178) 법무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해설」, 법무부, 2005, 177면.

179) CISG, 제76조 : (1) 계약이 해제되고 또한 물품에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협약 제75조에 따라 구매 또는 재매각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대금과 계약해제시의 시가와의 차액뿐만 아니라 제74조에 따라 회수 가능한 기타의 모든 손해배상액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물품을 인수한 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해제시의 시가에 대신하여 물품인수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2) 전항의 적용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물품의 인도가 행하여졌어야 할 장소에서 지배적인 가격을 말하고, 그 장소에서 아무런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물품의 운송비용의 차이를 적절히 감안하여 상당한 대체가격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장소에서의 가격을 말한다.

규정하고 있는데 계약해제 후 대체거래가 없었을 경우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이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계약에서 정한 물품의 대금과 계약해제시의 시가와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동조 제1항 제1문에 따라서 그 이상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시가란 물품의 인도가 행하여졌어야 할 장소에서의 물품의 지배적인 가격을 말하며, 만약 그 장소에서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의 운송비용을 적절히 감안하여 상당한 대체가격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장소에서의 가격을 말한다. 그리고 시가에 의한 손해액산정을 위해서는 시가 결정시기 또한 중요하게 될 것인데, 물품의 인도 혹은 수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약해제시의 시가를 적용하고 물품의 인도 또는 수령이 이루어진 후 계약해제를 하였다면 동조 제1항 제2문에 의하여 물품을 수령한 때의 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시가를 통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경우 매도인에게는 계약가격보다 시가가 낮을 때, 매수인에게는 계약가격보다 시가가 높을 때 의미가 있을 것이다.¹⁸⁰⁾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한 PICC의 조항들도 위의 CISG 제75조 및 제76조와 일치하고 있다. PICC 제7.4.5조는 피해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체거래를 한 경우 피해당사자는 계약가격과 대체거래가격과의 차액 및 기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4.6조는 피해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대체거래를 하지 않았으나, 적용될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당사자는 계약가격과 계약해제시의 시가와 차액 및 기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서 시가라 함은 인도된 물품이나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계약이 이행되었어야 하였던 장소에서 유사한 상황 하에서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가격으로 하고, 동 장소에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대체적용하기에 합리적으로 보이는 다른 장소에서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¹⁸⁰⁾ 오원석·하강현, 「국제물품매매법」, 박영사, 2004, 256면.

제 3 장 이행기일전 구제권의 이론적 고찰 및 판례분석

CISG 제71조, 제72조, 제73조¹⁸¹⁾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 예견될 때의 당사자의 구제권을 규정하고 있다. 즉, CISG상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기 자신의 의무의 각 이행기(履行期)에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기는 대개 당해 매매계약에서 약정되고, 당사자들이 침묵한 한도 내에서는 CISG에 의하여 보충되어 결정¹⁸²⁾되는데, 자신의 의무가 이행기에 놓인 당사자가 상대방이 장차 그의 의무를 불이행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추후 상대방의 불이행이 현실화된 때에야 비로소 그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수밖에 없다면, 매매계약이 물품을 인도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상호 대가적 의존관계¹⁸³⁾에 비추어 부당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¹⁸⁴⁾

그리하여 CISG는 CISG 제71조, 제72조, 제73조에서 이행기 이전의 계약위반¹⁸⁵⁾에 대한 이행정지권¹⁸⁶⁾과 계약해제권¹⁸⁷⁾, 그리고 분할인도계약에서

¹⁸¹⁾ CISG 제3편(물품의 매매), 제5장(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의 제1절.

¹⁸²⁾ 매매계약상 당사자의 주된 의무인 물품인도와 대금지급의 시기에 관하여 CISG는 우선 매도인의 물품인도시기에 관하여 CISG 제33조에서 세 가지로 첫째, 당사자들이 인도 일자를 약정한 경우 매도인은 당해 일자에, 둘째, 당사자들이 인도기간을 약정한 경우 매도인은 그 기간 중에, 셋째, 위의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계약체결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인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매수인의 대금지급시기에 관하여는 CISG 제58조 및 제59조에서 매도인이 물품, 또는 물품의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때에 대금을 지급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¹⁸³⁾ Hornung, Commentary on Article 71, pp.702~703.

¹⁸⁴⁾ Trevor Bennett, Commentary on Article 71 in: C.M. Bianca & M.J. Bonnel, ed.,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 The 1990 Vienna Sales Convention*(Giuffrè 1987), p.518; 허해관, 전계논문, 92면.

일정한 제한 하에 장래의 분할부분에 대한 계약해제권¹⁸⁸⁾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이행기일전 구제권은 계약위반을 예견한 당사자(aggrieved party, innocent party)¹⁸⁹⁾로 하여금 계약위반을 할 것이 예견되는 당사자(breaching party)¹⁹⁰⁾의 임박한 장래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이행기일전 구제권의 행사가 실제로는 부당한 것이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행기일전 구제권을 행사한 당사자가 오히려 계약위반을 저지른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CISG상 상대방의 의무불이행 내지 계약위반이 장차 발생할 것임이 예견되는 경우에, 계약 그 자체의 위반의 문제를 떠나 예견되는 이행의 위협과 미래의 이행에 대한 침해의 효과를 예견하고 정의하는 연동된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른 대응수단으로 어떠한 구제권들이 있는지, 그러한 각 구제권의 발생요건은 무엇인지, 그 행사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를 중점으로 그 효과와 효력에 관하여 해당 법리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각 구제권들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연구한 법리를 각 구제권과 관련한 각국의 판례와 함께 검토하기로 한다.

185) CISG의 제3편 제5장 제1절의 제목인 "anticipatory breach"를 외교통상부는 "이행이전의 계약위반"이라고 번역하고 있으나, 허해관(전게논문, 92~93면), 석광현("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상의 본질적 계약위반", 「법학논총」 제23집 제2호, 한양대학교출판부, 2006, 23면)은 위 번역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래에 계약위반을 할 것이라는 것이 예견된 당사자의 의무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위반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이행이전의 계약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CISG에 대한 각종 commentary에서도 anticipatory breach에 상응하는 용어로 threatened breach 등의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86) CISG, 제71조.

187) CISG, 제72조.

188) CISG, 제73조.

189) 침해당사자 혹은 채권자라고 하기도 한다.

190) 위반당사자 혹은 채무자라고 하기도 한다.

제 1 절 이행기일전 이행정지권의 이론적 고찰

1. 이행정지권의 요건

1) 의무의 위반

이행정지권의 전제조건은 상대방의 실질적 의무의 위반이다. 그러나 이 위반은 미래의 특정 시기에만 일어날 것이며, 그러므로 이는 이행실패에 대한 위협이다. 이 실질적 의무의 위반은 반드시 그것이 CISG 제25조의 중대한 계약위반에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대한 계약위반의 징조는 물론 이행정지권의 행사를 정당화하나,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¹⁹¹⁾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상의 그 의무의 실질적인 어떤 부분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판명되어야(become apparent) 하며, 따라서 부수적 의무의 위반만으로는 그 요건이 불충분하고 '실질적 부분'을 구성한다는 것은 계약 전체를 고려¹⁹²⁾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¹⁹³⁾

2) 계약위반 예견의 근거

단순히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의 악화만을 참조하여 이행정지권을 행사

¹⁹¹⁾ 이행정지권은 일시적 성질을 갖기 때문이다. 중대한 계약위반의 예견이 가능하다면, 당사자는 CISG 제72조에 따른 이행기일전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두 구제권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으나, 이는 제 사정에 의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이행기일전 계약해제는 이행정지와 비교하여 실익과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실익과 위험에 대하여는 본장 제3절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¹⁹²⁾ 계약 전체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은 한 당사자에게 특정 의무의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의무의 이행의 정확한 시간이나 장소가 이에 포함될 것이며, 계약대로의 이행 시 어떠한 특정한 이익발생의 증명이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것이다.

¹⁹³⁾ Hornung, Commentary on Article 71, p.704.

가능하도록 하는 ULIS 제73조와 달리, CISG는 이행정지의 근거들을 구체화하고 객관화 하고자 한다. 이 근거들은 미래의 방해(disturbance)¹⁹⁴⁾의 모든 원인을 포함할 만큼 광범위하다. CISG 제71조 제1항 (a)호의 '이행능력의 중대한 결함'은 파업, 화재나 자연재해에 의한 생산 공장의 손실등과 같은 일반적인 이행의 장애뿐만 아니라 각종 제한과 같은 일반적으로 유효한 법적 장애들도 포함한다.

동 (a)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능력의 중대한 결함은 이행능력의 중대한 결함과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이에 는 주로 매수인의 능력의 결함이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매도인과 관련하여 그의 물품의 획득이나 이행기 이전에 행해야 할 준비단계도 포함된다. 신용능력의 중대한 결함의 예로는 지급불능이나 그 유사한 경우, 지급준비의 작위 혹은 부작위, 지급정지 등이 있다. 이러한 이행능력 및 신용능력의 결함에 대한 판단 또한 계약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동 조항 (b)호는 계약의 이행 준비 또는 이행에 관한 상대방의 행위에 기인한 방해(disturbance)를 규정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그 의무의 실질적 부분을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위협이 존재하여야 한다.¹⁹⁵⁾ 제3자에 관하여 적절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혹은 결함 있는 재료나 부속, 부적절한 운송, 결함 있는 포장, 사용설명서의 부실 등도 역시 포함될 것이며 이행을 준비하는 행위와 계약을 이행하는 행위의 경계는 유동적이다. 계

¹⁹⁴⁾ Hornung은 예견 가능한 위반에 대하여 disturbance, threat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방해(disturbance)란 일어날 수 있는 장래의 계약위반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예견 가능한 미래의 장애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미 장애(障碍: impediment)가 CISG 및 PICC등의 법리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침해(infringement, violation)와의 구별을 두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방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방해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계약위반이 일어날 위협(threat)이 구체화되어 유형 지을 수 있는 것을 disturbance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¹⁹⁵⁾ 이 부분에 관하여는 이행의 기한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다. 그 예로, 매도인이 원재료나 부수재료를 제 때 획득하거나, 라이선스 등을 제 때 획득하는 데에 실패할 경우 등을 예를 들 수 있을 것이다(Hornung, Commentary on Article 71, p.706).

약의 유지를 위해 '이행을 준비하는 행위'의 언급은 동 조항의 일반적인 목적을 보여주고 있으며 침해당사자가 이행기 이전에 자신의 의무를 정당하게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행정지권은 그런 면에서 CISG 제72조와 연관되어 있다는 견해를 지지하게 한다.

상대방이 그 의무의 실질적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판명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즉, 침해받은 당사자는 관련된 분야의 정보와 사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각종 정보에 관해 조사하고 문의할 의무가 엄격히 부여된다. 또한 CISG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이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들이 그와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3) 예견의 시기

CISG 제71조 제1항은 미래의 위반의 근거가 판명¹⁹⁶⁾될 것을 이행정지권의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예견의 시기는 장래의 위반의 근거가 판명될 때이다. 즉 상대방의 이행능력 또는 신용도의 중대한 결함이 판명되었거나, 계약의 이행준비 또는 이행에 관한 행위 면에서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의 실질적인 부분을 이행하지 않을 것임이 판명되는 때이다. 계약 체결 후에 이러한 근거가 판명되면 그 시기의 요건을 충족하며, 당연히 계약체결 이전 혹은 계약체결 당시에 존재하였던 예견되는 위반 역시 이에 고려될 것이다. 따라서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위반에 대한 CISG 제71조 제1항에 의한 중지는 그 근거를 피해당사자가 인지하였을 때 즉시 행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애가 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였고, 계약위반에 대하여 이행을 정지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그 사실을 계약체결 당시 혹은 그 이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면 이 당사자는 이행을 정지할 수 없다.

¹⁹⁶⁾ 협약 제71조 제1항에서는 그 권리의 행사의 요건으로 판명될 것, 혹은 드러날 것(become apparent)이라는 조건을 요구한다. 동조 제2항은 명백하게 될 것(become evident)을 요구하고 있다.

4) 전제조건

의무이행의 실패는 미래에 일어날 것임에 반해 이행정지권은 현재에 주장되어지는 것이므로, 현재 상황이 미래의 계약위반의 발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능성을 평가할 필요가 발생한다. 당연히 실질적인 확실성은 요구될 수 없으며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불이행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통상 분야에 익숙한 합리적인 당사자들¹⁹⁷⁾이 이러한 개연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그러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장래의 위반에 대하여 지나치게 걱정하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우려만으로는 이행정지를 위하여 요구되는 근거에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2. 이행정지권의 행사 및 효력

1) 이행정지권의 행사

이행정지권은 계약체결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행사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이행을 위한 일자가 지날 때 까지 기다릴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당연히 CISG에 따른 다른 구제수단을 원용해야 한다. 실제로 계약위반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즉, 이행정지권은 이행정지를 위한 조건이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들은 CISG 제6조¹⁹⁸⁾에 따라 CISG 제71조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합의할 수 있다.¹⁹⁹⁾

¹⁹⁷⁾ CISG 제8조 제2항에 따른 당사자.

¹⁹⁸⁾ CISG, 제6조 : 당사자들은 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고, 제12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 대하여도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효과를 변경할 수 있다.

2) 통지의 의무

이행정지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이행정지의 의사 및 그 행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²⁰⁰⁾ 이러한 통지는 즉시(immediately)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가능한 한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이행의 정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통지는 이행정지가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제공되어야 한다.²⁰¹⁾ 이에 관한 통지는 단순히 정보전달 차원에서 이루어지면 족하며 이는 철회가능하다.²⁰²⁾ CISG는 피해당사자가 정지의 통지를 즉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를 명시하지는 않으나, 그 경우 피해당사자는 이행을 정지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²⁰³⁾²⁰⁴⁾ 이러한 통지의 의무를 삽입한 것은 위반당사자가 신속히 이

199) Germany, Oberlandesgericht Köln, 08-01-1997, CLOUT No. 311 장비를 회수하거나 수리하여 즉시 재교부하는 것은 매도인이 CISG 제 71조를 제한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의 지난 지급의 불이행을 이유로 장비를 재교부할 의무를 정지할 수 없다.

200) CISG, 제71조 제3항 제1문.

201) 이와 관련하여 통지의 형태와 전송의 위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CISG 제 27조를 참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지의 효력의 시점에 관하여는, 본 조항과 관련하여 CISG는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PICC는 기본적으로 모든 종류의 통지에 대하여 도달주의를 택하고 있다. 이러한 상충에 관하여는 전달과정에서의 멸실이나 실수 혹은 지연의 위험을 발신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불공평한 경우, 즉 당사자가 상대방의 불이행이 실제로 있거나 상대방의 불이행이 있을 것임이 예견되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여야 하는 통지의 경우에는 협약의 기본정신에 따라 발신주의의 채택이 적합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통지의 도달에 따른 효력에 관하여는 전술한 본고 제2장 제1절 3. 계약해제권을 참고.

202) Hornung, Commentary on Article 71, p.709.

203) 석광현, 전게서, 262면.

그러나 Hornung은 통지의 의무를 이행정지의 부가적인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은 소 잡는 칼로 닭을 잡는 격이라고 하면서, 당사자간의 손해경감의무에 따라 피해당사자는 상대방에게 통지를 할 것이며, 그러므로 이행정지 당사자의 계약위반 여부는 단지 이행정지권의 실질적인 전제조건들로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행정지의 통지요건에 대하여 회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Hornung, Commentary on Article 71, p.710).

204) 많은 사례를 통하여 이행정지를 통지하지 않은 당사자가 이행정지를 원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사례는 본장 제2절을 참고.

에 대응하여 이행보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을 원만히 유지시키려 하는 CISG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장치를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이행정지권 행사의 효력

이행정지권은 피해당사자가 그의 의무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게 하며 이로 인한 계약위반의 위험 없이 당사자가 계약의 과정에서 일탈할 수 있게 한다. 이행정지권의 행사는 계약상의 일정을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피해당사자 의무의 정당한 연기로 참작되어진다.

그러나 장애가 없어지거나 상대방의 적절한 이행보장이 제공될 경우에 이행정지의 상태는 종결되고 계약의 이행은 계속되어진다. 이행정지의 효력은 소급하여 종결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상의 일정은 여전히 적용된다. 계약상의 기한을 준수할 것인지 CISG상의 기한²⁰⁵⁾을 준수할 것인지는 이행정지 당사자의 의무 이행의 지연이 정당한 것이었음이 참작되어야 한다.

이행을 정지하는 당사자는 부정확한 근거로 인한 억측으로 이행을 정지한 것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행정지를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당사자는 역으로 계약을 위반한 것이 된다.

3. 매도인의 운송정지권

1) 운송정지권의 의의와 전제조건

CISG 제71조 제2항에 따라 그의 의무를 이미 이행한 매도인은 물품 발

²⁰⁵⁾ CISG 제33조, 제55조, 제59조의 인도·지급의 기한.

송 이후부터 물품이 매수인에게 교부되기 이전까지, 매수인의 이행능력이 악화될 위험이 있다면 운송정지권(right of stoppage)²⁰⁶⁾을 행사할 수 있다.²⁰⁷⁾

운송정지권은 이행정지권의 확장으로 그 전제조건은 이행정지권의 내용과 동일하다. CISG 제71조 제1항의 원칙은 매수인의 의무이행 환경의 악화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운송정지권은 매도인이 운송중인 물품에 접근가능하게 한다. 당연히 이 때 물품은 이미 발송되었으며 아직 매수인이 수령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즉, 물리적으로 매수인의 점유하에 있지 않아야 한다. 이 때 물품의 소유권이 이미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거나 매수인이 물품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증권을 소지하고 있는지는 관계가 없다.²⁰⁸⁾

2) 운송정지권 행사의 효력

운송정지의 기간에는 이행을 정지하는 당사자가 그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 때 계약은 정지 상태에 있고 매도인의 이행의 지연은 합법적이며 계약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운송정지권에 따라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취득하려하는 매수인의 시도는, 매도인의 운송정지권을 침해하므로 불법적이며 이로 인해 매수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²⁰⁶⁾ 운송유지권(運送留止權)이라고도 한다.

²⁰⁷⁾ 이는 ULIS 제73조 제2항과 상당히 유사하며, 영국법 미국법, 스칸디나비아법 등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독일법에는 포함되어있지 않다(Hornung, Commentary on Article 71, p.712).

²⁰⁸⁾ Hornung은 이행정지권이라는 점에서 운송정지권도 통지의 실패는 운송중인 물품의 운송정지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이 경우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여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적어도 매도인은 운송정지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손해경감 차원에서라도 매수인에게 운송정지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Hornung, Commentary on Article 71, p.712). 그러나 통지 불이행으로 운송정지권이 거절된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운송정지에 관한 적절한 통지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지게 된다.²⁰⁹⁾

CISG 제71조 제2항 제2문²¹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운송정지권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관계에서만 존재한다. 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여 매도인이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하기로 한 경우에도 운송정지권은 관계없이 행사 가능하다. 또한 매도인이 그의 공급자에게 물품을 직접적으로 매수인에게 발송하도록 한 경우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수인의 고객에게 직접 물품을 발송하도록 한 경우에도 여전히 운송정지권은 존재한다. 운송정지권은 물품을 매수인이나 매수인의 사용인이 매도인의 사유지에서 취하도록 한 경우에도 이를 저지하도록 행사할 수 있다. 한편, 매도인이 매수인의 영업소에 직접 물품을 인도하도록 한 경우에는 운송정지권은 그 의의가 미미하다. 이 경우에는 운송정지권 보다는 이행정지권이 더 관련성이 깊다.

제3자(운송인, 창고업자 등)가 매도인의 운송정지요구에 응해야 하는지는 매도인과 제3자의 계약에 의해, 국내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했다면 매도인이 물품의 목적지를 정할 권리가 있고 그러므로 매도인은 이행정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그러한 계약상의 권리가 없는 경우 매도인은 일반적으로 그의 지시에 대한 운송인의 자발적인 승낙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²¹¹⁾ 왜냐하면 매도인의 운송정지요구에 응한 운송인으로서 매수인이 물품의 운송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매수인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9) 매수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물품의 운송 중 멸실 혹은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절차를 시작하려 할 때 매수인은 매도인의 운송정지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그러나 운송인에게 단지 손해배상의 의도를 통지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Hornung, Commentary on Article 71, p.713).

210) 이 항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물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211) 일부 법계에서는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운송을 정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규정들을 찾을 수 있다.; 독일 상법전 제418조 제1문 및 제2문에 의해 발송인(sender)은 물품이 인도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물품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특히 발송인은 운송중인 물품의 운송을 정지하거나 목적지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권한은 물품이 인도 장소에 도착하여 수령인에게 인도될 때 실효(失効)한다(J. Walter, *Transport Law and Forwarder Law* in : M. Wendler, B. Tremml, B. Buecker, ed., *Key Aspects Of German Business Law - A Practical Manual*, 4th Ed., Springer-Verlag Berlin, 2008. p.221).

운송정지권은 물품이 매수인이나 매수인의 대리인 혹은 물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진 대리인에게 인도되면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

4. 이행정지권의 소멸

1) 불안사유의 소멸

임박한 불안 즉, 이행정지의 사유인 장래 위협의 소멸이나 치유는 이행정지권 행사 전후를 불문하고 이행정지권의 행사를 위한 전제조건을 제거한다. 이행정지권이 이미 행사되었고 통지가 행해졌다면 계약과정은 변경된 형식으로 유지되고 이행정지 당사자의 이행의무는 복원된다.

2) 이행을 위한 보장의 제공

CISG 제71조 제3항 2문에 의하여 상대방이 이행을 위한 적절한 보장을 제공하면 이행정지권은 소멸한다. 또한 이를 경계로 이행을 정지하였던 당사자에게는 이행을 계속해야 할 의무가 다시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CISG의 이행보장 제공의 가능성은 이행정지권과 운송정지권 양 구제권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이로 인하여 장래의 계약위반에 대해 불안에 처한 당사자는 이행정지의 정체상태를 피할 수 있다. 이행보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심시키는 말만으로는 이행을 적절하게 보장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행정지를 통지받은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의 의무의 실질적인 부분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을 제거하여 주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 때 동 증거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행동을 입증하는 것이어야 한다.²¹²⁾ 이행을 위한

²¹²⁾ Honnold, *Uniform Law*, p.434.

‘적절한 보장(adequate assurance)’이란 저당권, 담보권의 설정, 양도증서, 보증과 같은 유가증권에만 국한되지는 않으며 계약위반을 예상하고 있는 상대방의 불안을 진정시킬 수단과 형태를 갖춘 보장이라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¹³⁾ CISG에 대한 사무국의 주석은 적절한 보장이란 상대방이 계약을 실제로 이행할 것에 대하여 또는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입게 될 손해를 배상받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합리적인 담보(resonable security)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²¹⁴⁾ 불이행이 있을 것이라는 불안은 다양한 상황 하에서 전개되고 따라서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는 조치의 유형들은 예시적으로 제시하는 수밖에 없는데,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²¹⁵⁾ 매수인의 경우 이전에 거절하였던 대금지급을 재개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취소불능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동맹파업이나 필수적인 재료의 고갈로 인해 발생한 매도인의 이행계속여부의 불안은 동맹파업이 해결되었다거나 새로운 재료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이행보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 이행보장의 실패

이행보장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이행정지권은 계속된다. CISG 제71조 그 자체는 이행정지에서 계약해제까지의 과정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채권자의

213) 예를 들면, 은행의 보증제공, 지급유예기간의 설정,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선취권의 유예 등 (Hornung, Commentary on Article 71, p.715).

214) Text of Draft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pproved by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together with a Commentary Prepared by the Secretariat, Document No. A/CONF.97/5,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이하 사무국주석), Art. 62 para. 13; CISG에 대하여 공식적인 주해서는 없다. 본 문서는 CISG의 초안 과정에서 사무국이 주석을 첨부한 것으로, 초안 당시에 현재의 CISG 제71조는 제62조였다. 이는 UNCITRAL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uncitral.org/pdf/a_conf.97_5-ocred.pdf

215) Honnold, *Uniform Law*, p.434.

적절한 통지 이후에 채무자가 적절한 이행보장의 제공에 실패하는 것이 CISG 제72조의 이행기 이전의 계약해제권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즉, 이행보장의 실패가 이행정지상태를 이행기일전 계약해제로 이끄는지의 문제는 그 법적인 해석이 통일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법리적인 흐름과는 별개로, 이행보장에 실패한 상대방을 둔 피해당사자에게는 이행기일전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더욱 명백하여 지도록 할 수는 있을 것이다. 만약 채권자가 그의 이행을 보장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채권자가 중대한 계약위반을 범할 것임이 명백하게 된다면 이는 본장 제3절에서 후술할 CISG 제72조에 따른 이행기일전의 계약해제권의 근거가 될 것이다.

만약 이행기가 경과하였는데 이행보장에 실패하였던 상대방이 여전히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피해당사자는 계약을 해제²¹⁶⁾하고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²¹⁷⁾할 수 있다. 물론 당사자는 CISG에 따라 이행청구권과 같은 다른 구제권을 원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전에 이행보장이 불가능했던 당사자가 이행기가 지나서까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부가(추가)기간을 지정하거나 특정이행을 청구하는 등의 구제권은 그다지 큰 의미를 갖지 못하고 중국에는 계약해제로 귀결될 것으로 생각된다.

제 2 절 이행기일전 이행정지권 관련 판례분석

1. <사례 3-1>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행정지권 행사의 사례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11849, 00-00-2003

²¹⁶⁾ 이행기가 도과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방이 이행보장을 제공하였었는지 여부는 관계없다.

²¹⁷⁾ CISG 제25조, 제49조, 제64조, 제81조 참고.

신청인 : 매수인 (미국) 피신청인 : 매도인 (이탈리아) 계약종류 : 시즌 패션상품에 대한 독점판매권 준거법 : CISG

1) 사실관계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매수인인 신청인(소재지는 미국)이 매도인인 피신청인(이탈리아의 제조업자)의 패션상품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갖도록 하는 독점판매권계약을 체결하였다.²¹⁸⁾ 계약에 의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한번 혹은 그 이상의 분할인도로 가을/겨울(이하 F/W라 한다) 시즌과 봄/여름(이하 S/S라 한다) 시즌의 물품을 각각 인도하기로 하였으며 지급은 주문 청약을 승낙한 후 15일 이내에 신용장(L/C)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로 되어 있다. 계약이행 과정에서 몇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나 당사자들은 거래를 계속하기로 하고 그러한 문제들에 대하여는 협상하기로 합의하였다.

1월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작은 변경"이 포함된 당해연도의 F/W 시즌 상품에 대한 가격표(price list)를 보내면서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였다. 즉, 계약체결 이후에 이 가격표는 가격인상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교체되었는데 매도인은 6월 매수인에게, 매수인이 신용장을 가능한 한 빨리 개설할 것을 요구하는 당해 연도의 F/W 상품에 대한 수주확인서(order confirmation)를 발송했다. 수주확인서는 두 번째 가격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매수인은 첫 번째 가격표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매도인은 이 요구를 거절하였으며 이에 F/W 시즌 상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 분쟁을 조정하고자 하는 몇 차례의 시도 후에, 매도인은 8월 2일, 다음과 같이 매수인에게 통지하였다(매수인은 F/W시즌 상품에 대한 신용장을, 청약의 승낙 후 20일

²¹⁸⁾ ICC,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11849, 00-00-2003, www.unilex.info.

이내에 개설해야 하며 만약 매수인이 그러하지 못한 경우 계약은 해제될 것임). 이후 당사자 간의 상호 이해불일치를 조정하려는 시도 중, 8월 10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교섭 중에는 계약을 해제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E-메일을 발송하였다. 이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조정의 제안을 자신에게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매수인은 같은 날 "우리는 계약과 독점계약권 합의의 목적에 엄격히 따라야 한다. 이러한 취지하에, 선적일 까지 신용장의 개설에 필요한 물품의 상세를 보내 달라"고 진술하는 답신을 하였다. 매수인은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정보를 조회하는 몇몇 요구를 발송하였으나 매도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어떠한 답신도 받지 못하였다. 9월 12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신용장을 개설하였다는 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9월 19일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하였다.

2) 판정

매수인은 계약상의 중재조항에 따라 ICC 중재절차를 시작하였다. 매도인은 늦은 대금지급과 다른 문제들에 대하여 반대신청(counterclaimed)하였다. 중재판정부는 단일중재인²¹⁹⁾으로 구성되었는데, 중재인은 먼저 해당 계약이 당사자들이 합의한 대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1980(CISG)에 의해 적용될 것임을 결정하였다. 동시에 중재인은 CISG가 물품의 장기(long-term)독점판매계약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해제권이 이탈리아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매수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중재인의 견해는 당사자들은 확실히 각자의 국내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쟁에 대하여 중립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 계약 전체는 CISG가 적용되며, CISG의 적용은 매수인이 주장한 대로 단일물품매매에만 그치지 않는다.

²¹⁹⁾ ICC 중재는 1인 중재와 3인 중재인의 중재판정부로 이루어지는 3인 중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또한 중재인은 이 사안에 대하여 CISG 제63조 제1항²²⁰⁾과 CISG 제64조 제1항 (b)호²²¹⁾가 주로 적용될 것을 결정하였다. 본 사례의 신용장 개설의 실패는 동 조항에서 규정하는 지급실패에 속한다.

매수인은 당 계약에 의하면, ‘계약해제에 관하여는 합의된 세 시즌동안에 매수인이 지급에 실패하거나 파산할 경우에만 계약해제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CISG의 적용을 배제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중재인은 그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기각하였다. 더욱이 중재인은 CISG 제64조 제1항 (b)호에 따른 계약해제권에 대하여 검토하였는데 비록 매도인이 이전에 송금방식의 지급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계약에서의 지급수단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매수인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매수인은 신용장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그의 의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가격표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로는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하였다.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지급의 완전한 거절이며, 이는 의견 불일치의 관점에서 불균형한 반응이다.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은 당해 계약에서 본질적인 의무이며 정황상 매수인은 CISG 제71조의 이행정지권 역시 원용할 수 없다. 왜냐 하면 이 때 매도인이 장래에 계약을 위반할 것이란 사실이 판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재인은 또한 매수인이 적절하게 통지받았는지에 대하여도 고려하였는데, 계약은 모든 통지가 각 당사자의 대표자나 관리자에게 보내도록 규정하였고, 매수인에게의 통지는 영어로, 매도인에게의 통지는 이탈리아어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통지는 매수인의 뉴욕 사무실에 이탈리아어로 보내어졌으며 그의 대표자나 관리자를 명시적으로 수신인으로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재인은 이러한 정황이 통지의 효력을 박탈하지는 않는다

220) 매도인은 매수인에 의한 의무의 이행을 위한 상당한 기간만큼의 부가(추가)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221) 매수인이 제 63조 제1항에 따라 매도인에 의하여 지정된 부가(추가)기간 내에 대금의 지급 또는 물품의 인도수령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선언한 경우 계약의 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

고 결정하였다. 나아가, 중재인은 매도인이 지정한 20일간의 부가(추가)기간은 합리적인 기간이라고 판정하였다. 신용장은 수 시간 내에 개설할 수 있으며, 계약은 신용장이 청약의 승낙일로부터 15 영업일²²²⁾ 이내에 개설될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금의 지급에 20일의 부가(추가)기간을 지정한 8월 2일의 서신은 계약해제의 통지는 아니다.²²³⁾ 이에 매수인은 8월 10일 피고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매도인은 8월 23-24일까지 그에 대한 답신을 하지 않았다. 중재인의 관점으로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늦은 답신으로 인하여 그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방해를 받았을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지정한 부가(추가)기간이 경과함에 따른 이익을 취할 수 없다고 하였다. 매도인은 9월 12일에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그러므로 20일간의 부가(추가)기간은 그 당시에 적용되지 않았다. 계약해제의 통지가 9월 19일에 발송되었기 때문에 매도인은 계약해제권을 원용할 수 없다.

더욱이 신의성실²²⁴⁾에 의한 일반원칙은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계약위반에 대항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매도인이 매수인의 신용장개설 사실을 모른 척 하려고 하였으며 부가(추가)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계약을 해제하려고 마음먹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계약은 매도인에 의하여 부당하게 해제되었다.

당 사례에서, 매수인은 CISG 제71조를 통하여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에 의하여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CISG 제71조는 당사자 의무의 미래의 불이행에 대한 위협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그러므로 매수인이 CISG 제71조를 원용하기 위하여는 F/W 시준 물품

²²²⁾ 공휴일 등을 기산하지 않고 영업일만으로 일자를 기산한다.

²²³⁾ CISG 제26조에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 행하여진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²²⁴⁾ CISG, 제7조 제1항.

에 대한 신용장을 개설할 시기에 매도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어야 한다. 또한 신청인이 CISG 제71조의 이행정지권 행사의 요구조건을 갖추었는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한 면에서, 두 번째 가격표에서의 물품의 가격인상에 따른 의견 불일치가 발생하였을 때, 오히려 매도인인 피 신청인이 매수인인 신청인의 대금지급능력에 대하여 이행정지권을 고려하였을 수는 있다. 이러한 이유를 떠나서도, 매수인에게는 매도인이 장래에 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도록 하는 특정한 이유가 없었다. 만약 매수인이 이행정지권을 행사할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CISG 제71조 제3항 전문에서 규정하는 '이행을 정지한 당사자는 물품의 발송 전후에 관계없이 즉시 상대방에게 그 정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통지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신용장을 개설하기를 거절한 매수인의 이행정지권에 대한 주장은 기각되었다.

3) 평가

본 사례는 이행정지권을 잘못 원용한 사례로, 여기서 매수인은 이행정지권 뿐 아니라 CISG의 정신과 기본적 해석에 대하여도 오해를 하고 있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계약위반이 자신의 의무이행의 정지를 정당화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상대방의 계약위반이 존재하더라도 당사자는 그에 맞는 구제권을 행사²²⁵⁾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계약상 의무이행을 정지할 수 없다.

더욱이, 매수인은 자신의 의무불이행, 즉 지연된 신용장의 개설을 CISG 제71조에 의하여 정당화하려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이행정지권은 미래의 계약위반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고 현재 존재하는 당사자들의 의견 불

²²⁵⁾ 또한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통지도 행사하여야 한다.

일치에 의하여 원용될 수 있는 구체수단이 아니다.

동 사례에서 매수인에게는 그의 대금지급시기에 이행을 정지할 사유, 즉 매도인이 장래에 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혹은 실질적으로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이행-이는 제 사정 하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품질부적합 뿐 아니라 인도지연, 포장 및 상표(trademark)의 부적합, 권리 부적합 등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을 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즉, 판명할 수 있는:become apparent)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CISG 제71조를 원용하였으므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본 사례와 같은 이행정지권은 효력을 갖지 못한다.

또, 매수인은 일방적으로 그의 의무이행을 정지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만약 매수인의 대금지급의 정지가 만에 하나 정당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이행정지에 대한 통지를 행하지 않았으므로(CISG 제 71조 제3항) 이행정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매도인의 계약해제의 정당성 여부와 중재판정부가 내린 판정의 결과를 떠나서, 본 사례는 이행정지를 행사할 수 있는 전제조건과 통지의 요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부정된 사례로, 이행정지의 요건과 행사에 관하여 정리하여 볼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2. <사례 3-2> 적합한 이행정지권 행사의 사례

Belarus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24/13-95, 05-10-1995

신청인	: 매도인 (벨라루스)
피신청인	: 매수인 (불가리아)
계약종류	: 냉장고와 급속 냉동고 매매계약
준거법	: CISG

1) 사실관계

벨라루스의 매도인과 불가리아의 매수인은 냉장고와 급속냉동고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²²⁶⁾ 매수인은 인도받은 물품의 대금지급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매도인은 남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중재절차를 시작하였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의무의 이행을 정지하였고 인도받은 물품에 잠재적인 결함이 있다는 근거로 지급의 불이행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2) 판정

중재판정부는 우선 당 계약을 규정하는 준거법으로는, 계약이 체결된 국가의 법을 따른다는 벨라루스 민법전에 근거하여 벨라루스가 CISG의 계약국이므로, CISG가 적용된다²²⁷⁾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중재판정부는 매도인의 불완전한 물품인도에 의하여 자신의 지급의무 불이행이 정당하게 된다는 매수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²²⁸⁾ 또한 매수인이 이미 인도받은 물품에 대하여 상당한 양의 대금지급을 불이행하였기 때문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이후의 부가적인 물품인도의 거절에 대하여 불이행을 주장할 수 없다.

나아가, 중재판정부는 매도인의 이행정지는 CISG 제71조의,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 판명되는 경우 일방적으로 당사자의 의무이행을

²²⁶⁾ Belarus, Belarus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No. 24/13-95, 05-10-1995, www.unilex.info.

²²⁷⁾ CISG 제1조 제1항 (b)호에 의하여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계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된다.

²²⁸⁾ CISG 제80조에 의하여 상대방의 불이행이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하는 한, 상대방의 불이행을 주장할 수 없다.

정지할 수 있는 이행정지권에 의하여 정당하다고 평결하였다. 실제로, 매수인이 이미 매도인에 대하여 상당한 양의 부채를 떠안고 있으며 나아가 계약에서 약정한 대로 매달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매도인은 일방적으로 물품의 인도를 정지할 권한이 있다. 중재판정부는 또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정지의 의도에 대한 적절한 통지를 행하였으나 이때 매수인이 그의 이행을 보장하여 매도인이 계약에 따라 의무의 이행을 계속하여 계약이 유지되도록 하였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고 평결하였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물품의 결함에 대한 할인으로 지급대금의 2%를 상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평결하였다.

3) 평가

<사례 3-2>는 매도인의 이행정지가 긍정된 사례로, <사례 3-1>과 비교하여 그 요건과 실제적 행사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이 사례에서도 매수인은 매도인에 의하여 인도된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하므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사례 3-1>에서 본 것과 같이 그러한 위반 및 불이행이 무조건적으로 당사자의 의무이행을 정지시키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본 사례에서 매도인은 이전 인도분에 대한 매수인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장래의 인도의무를 정지하였으며 그에 대한 통지를 하여 매수인에게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행정지권의 전제조건과 행사의 요건, 즉 통지의 요건을 준수하여 정당한 이행정지권을 행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사례에서 확인 가능한 매도인의 이행정지사유는 분할이행계약(혹은

장기공급계약일 수도 있다)에서 이전 인도분에 대한 대금 지급의 심각한 지연이다. 즉 매수인의 장래의 지급에 관하여 그 지급능력을 판단할 때 분할 이행계약에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과거의 대금 미지급은 상대방의 장래의 실질적인 의무 위반을 판명할 수 있게 함을 알 수 있다.

3. <사례 3-3> 운송정지권에 관련된 사례

Amtsgerichtshof Frankfurt am Main, 32C1074/90-91, 31-01-1991

원고인	: 매도인 (이탈리아)
피고인	: 매수인 (독일)
계약종류	: 구두(shoes) 매매계약
준거법	: 이탈리아법(CISG)

1) 사실관계

1988년 9월 25일, 독일의 매수인과 이탈리아의 매도인은 DM 10,107.19 상당의 구두(shoes)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²²⁹⁾ 양 당사자는 물품이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수인의 영업소에 배달될 것으로 합의하였다. 당사자들은 또 분할지급으로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고 대금의 40%를, 물품인도 이후 60일 이내에 잔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매도인은 DM 10,107.19 상당의 물품을 송장과 함께 운송인에게 인도하였다. 그러나 매수인의 지급능력을 의심한 매도인의 요구에 의하여 운송인은 물품의 인도를 정지하였고, 매수인이 비로소 대금의 40%를 지급하여 운송이 재개된 것은 5개월이 지난 후였다. 물품의 인도를 수령한 후 매수인은 남은 60%의 잔액을 지급하는 대신에 단지 DM 1,000을 지급하였다. 매도인은 대금의 잔액을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시작하였다.

²²⁹⁾ Germany, Amtsgericht, Frankfurt am Main, NO. 32C 1074/90-91, 31-01-1991, www.unilex.info.

2) 판결

법원은 우선 독일 국제사법규정에 따라 CISG체약국인 이탈리아의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채택하였다.

법원은 매도인의 클레임을 기각하였다. CISG 제71조 제3항에 의하여 이행을 정지하는 당사자는 즉시 이행의 정지에 대한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본 판례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행정지에 대해 통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법원은 매수인이 CISG 제45조 제1항 (b)²³⁰⁾호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3) 평가

<사례 3-3>에서는 매도인이 갖는 특별한 이행정지권인 운송정지권에 관련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즉, 물품을 발송한 후에라도 매수인이 그 물품을 취득할 수 없도록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 사례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지급능력(solvency)에 대하여 정확히 어떤 근거로 의심하였는지는 상세히 알 수 없으나, 운송정지 후 5개월이 지나서야 매수인이 지급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매도인에게는 이행을 정지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행정지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매도인이 운송정지에 대한 통지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을 놓고 보았을 때 매수인의 지급능력에도 의심이 생기고, 매수인에게 다소 악의가 있지 않았나 의심할 수

²³⁰⁾ CISG, 제45조 제1항 : 매도인이 계약 또는 이 협약에 따른 어떠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구제를 구할 수 있다. (a) 제46조에서 제52조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 (b) 제74조에서 제77조에 규정된 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등.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은, 재판관할지가 매수인의 국가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행정지의 통지요건은 이행정지로 인하여 계약의 진행상황이 악화되는 것과 일방의 임의적인 이행정지로 상대방이 부당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불통지에 기인하여 이행정지 당사자가 과중한 부담을 안아야 하는지의 문제는 제쳐두더라도, 통지의 요건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사례 3-4> 이행정지의 통지에 실패한 사례

Netherlands Arbitration Institute, 2319, 15-10-2002

신청인 : 매도인 (네덜란드) 피신청인 : 매수인 (복수의 국제사업자들) 계약종류 : 원유정제 부산물과 GAS 매매계약 준거법 : CISG
--

1) 사실관계

네덜란드의 대륙붕에서 근해 가스전의 탐사와 생산을 하는 몇몇 기업들(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은 원유정제 및 그 생산물과 가스를 판매하는 분야의 주요 국제사업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와 장기계약을 체결하였다.²³¹⁾ 계약의 내용은 원유와 혼합된 콘텐세이트²³²⁾, 소위 'Rijn Blend'를 공급하는 것이고 이는 매수인에 의하여 정제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될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Rijn Blend의 수는 수준이 상승한 것이 확인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공급 문제를 유발하였으므로, 매수인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Rijn Blend의 수량을 정지하겠다고 매도인에게 통지하였다.(1998년 6월) 이

²³¹⁾ Netherlands, Netherlands Arbitration Institute, NO. 2319, 15-10-2002 www.unilex.info.

²³²⁾ 가스 속(屬)에서 천연가스를 채취할 때 지표에서 응축 분리된 천연의 경질액상탄화수소.

에 대하여 아무런 구제조치가 취해지지 않음에 따라 매수인은 계약을 실효(失効)하였다. 한편 매도인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Rijn Blend를 계약가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제3자에게 재판매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큰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매도인은 인도한 Rijn Blend는 계약에서 특정한 품질요구사항이 없었으므로 계약에 적합하다고 주장하였고, Rijn Blend가 매수인에 의하여 사용될 것이라는 특정한 사용목적(정제공정)에 대하여 알 수도 없었을 뿐더러 지금까지 최종 소비자와 관련하여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매도인 측에 따르면, 전술한 경우가 아니었더라도 매수인이 CISG 제39조에서 요구하는 계약부적합에 대한 통지에 실패하였고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고 그의 의무의 이행을 정지하였으므로 매수인은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였다. 매수인은 Rijn Blend가 계약에 부적합하였고 매도인이 특정 사용목적에 대하여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당사자들은 동 분쟁에 대하여 CISG를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2) 판정

중재판정부는 계약에서 품질명세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CISG의 제35조 제1항²³³⁾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더욱이, 계약 체결 시에 명시적으로나 혹은 묵시적으로 특정한 목적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것을 매도인이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CISG의 제35조 제2항 (b)호²³⁴⁾의 적용 역시 배제되었다.

중재판정부는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학문적 견해와 국제 판례를 참고하

²³³⁾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수량, 품질 및 종류에 적합하고,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겨지거나 포장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²³⁴⁾ 계약체결 시 매도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알려진 특별한 목적에 맞는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여 이 경우 매수인이 물품의 품질부적합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고 평결하였다.

중재판정부는 나아가 CISG 제35조 제2항 (a)호²³⁵⁾의 정확한 의의에 대하여 숙고하였는데, 이에 관한 명쾌하거나 통일된 학문적 견해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CISG의 입법역사에까지 거슬러 올라갔을 때의 영미 보통법상의 '판매적합성 테스트'(merchantability test; 합리적인 매수인이 가격의 감액 없이 계약을 체결했을 품질의 물건인지 여부)와 시민법의 '보통품질규칙'의 적용도 중재판정부는 배제하였다.

반면에 중재판정부는 '합리적인 품질표준'을 제시하면서 CISG 제7조 제1항²³⁶⁾의 신의성실원칙과 주로 CISG의 일반원칙으로서 완충작용을 하는 동조 제2항²³⁷⁾의 협약 해석의 원칙을 언급하여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적용되는 법에 따라 해결될 것을 평결하였다. 중재판정부는 이 표준에 따라, 대체거래에서(수은함유량이 대체거래자들에게 알려졌으므로) 계약에서 약정한 가격에 훨씬 못 미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동 Rijn Blend의 품질적합성을 부인하였다.

1998년 6월 인도와 관련된 계약부적합 통지 의무의 위반이라는 주장에 관하여는 중재판정부는 CISG 제39조 제1항²³⁸⁾의 적용을 배제하며 그 근거로 이러한 조항은 기 인도된 부분에 해당하며, 그에 반해 매수인은 장래의 인도분을 거절하였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결하였다.

²³⁵⁾ 물품의 명세를 계약이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동종 물품의 통상 사용목적에 맞는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²³⁶⁾ 이 협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협약의 국제적인 성격과 그 적용상의 통일성의 증진을 위한 필요성 및 국제무역상의 신의성실의 준수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²³⁷⁾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으로서 이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는 이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며, 또는 그러한 원칙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의 원칙에 의하여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²³⁸⁾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그 부적합한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동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

매수인이 품질부적합이 또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실질적인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하였으므로, 매수인의 의무의 이행정지권은 CISG 제71조 제1항에 의하여 1998년 6월 인도분부터 장래의 인도분까지 확장되며, 이는 한 이행 부분에 대한 관련성에 의해 CISG 제73조 제2항에 의하여 규율될 수도 있다고 평결하였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매수인이 CISG 제71조 제3항에 의한 즉시통지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평결하였다. 비록 매수인이 제3자(매도인이 몇 가지 상업적인 문제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매도인의 대리인이라고 고려될 수는 없는)와 이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통신(communication)은 엄밀히는 CISG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한 통지에 달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중재판정부는 장래 인도분에 대한 계약의 취소를 인정하였으나 매도인이 손해배상과 적용 가능한 국내법에 의한 이자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평결하였다.

3) 평가

본 사례에서 쟁점이 된 것은 계약 목적물의 수은수준 상승으로 물품의 품질 부적합을 원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그러한 부적합이 인정된다면 분할이행계약에서 계속된 동 부적합 물품의 인도가 이행정지의 요건이 될 수 있는가이다. 마지막으로, 본 사례에서는 통지의 형식에 대한 문제를 고찰해 볼 수 있다.

먼저, 품질부적합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중재판정부도 적합한 기준을 찾지 못하여 이를 판정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 결과적으로, 매도인의 대체거래(대체거래가 합당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떠나서)시에 본 사례의

계약에서 약정한 가격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매도하였으므로 중재판정부는 본 계약에서 물품의 품질적합성을 부인하였는데 이는 품질기준에 대하여 적당한 기준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판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계약에 부적합한 물품이(분할이행계약에서) 계속 인도되어 왔고 매수인이 이에 대하여 불만을 표명하였으나 매도인으로부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은, 장래에도 그와 같은 실질적 의무위반이 일어날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을 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행정지의 통지에 관한 문제인데, 본 사례에서 매수인은 그러한 문제에 관하여 매도인이 아닌 제3자와 논의하였는데 중재판정부는 이를 이행정지의 통지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그러므로 이행정지를 통지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이행정지의 사유와 이행정지를 행사하고자(혹은 행사하였다는) 하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할 것이다.

또, 본 사례에서 특별히 언급할 만한 사항은, 매도인의 부적합한 물품의 인도가 CISG 제7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래 인도분의 계약해제의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 매수인이 이행정지 시 통지의 의무만 준수하였다면 일단 이행정지권을 행사하고 상대방의 추완 가능성 여부에 따라 장래 인도분에 대하여 계약 해제를 선언하는 권장할 만한 대처가 가능하였다는 점이다.

5. <사례 3-5> 대금지급의 지연으로 이행정지권이 인정된 사례

Rechtbank van Koophandel, Hasselt, AR3641/91, 01-03-1995

원고인	: 매수인 (벨기에)
피고인	: 매도인 (네덜란드)
계약종류	: 시즌 패션상품(의류) 매매계약
준거법	: 네덜란드법

1) 사실관계

벨기에의 매수인은 네덜란드의 매도인에게 패션상품(겨울옷)을 주문하였다. 물품의 인도와 대금의 부분지급 후에 매수인은 여름옷에 관한 두 번째 주문을 청약하였다.²³⁹⁾ 매도인은 이에 대해 첫 번째 주문에서 미지급된 대금을 완전히 지급하여야 여름옷을 인도할 것이라는 답신을 하였다. 매수인은 주문한 두 번째 물품을 인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매도인은 이에 반소(反訴)하였다.

2) 판결

준거법에 관하여 법원은 우선 매수인의 표준약관이 CISG의 체약국인 네덜란드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동 계약은 CISG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매도인이 CISG 제71조에 의하여 이행정지권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즉, 첫 번째 인도에 대한 대금 미지급에 기인한 두 번째 주문 분량에 대한 이행정지인데 특히 매수인의 대금지급에 대한 심각한 지연(7개월에 걸친)은 장래에 매수인이 그의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으로 이끄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또한 CISG 제64조²⁴⁰⁾에 의하여 법원의 명령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매도인은 손해배상과 이자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3) 평가

²³⁹⁾ Belgium, Rechtbank van Koophandel, Hasselt, No. AR 3641/94, 01-03-1995, www.unilex.info.

²⁴⁰⁾ CISG 제64조는 매도인의 계약해제권을 규정하고 있다.

본 사례는 대금지급의 지연이 이행정지의 사유가 된 사례이다. 본 사례에서 매수인은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지는 계약에서 첫 번째 주문 분량에 대한 대금을 완전히 지급하지 않았는데, 7개월 후에 두 번째 분량을 주문하였다. 매도인은 이에 대하여 매수인이 첫 번째 인도분에 대하여 대금을 완전히 지급한 경우에 두 번째 주문 분량을 인도할 것이라는 통지를 하였다. 즉, 두 번째 청약을 받은 시점에서 이행정지권을 행사한 것인데, 7개월간의 대금지급은 두 번째 이행분의 대금지급에 대한 심각한 지연이나 불이행이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판명(apparent)하게 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그러한 7개월이라는 기간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고, 제 사정 내에서 결정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매수인이 두 번째 주문의 인도 후에 이전 미지급분은 물론 두 번째 물품의 대금도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을 제공하였다면 이행정지는 행사되지 않았거나, 이행정지의 행사는 인정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6. <사례 3-6> 상대방의 계약이행 과정에 대해 이행정지권이 인정된 사례
Bundesgerichtshof, XZR111/04, 27-11-2007

원고인	: 매수인 (그리스)
피고인	: 매도인 (독일)
계약종류	: 유리병 제조공급 매매계약
준거법	: CISG

1) 사실관계

1997년 12월, 독일의 매도인과 그리스의 매수인은 매수인의 러시아 고객에게 재판매될 다량의 유리병을 제조·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²⁴¹⁾

1998년 5월 매도인은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매수인의 요구에 응하였다. 계약의 변경내용은 매도인이 매수인의 고객에게 특정 양의 "컨설팅과 마케팅 비용"을 제공하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더 높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었다. 한편, 계약에 의하면, 매수인은 유리병의 생산에 필요한 주형을 구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판매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동 주형에 대하여 매수인이 얻는 이익은 원래의 대금만큼 무이자 차입의 형식으로 두는 한편 그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남아 있도록 하고, 유리병의 제조가 완료되면 그에 대한 구매옵션을 얻는 것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첫 번째 인도 후에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지불된 컨설팅 비용이 계산착오로 인해 부족하다는 통지를 매도인에게 하였고 추가적인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매도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더욱이, 루블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러시아에서의 재판매가 어려워진 매수인은 이미 생산된 물품만을 인수하겠다는 의도의 통지를 매도인에게 전하였다. 그리고 1999년 6월 매수인은 러시아에 운송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주형을 포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매도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따라, 매수인은 컨설팅 비용과 장비차입을 위하여 지급하였던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매도인은 계약의 조기해제에 의하여 잃은 손실에 대해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반소(反訴)하였다.

2) 판결

제 일심과 항소심에서 법원은 매수인의 소송을 기각하였다. 특히 항소심은 매도인이 계약변경 시에 기재되어 있던 컨설팅 비용이 인쇄상의 오류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지도 또는 알 수도 없었다고 판시하면서 매수인이

²⁴¹⁾ Germany, Bundesgerichtshof, NO. X ZR 111/04, 27-11-2007, www.unilex.info.

원 계약에 비해 높은 대금을 지급할 것과 매도인에 의한 컨설팅 비용과의 관계를 확립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장비차입금에 대한 반환은 정상적인 계약의 종료 과정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독일 연방대법원은 제일심과 항소심의 원판결을 파기(reverse)하였다.

우선, 대법원은 CISG 제3조 제1항²⁴²⁾을 원용하면서 물품을 제조하거나 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은 이를 매매로 본다는 요지를 판결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CISG 제8조 제1항²⁴³⁾을 원용하면서, 러시아에서 실제 구매가격을 숨기려 하였던 매수인의 의도를 매도인이 알고 있었거나, 모를 수 없었다고 판결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목적은 계약의 조정 시에 매수인의 고용인에 의하여 매도인에게 공공연히 알려졌으며 상향조정된 구매가격을 완전히 회복하고자 하는 매수인의 진정한 목적은 계약 조정 제안의 용어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제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매수인은 계약의 조정에서의 컨설팅 비용이 잘못 계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입장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대법원은 장비 차입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매수인의 소를 합당하다고 받아들였다.

계속하여 대법원은 CISG 제53조²⁴⁴⁾, 제61조 제1항 (b)호²⁴⁵⁾, 제74조²⁴⁶⁾에 따라, 매수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매도인에게 상계의

242) 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은 이를 매매로 본다.

243)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술 또는 기타의 행위는 상대방이 그 의도를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244) 매수인은 계약 및 이 협약에 의하여 요구된 바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여야 한다.

245) CISG 제61조 제1항 (b)호는 매도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246)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은 이익의 손실을 포함하여 그 위반의 결과로 상대방이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한 손해배상액은 계약 체결 시에 위반의 당사자가 알았거나 또는 알았어야 할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서 그 위반의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에 계약위반의 가능한 결과로서 예상하였거나 또는 예상하였어야 하는 손실을 초과할 수 없다.

권리를 인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매도인의(계약 조정에 따른) 높은 구매대금의 반환의 실패나 보충적인 컨설팅 비용을 지급할 것은 중대한 계약위반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실제로, 매수인이 물품의 수령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있는 후에 매도인은 CISG 제71조 제1항 (b)호에 의하여 이행정지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3) 평가

이행거절은 원칙적으로는 계약해제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는 매수인이 물품의 일부인도만을 수령하겠다고 매도인에게 통지하였기에 매도인이 그 이행을 거절하였는데, 본 사안에서 이행거절 보다는, CISG 제71조 제1항 (b)호의 “계약의 이행을 준비하거나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상대방의 행위”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이행을 정지할 사유가 성립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례에서 일부만을 수령하겠다는 당사자의 이행거절은 계약해제 사유 보다는 계약대로 물품을 모두 인도하도록 요구하는 매도인의 이행정지 사유로 판명할 수 있다.

7. 소결론

1) 이행정지권 행사의 요건

(1) 미래의 위협

이행정지권과 관련하여 한 당사자의 의무 이행의 실패는 미래에 일어날

것임에 반하여 이행정지권은 현재, 즉 계약위반이 일어나기 이전의 시점에 주장되는 것이므로, 이를 판단할 때는 현재 위반의 징조와 그 근거가 미래의 계약위반의 발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능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사례 3-1>에서 매수인은 CISG 제71조를 원용하며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자신의 불이행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는데, 당 사례에서는 당시에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는 미래의 위협이 아닌 이미 일어난 불이행이므로 이행정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기각되었다.²⁴⁷⁾ 또한 이 때 매수인에게는 매도인이 장래에 계약상 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명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한 이유가 없었다.

(2) 실질적 의무 위반의 위협

CISG가 요구하는 징조 즉, 이행실패에 대한 위협(threat)은 실질적 의무의 위반에 해당하여야 한다.²⁴⁸⁾ 이에선 상대방의 이행을 위한 능력이나 신용도의 중대한 결함, 혹은 상대방의 이행을 위한 행위가 포함된다. CISG는 이행정지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 상대방이 그의 계약상 의무의 실질적인 어떤 부분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판명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판명된다는 것은 주관적인 위협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상황을 평가하여 향후의 계약위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필요하다.

²⁴⁷⁾ 이 사례에서 중재판정부는, 오히려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금지급능력에 대하여 이행정지권을 고려하였을 수는 있다고 판결하였는데, 사례를 살펴보면, 매도인에게도 매수인이 장래에 계약위반을 할 것이라고 판명될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다. 이 때 매수인은 인상된 가격표에 대하여 반대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계약을 유지할 의향을 보였으며 신용장 개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매도인과 접촉을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단지, 매수인의 대금지급능력에 관한 불안이 이행청구권 행사의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²⁴⁸⁾ 그러나 반드시 CISG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계약위반에 달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한 요건으로,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관련하여 이행정지권은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의 위협을 그 전제조건으로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전 계약 혹은 한 계약에서 이전의 분할부분에 대한 대금 미지급은 매도인으로 하여금 매수인이 장래에 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할 것이라고 판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사례 3-2>에서 매수인은 기 인도된 분할분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매도인에게 상당한 양의 부채를 떠안고 있었다. 이 때 매도인은 장래의 인도분에 대하여 이행을 정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CISG는 그러한 매수인의 이전의 대금미지급이 장래의 불이행을 추단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사례 3-5>의 매수인의 대금지급에 대한 심각한 지연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기인도분에 대한 대금 미지급에 기인한 매도인의 이행정지와 관련하여, 매수인의 지급의무 불이행이나 지연된 지급은 장래에 매도인으로 하여금 매수인이 그의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매수인의 이행정지권과 관련하여 물품의 품질 부적합에 대하여서는 <사례 3-4>에서 볼 수 있듯이, 매수인이 부적합한 물품의 품질에 대하여 적절한 통지를 행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기다렸는데도 매도인으로부터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장래의 인도분에 대하여 자신의 대금지급의무를 정지할 수 있다.

상대방이 그 의무 이행의 거절의 표시를 하였을 때도 당사자는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사례 3-6>에서 매수인은 판매지에서의 재판매가 어려워 이미 생산된 물품만을 인수하겠다고 매도인에게 통지하였는데 법원은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있는 후에 매도인은 이행정지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음을 판시하였다.

상대방의 미래의 계약위반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전술한 사례들은 대부

분 분할이행에서 이미 일어난 위반을 통하여 장래의 위반의 가능성을 판명해낸 것이다. 그러한 기존의 계약위반은 이행정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유가 되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이나, 이미 일어난 위반만이 이행정지권의 요건이 되거나, 또는 그러한 위반이 반드시 이행정지권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당 사례들에서는 다만 기존의 위반 혹은 불이행으로 인하여 장래의 계약위반으로의 개연성이 판명되었기 때문에 이행정지권의 행사가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CISG는 일반적으로, 화재나 자연재해에 의한 생산설비의 손실이나 각종 법적 장애, 파산과 같은 지급불능의 위협 등도 이행정지사유를 발생시킨다고 해석하고 있다.

2) 이행정지의 통지

당사자는 이행정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행정지의 의사 및 그 행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CISG는 물품 발송 전후에 관계없이 즉시 상대방에게 이행정지에 대한 통지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그의 의무를 위반할 것으로 판명된 상대방에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보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의 정체를 회피하여 중국에는 계약이 해제되는 것을 막고자하는 CISG의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통지와 관련하여 통지의무를 지키지 않아 이행정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례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다. <사례 3-1>에서 매수인은 이행정지권을 주장하며 그 대금지급의무를 정지하였는데, 이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각되었으나, 중재판정부는 이에 더하여, 만약 매수인에게 이행정지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그 통지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행정지권을 원용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사례 3-3>의 매수인의

운송정지는 그 전제조건은 충족되지는 모르나 매도인은 이행정지와 동시에 이에 대한 통지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법원은 매도인의 이행정지는 부당한 것이라고 판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였다. <사례 3-4>에서는 중재판정부는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의 계약부적합성을 확인하여 장래의 인도분에 대하여 매수인이 주장한 대로 계약의 실효(失効)를 인정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과정에서 이행정지(대금지급)에 대한 즉시통지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매도인에게 손해배상과 그 이자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였다. 특히 <사례 3-4>의 경우, 상대방의 의무위반이 이미 있었고, 장래에도 의무위반을 할 개연성이 확보되어서 즉, 이행정지권을 행사할 전제조건이 갖추어져서 당사자가 이행정지를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정지(혹은 운송정지)의 행사를 통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당사자는 이행정지권을 원용할 수 없고, 오히려 당사자가 계약위반의 상태에 처하여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이행정지권의 요건 중 이러한 통지의무를 삽입한 것은 전술한 CISG의 계약유지목적적인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통지의무의 요건이 너무 과하여 이행정지권의 타당성 여부는 당사자의 실질적인 계약위반 가능성 여부의 전제조건으로만 판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²⁴⁹⁾ 확실히 이행정지 통지의무의 위반에 대하여서는 CISG 제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경감의무를 적용하여 통지를 불이행한 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권리를 면제하는 정도의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나, 원래 CISG 제71조에서 규정하는 이행정지권이 실제로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의 구제권인 바, 계약위반이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추단되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계약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 하에서 통지를 수반하지 않은 이행정지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통지의무는

²⁴⁹⁾ Hornung, Commentary on Article 71, p.710.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²⁵⁰⁾

3) 이행보장의 제공

당사자가 성공적으로 이행정지권을 행사하고 그 행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였을 때, 상대방이 그에 대응하여 이행의 보장을 위한 담보를 제공한다면, 이행정지권은 소멸하게 된다. 당연히 정지상태가 종료되면 계약은 다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술한 사례들과 같은 경우의 이행보장이란 매도인의 경우 계약에 부적합하다고 지적된 물품의 품질보완 혹은 하자의 보완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등의 행동이나, 매수인의 경우 지연된 대금 혹은 미지급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등의 부채를 변제하는 행동이 될 것이다. <사례 3-2>에서 중재법원은 다음과 같이 평결하면서 매수인이 이행보장의 제공에 실패하였다고 하였다. “본건에서, CISG 제71조에 의한 두 가지 요건은 충족되었다: 매수인이 떠안고 있는 매도인에 대한 부채 및 그 부채를 변제하는 것에 대한 매수인의 태도와, 매수인에 의하여 행해진 CISG 제71조의 요건(즉, 여기서는 통지의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1993년 6월 29일의 서신에서 ‘부채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이행을 정지할 것이라고 통지하였다. 한편, 동 조항은 상대방이 그의 이행에 대한 적절한 보장을 제공하면 이러한 통지가 있는 이후에도 이행이 재개될 것을 요하고 있는데, 연체금은 현재에도 청산되지 않고 있으며, 매수인에 의한 어떠한 이행보장의 증거도 찾을 수 없다.”

²⁵⁰⁾ 이러한 견해는 계약해제를 규정하는 CISG 제72조가 통지의 의무에 대하여 CISG 제71조처럼 반드시 행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는다. CISG 제72조는 예견되는 계약위반에 대한 계약해제, 즉 계약의 종료를 규정하고 있지만 CISG 제71조의 이행정지권은 계약의 해제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CISG에 따른 이행정지 상태는 정체(停滯)의 상태, 즉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피해야 할 상태를 규정하며, 당사자에게 그러한 상태를 원용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이행정지에 관한 통지의무는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상대방이 이행보장에 실패한 경우,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전술하였듯이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이러한 당사자로서는 CISG 제7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행기일전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더욱 명백할 것이다. 혹은 이행정지의 상태로 이행기가 도래하여 결국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피해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행청구권과 같은 다른 구제권을 원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행보장 제공의 실패는 이행정지 통지 후 상대방의 이행거절의 경우 완벽한 형태로 나타난다.

제 3 절 이행기일전 계약해제권의 이론적 고찰

1. 이행기일 전 계약해제권

1) 장래의 중대한 계약위반의 예견

장래의 중대한 계약위반의 예견이라는 것은 계약상 의무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행기일전에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그러한 위반이 일어날 것이라는 징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징후는 장래에 계약의 중대한 위반²⁵¹⁾이 있을 것이 '명백한(clear)' 정도여야 한다. 즉, 장래에 중대한 계약위반이 있을 것이라는 징후가 명백하여야 한다. 이 구제권의 전제조건은 CISG 제71조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 전제조건과 관련하여 이행정지권과는 달리 장래의 계약위반의 근거가 구체화²⁵²⁾되어 있지는 않지만 CISG 제71조 제1항 (a)호, (b)호의 근거를

²⁵¹⁾ CISG 제25조의 중대한 계약위반에 관하여 본고 제2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다.

²⁵²⁾ CISG 제71조 제1항 (a)호, (b)호.

CISG 제72조에서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 하면 이행정지권의 근거들은 모든 유형의 가능한 위협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⁵³⁾

한편 PICC는 제7.3.3조 불이행의 예견에서 "당사자 일방의 이행이 있어야 할 일자가 도래하기 전에도 그의 중대한 불이행이 있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조는 예견되는 불이행이 이행기에 놓인 때의 불이행과 동일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설정한다. 그 요건으로 장차 불이행이 있을 것임이 명백하여야 하며, 단지 의혹만으로는 비록 그 의혹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부족하다. 나아가, 당해 불이행은 중대한(fundamental) 것이어야 하고 또한 이행을 수령할 당사자 즉 채권자는 계약해제에 관한통지를 하여야 한다.²⁵⁴⁾²⁵⁵⁾

2) 상대방의 이행거절

UNIDROIT 사무국 주석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CISG에서도 CISG 제72조 제3항을 통하여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경우 당사자는 통지의 요건을 지키지 않고서도 동조 제1항을 원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상대방이 이행거절(repudiation)²⁵⁶⁾을 선언하면 당사자

²⁵³⁾ 가능한 장래의 계약위반의 근거로는 전쟁이나 화재로 인한 생산시설의 멸실, 외환법에 의한 지급제한, 특허취득의 실패, 이용금지령이나 원재료 확보의 실패, 파업이나 유사한 상황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당사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무관계하다(Hornung, Commentary on Article 71, p.721).

²⁵⁴⁾ UNIDROIT 사무국주석

²⁵⁵⁾ 불이행이 예견되는 예로는 일방이 자신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경우, 즉 이행거절의 경우가 있다. 그러나 중대한 불이행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제반사정으로 보아 추단될 수도 있다. UNIDROIT 사무국의 주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설로 불이행의 예견에 대한 예시를 하고 있다. : A는 오일(oil)을 'M/S Paul' 호에 선적·송부하여 B에게 2월 3일에 몬트리올에서 인도해줄기로 약속하였다. 1월 25일이 되어서도 동 'M/S Paul'호는 몬트리올에 도착하기까지 여전히 2,000Km 항해거리를 남겨두고 있었다. 항해속도를 볼 때, 동 선박은 2월 3일은 불가능하고 빨라야 2월 8일해야 비로소 몬트리올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안에서 시간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때, 상당한 이행지체가 예견되므로 B는 2월 3일 이전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²⁵⁶⁾ 이행거절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진지하고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채권자로

는 이행기 이전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동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제의 통지요건도 지켜야할 필요가 없다. 한 당사자가 진지하고 명백하게 그의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중대한 계약위반 행위이다.²⁵⁷⁾ 한번 의무의 이행거절이 있는 후에는 이 거절은 철회할 수 없다. 한 당사자가 그 중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면, 자동적으로 계약해제권이 발생하며 실제 계약위반의 발생요건과 같은 전제조건은 요구되지 않는다. 이 때 상대방은 즉시, 또 아무런 제약 없이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²⁵⁸⁾

3) 전제조건

장래의 계약위반의 위협에 대응하여 이행기일전에 계약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위협되는 계약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동조 제1항의 '명백한(clear)'이라는 것은 위협에 대한 당사자의 의식 정도뿐만 아니라 계약위반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는 높은 정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명백한'이라는 조건은 개연성의 정도를 정밀하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기에 그 이상의 해석이 필요하다. 가상의 확실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는 합리적인 당사자들에게 명백한 위협이 있을 것이 확실하다는 상당히 높은 정도의 개연성을 필요로 한다. 용어의 측면에서 개연성의 정도가 CISG 제71조와 제73조의 내용에 비해 확연해야 하고 객관적인 것으로, 즉 합리적인 사람²⁵⁹⁾들도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

하여금 객관적으로 채무자의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석광현, 전제서, 267면).

²⁵⁷⁾ Hornung은 이것이 '가장 완벽한 형태'의 계약위반이라고 언급하고 있다(Hornung, Commentary on Article 72, p.727).

²⁵⁸⁾ Hornung, Commentary on Article 72, p.727.

²⁵⁹⁾ 합리적인 사람에 관하여는 전술한 CISG 제8조 제3항을 참조.

4) 통지의무

계약을 해제하기 이전에 CISG 제72조 제2항은 상대방이 이행에 관하여 적절한 보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통지를 행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먼저 피해당사자는 계약해제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통지의 목적이 채무자로 하여금 그의 의무이행의 적절한 보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채권자는 계약해제의 원인을 언급하고 미래의 중대한 계약위반의 불안에 대해 충분히 명료하게 언급하여야 한다.²⁶⁰⁾ 이러한 통지는 계약해제로 인한 채무자의 가혹함을 경감하고 뜻하지 않은 일에 대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된다. 채권자의 통지는 채무자에게 그의 이행의 보장을 제공할 기회를 줌으로써 계약해제권의 행사가 불필요해지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과정은 계약위반의 위협이 명확해지는 순간부터 계약이 해제되는 때까지의 기간을 크게 연장시킬 수 있다. 동 계약해제권을 무효로 만드는 몇몇 경우로 인한 이러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CISG 제72조 제2항²⁶¹⁾은 추가로 두 가지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는 시간이 허용하는 경우에 통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통지는 제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²⁶²⁾ 시간이 허용하는 경우의 조건은 인도기간이 현저히 짧거나 물품의 가격이 빠르게 변동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많은 경우에 채권자가 통지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가

²⁶⁰⁾ 이는 해제에 앞서 해제할 의사를 통지하는 것이므로 CISG 제26조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와는 구별된다(석광현, 전제서, 269면).

²⁶¹⁾ 시간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행에 관하여 적절한 보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통지를 하여야 한다.

²⁶²⁾ 그러나, 현대의 통신기술을 생각할 때 실무상 시간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일 것이다(석광현, 전제서, 270면).

있는데, 특히 상대방에게 이행의 보장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경우 혹은 계절상품 등으로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의무의 성질이 대체되어 신속한 대체 거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통지는 무의미하게 된다. 그러므로 만약 피해당사자가 통지를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면²⁶³⁾ 당사자는 지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후의 절차는 상대방이 이행거절을 선언했을 때의 경우와 같다.

5) 통지와 보장의 제공

CISG 제72조 제2항에 따른 통지의 형식은 CISG 제27조²⁶⁴⁾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 통지는 계약을 위반할 위험이 있는 당사자가 계약해제를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이행보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해진다. 그러나 위와 같은 통지요건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사자들이 이행보장제공에 동의하도록 하는 것으로, 통지의 수령자는 수령한 통지의 효력에 따라 행동을 취하는 것이 옳을 것이나,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이행의 보장을 제공하도록 특별히 요구할 필요는 없다.²⁶⁵⁾

한편 PICC는 동 원칙 제7.3.4조 ‘적절한 이행보장’에서 “장차 상대방의 중대한 불이행이 있을 것임을 합리적으로 믿는 당사자는 적절한 이행보장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동안에는 그의 이행을 보류할 수 있다.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러한 이행보장이 제공되지 않는 때에는 이행보장을 요구한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행정지권 및 계약

²⁶³⁾ 이러한 불합리의 정도는 전술한 합리적인 당사자들의 객관적인 척도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²⁶⁴⁾ CISG, 제27조 : 이 협약 제3편에 별도의 명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이 협약 제3편에 따라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 청구 그 밖의 통신을 한 경우에, 당사자는 통신의 전달 중에 지연이나 오류가 있거나 또는 통신이 도달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통신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²⁶⁵⁾ Hornung, Commentary on Article 72, p.723.

해제권의 전제조건으로 중대한 불이행의 합리적 예견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황의 당사자는 적절한 이행보장이 있을 때까지 그 이행을 보류할 수도 있다. 그리고 PICC에 따르면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적절한 이행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CISG에서 단순히 이행보장을 기대하며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수준보다 더 적극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PICC의 주해서는 무엇이 적절한 이행보장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정에 달려있다고 하여, 경우에 따라 채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것임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어, 단순히 상대방의 확약이나 의도 표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해석되는 CISG의 그것²⁶⁶⁾과는 차이가 있다.²⁶⁷⁾ 그러나 이러한 CISG와 PICC 상의 차이는 CISG와 PICC 공히 적절한 이행보장을 판단함에 있어 제반사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충될 요소는 없다고 사료된다. 즉, CISG 하에서도 단순한 확약이나 이행의 의도표명만으로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이행보장의 실행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위반당사자가 이러한 통지에 대하여 거절의사를 표명하거나 무응답 한다면 피해당사자는 지체 없이(without delay)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이나, 위반당사자가 이행보장을 제공하고 피해당사자가 제공된 이행보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피해당사자의 계약해제권은 소멸한다.

6) 계약해제의 효과

CISG 제72조에 따라 이행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면 CISG 제81조²⁶⁸⁾ 이

²⁶⁶⁾ Hornung, Commentary on Article 72, p.724.

²⁶⁷⁾ UNIDROIT 주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설로 예를 들고 있다. ; 단지 하나의 건조대(建造塼)를 보유하고 있는 소형 선박제조업자 A는 B에게 1척의 보트를 전해주기로 약속하였다. 동 요트는 5월 1일에 인도되어야 하고 그보다 늦으면 안 된다고 약정되었다. 그 후, B는 A가 C에게도 요트를 같은 시기에 건조해주기로 약속한 사실을 C를 통해 알게 되었다. B는 A에 대해 동 5월 1일에 요트가 틀림없이 인도될 것이라는 적절한 보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그에 응하여 A는 그가 그와 B 사이의 계약을 어떻게 이행할 예정인지를 만족할 만한 정도로 충분히 B에게 설명해주어야 한다.

하에 따른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당사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면하고, 이미 계약을 이행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이 해제되어도 손해배상의무는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CISG상의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²⁶⁹⁾ 계약의 해제 후에 상황이 바뀌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되거나 실제로 이행할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미 계약해제된 경우라면 그러한 채무자의 능력 및 의사는 계약해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²⁷⁰⁾

2. 분할이행계약에서의 계약해제권

분할인도계약에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이미 인도받은 부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장래의 부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이미 인도받은 부분과 장래의 부분에 관계없이 분할이행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분할인도에서의 계약해제를 다루는 조항이 CISG 제73조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부분에 대하여 언급하되 장래의 분할인도분의 계약해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사례는 장래의 분할부분 계약 해제 부분만 연구하기로 한다.

1) 개별인도부분의 계약해제

동조 제1항에서는 분할인도계약에서 개별인도부분에 대한 계약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분할인도계약에서 인도수령한 개별부분이 중대한 계약

²⁶⁸⁾ 계약해제의 일반적인 효력은 본고 제2장 제1절에서 언급한 이행기의 계약해제 효력과 같다.

²⁶⁹⁾ CISG상의 면책사유에 관하여는 CISG 제79조 및 제80조 참고.

²⁷⁰⁾ 석광현, 전거서, 269면.

위반이 되는 경우에 당사자는 그 개별 부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 분할인도계약에서 개별적인 인도부분은 독자적인 계약처럼 다루어지며²⁷¹⁾, 여기에는 CISG의 일반적인 규정들이 적용될 것이다. 즉, 계약이행 과정에서 CISG 제25조, 제49조, 제64조에 따라 상대방의 중대한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제73조 제1항은 동 원칙이 분할인도계약의 분할부분에도 적용됨을 명시한 것이다.²⁷²⁾ 이 경우 중대한 계약위반의 존재 여부는 본 연구 제2장 제2절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CISG 제25조의 요건에 따른다. 계약해제를 위하여 CISG에서 계약해제를 규정한 조항²⁷³⁾을 각각의 분할분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때 적용여부의 결정적 기준은 당해 분할분에 한하여 중대한 계약위반이 존재하는지 여부이며, 이러한 계약위반의 존재가 긍정된다면 본 제73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분할분에 한하여 계약의 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²⁷⁴⁾

해제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CISG 제26조²⁷⁵⁾와 제27조²⁷⁶⁾가 적용된다. 제1항은 해제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기간을 제한하지 않으나, 분할부분에 관하여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였거나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CISG 제49조 제2항과 제64조 제2항의 원칙²⁷⁷⁾이 이 경우에도 적용된다.²⁷⁸⁾

²⁷¹⁾ 전술한 UCC 제2-612조를 참고.

²⁷²⁾ 즉 개별적인 분할부분은 마치 협약의 일반적인 규칙들이 적용되는 독립적인 매매계약처럼 취급된다(석광현, 전제서, 271면).

²⁷³⁾ 그 요건과 매수인, 매도인의 구제권 면에서 각각 CISG 제25조, 제49조, 제64조가 될 것이다.

²⁷⁴⁾ Honnold, *Uniform Law*, p.442.

²⁷⁵⁾ CISG, 제26조 :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 행하여진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²⁷⁶⁾ CISG, 제27조 : 이 협약 제3편에 별도의 명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이 협약 제3편에 따라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 청구 그 밖의 통신을 한 경우에, 당사자는 통신의 전달 중에 지연이나 오류가 있거나 또는 통신이 도달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통신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²⁷⁷⁾ 각각 매수인과 매도인의 계약해제권을 규정한 것인데, 각 조항 제2조의 내용은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상대방이 이행을 한 경우에, 당사자는 다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해

본 CISG 제73조 제1항의 저변에는 계약의 분할가능한 일부의 불이행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과도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한다.²⁷⁹⁾

2) 장래의 분할부분에 대한 계약해제

CISG 제73조 제2항에 따라, 어느 분할부분에 대해 상대방의 계약위반이 존재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장래의 분할부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일어난 의무위반이 장래의 분할부분에 대해 중대한 계약위반이 되리라고 판단하는 데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충분한 근거는 CISG 제72조의 '명백한' 경우보다 약한 정도를 의미한다. 즉, 장래의 분할부분에 대한 계약해제권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분할부분에 관하여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이미 의무를 불이행하였어야 하고, CISG 제71조와 제72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은 이행능력 또는 신용도의 중대한 결함만으로는 미흡하다.²⁸⁰⁾ 여기서 약한 정도란 CISG 제71조 및 제72조에서 요구하는 근거의 정도이지 계약위반의 정도가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행능력 또는 신용도의 결함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CISG 제73조 제2항이 그 조건으로 이미 계약위반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 정도를 파악할

제권을 상실한다. (가) 이행지체의 경우, 매수인의 경우 인도가 이루어진 것을 안 후 합리적인 기간 내, 매도인의 경우, 이행이 이루어진 것을 알기 전. (나) 인도지체 이외의 위반의 경우, 당사자가 그 위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알았어야 했던) 때, 지정한 부가(추가)기간이 경과한 때, 또는 상대방이 그 부가(추가)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

²⁷⁸⁾ 석광현, 전거서, 272면.

²⁷⁹⁾ 이러한 접근법은 매도인이 물품의 일부만을 인도하거나 인도된 물품의 일부만이 계약에 적합한 경우에 대한 전술 제51조의 접근법과 유사하다. 이러한 경우에 동 제51조는 부족 또는 부적합한 부분에 한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권들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해제권도 포함되어 있다. CISG의 양 조항은 그러한 부적합한 부분에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해제라는 개념을 특정한 인도나 지급과 같은 보다 협소한 문제에 적용시키고 있다(Honnold, *Uniform Law*, p.442).

²⁸⁰⁾ 석광현, 전거서, 272면.

수 있다. 이러한 기준 하에서 일련의 계약위반(series of breaches)은 그 중 하나로는 계약해제가 정당화되지 않았더라도 각 계약 위반들을 하나로 합하였을 때 상대방에게 아직 이행되지 않은 남은 부분에서도 중대한 계약위반이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한다.²⁸¹⁾ 또, 과거의 인도분에 대한 의무위반이 존재하면 족하므로 일어난 계약위반이 중대한 계약위반일 필요는 없다. 본 조항을 장래의 분할부분에 대한 계약해제에 적용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의무위반이 장래의 분할부분에 대한 중대한 계약위반의 발생을 추단하는 데 충분한 근거가 예견되는가이다.²⁸²⁾

CISG 제73조 제2항에 의하여 장래의 분할부분에 대한 계약해제의 요건이 구비되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단지 장래의 모든 분할부분에 대한 것만 해제가 인정되고, 계약 전체가 소급적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제71조에 따른 이행정지권은 제73조에 의해 규율되는 분할인도계약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양 조항의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피해당사자는 장래의 분할부분에 관하여 이행을 정지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²⁸³⁾

마지막으로, 제2항 말미의 단서에 의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계약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상실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3) 상호의존성에 의한 계약해제

CISG 제73조 제3항에 의하면 분할인도계약에서 어느 인도에 대해 매수인이 계약을 실제로 해제하는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인도 또는 장래의 인도에 대하여도 동시에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 어느 분할부분에

²⁸¹⁾ Honnold, *Uniform Law*, p.442.

²⁸²⁾ 석광현, 전제서, 272면.

²⁸³⁾ 석광현, 전제서, 273면.

대하여 중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매수인이 실제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당해 분할부분은 물론 이미 인도된 분할부분에 관하여도 계약을 소급적으로 해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래의 분할부분에 대하여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CISG 제73조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그 요건이 충족되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때 과거의 인도 또는 장래의 인도가 해제하고자 하는 현재의 인도와 서로 관련되어 있어서 계약 체결 시에 당사자 쌍방이 예상했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분할 인도되는 물품들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 때문에, 하나의 부적합한 인도로 인하여 나머지 인도분이 기존 인도분과 장래에 인도될 물품 전부가 당사자들이 처음계약 체결 시에 예상했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어야 한다. 그러한 예로는 분할하여 인도하는 대형기계로서 매수인의 영업소에서 조립되어 사용하기로 한 경우, 한 인도분의 중대한 설계하자로 인하여 그것이 치유되거나 대체될 수도 없을 경우, 기존 인도분과 장래의 인도분을 조립하여도 대형기계로는 사용될 수 없으므로, 즉, 당사자들이 당초 예상했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은 기존의 인도분에 대하여 그 수량을 반환하고 그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현재 인도분 및 장래의 분할인도까지도 계약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²⁸⁴⁾ 이 경우 상호의존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 목적물은 반드시 대형기계류와 같은 경우에 한정되는 않을 것이다. 목적물이 원자재인데 각각의 인도된 원자재들이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여야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면, 한 분할 인도된 원자재의 품질이 계약상 품질과 상이하여 기존 인도분 및 장래에 인도될 것까지도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이 경우에도 CISG 제73조 제3항을 원용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²⁸⁵⁾

²⁸⁴⁾ 사무국주석, Art. 64 paras 4, 7.

²⁸⁵⁾ 사무국주석, Art. 64 para 8.

이 때 당사자는 인도된 부분에 대한 계약위반이 중대한 것인지 여부, CISG 제72조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장래에 대하여 중대한 계약위반의 발생을 추단하는 데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Honnold는 본 제3항의 요건에 대하여,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은 중대한 계약위반에 비해 보다 엄격한 기준이며 또한 이러한 법문은 계약해제가 하자 없는 물품에까지 확대되며 그리하여 아무런 문제없이 수령된 물품에 대해서도 계약해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기존 분할분과 장래의 분할분에 관한 한, 계약해제는 전적으로 현재 인도된 하자있는 물품과의 상호관계에 기초한다고 하였다.²⁸⁶⁾

동 조항을 원용하여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현재의 계약을 해제할 때 동시에 기존 인도분 및 장래의 인도분에 대한 계약해제선언을 하여야 한다.

제 4 절 이행기일전 계약해제권 관련 판례분석

1. <사례 3-7> 건본의 지연인도로 계약을 해제한 사례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8786, 00-01-1997

신청인	: 매도인 (의류제조업자)
피신청인	: 매수인 (의류소매상)
계약종류	: 계절상품의류 매매계약
준거법	: CISG & 스위스법

1) 사실관계

매도인인 한 의류 제조업자는 의류 소매상인인 매수인과 특정 양의 물품

²⁸⁶⁾ Honnold, *Uniform Law*, p.444.

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²⁸⁷⁾ 매도인은 인도 한 달 전에 매수인에게 견본을 제시하였으나 12일 후에 매수인은 물품의 품질에 관하여 불만을 표시하였다. 매도인은 즉시 새로운 일련의 견본을 인도하였다. 그러나 매수인은 계약의 내용이 계절상품이었으며 그러므로 기간 내에 납품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의 청약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였다.

2) 판정

위탁조건(terms of reference)²⁸⁸⁾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CISG와 스위스의 법이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

본안에 대하여, 중재판정부는 견본에 대하여는 인도의 기한이 정하여져 있지 않으며, 견본은 물품이라고 간주할 수 없지만 견본의 늦은 인도가 중대한 계약위반을 구성하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결하였다.

중재판정부는 지연된 인도는 중대한 계약위반을 구성하며, 매도인이 결함 있는 견본을 인도하였기 때문에 합의된 일자에 물품을 인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불러일으켜, 그러므로 계약의 중대한 위반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다고 판결하였다.

매도인의 기간 내 인도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중재판정부는 CISG 제 35조²⁸⁹⁾나 제 39조²⁹⁰⁾ 혹은 제 7조 제 1항²⁹¹⁾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고, 그러

²⁸⁷⁾ ICC, ICC Court of Arbitration, NO. 8786, 01-1997, www.unilex.info.

²⁸⁸⁾ ICC중재의 특징 중의 하나로, 쟁점정리사항이라고도 하며, 중재판정부가 작성하는데 작성한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쟁점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작성된 위탁조건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파악된 각 쟁점에 대하여 판정을 한다. 위탁조건에 들어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중재판정부는 판정하지 않는다.

²⁸⁹⁾ 매도인의 물품의 계약적합성 의무.

²⁹⁰⁾ 계약 부적합한 물품에 대한 매수인의 통지기한. 이 경우 아직 물품이 인도되지 않았으므로 본 조는 적용될 수 없다.

²⁹¹⁾ 신의성실의무.

므로 매수인은 CISG 제72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정하였다.

나아가, 중재판정부는 동 사례에서 매수인이 손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매도인이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매도인은 CISG 제77조²⁹²⁾를 원용할 수 없다고 하며 그러므로 매수인은 CISG 제74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배상액은 CISG 제77조에 따라 감액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3) 평가

<사례 3-7>은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이행기 전의 계약해제가 인정된 사례이다. 특히 부적합한 견본의 인도로 인한 견본 재교부가, 계절상품으로서 기간 내 납기가 중요한 사안에서는 중대한 계약위반의 가능성을 명백하게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례이다. 즉, 본 사례에서 물품의 지연인도는 중대한 계약위반이라는 것인데 견본의 지연인도는 해당 물품의 지연인도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게 되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손해경감의무와 관련하여 매수인이 손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²⁹³⁾에서 손해경감 노력이 인정되었다는 점도 특이할만하다.

2. <사례 3-8> 대금지급 거절로 계약해제권이 인정된 사례

Supreme Court of Queensland, Civil Jurisdiction 106 of 1996, 17-11-2000

²⁹²⁾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이익의 손실을 포함하여 그 위반으로부터 야기된 손실을 경감하기 위하여 그 사정에 따라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반당사자는 경감되었어야 하는 손실의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감액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²⁹³⁾ 매수인은 기한 내 납기가 불가능 할 것으로 보고 매도인에게 대금지급에 대하여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매도인은 이에 무응답 하였다.

원고인	: 매도인 (오스트레일리아)
피고인	: 매수인 (말레이시아)
계약종류	: 고철 매매계약
준거법	: CISG

1) 사실관계

오스트레일리아의 매도인과 말레이시아의 매수인은 약 \$ 4,920,000 상당 (30,000메트릭톤)의 고철(과부족 10%허용)을 메트릭톤당 \$ 164의 가격으로 C.N.F.F.O. 말레이시아 Kemaman항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²⁹⁴⁾ 서면계약에 의하면 선적은 1996년 6월 중으로 오스트레일리아의 어느 항구에 서나 이루어져야하고 지급은 취소불능 신용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매도인은 용선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매수인에게 선박의 상세와 특징을 제출했어야 하였다.

양 당사자들이 이전에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었기에 당사자들은 매도인이 용선계약 이전에 선박의 상세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구두로 합의되었다. 그 이후 고철의 선적은 1996년 8월과 9월에 이루어져야 하고 60일 이내 동년 8월 1일 전에는 신용장이 개설되어야 한다고 합의되었다.

1996년 6월, 매수인 회사경영진의 변경이 있었다. 새로운 경영진은 신용장 개설에 관한 새로운 절차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신용장 개설을 허가하기 이전까지 신용장 개설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매도인은 이미 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고철계약 가격은, 시장에서의 물품가격 하락으로 인해 현재 시장가격보다 미화 \$ 705,000만큼 높았다.

²⁹⁴⁾ Australia, Supreme Court of Queensland, Civil Jurisdiction No. 106 of 1996, 17-11-2000, www.unilex.info.

동년 6월 31일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선박의 상세와 특징을 제출하면서, 선박의 예상 도착시간에 대한 상세 설명서를 전달하였다.

매수인이 합의된 일자에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자, 매도인은 계약에 따라 동년 8월 8일에 고철을 선적할 것이라고 하며 늦어도 8월 7일까지 신용장이 개설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했다. 또한 매수인이 신용장개설에 실패할 경우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고철을 처분하는 절차를 밟고, 가능하다면 용선계약을 취소하고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매도인은 해당 물품에 대한 대체거래를 위하여 새로운 구매자를 찾기 시작하였다.

8월 7일에 매수인은 새로운 경영진이 이 문제에 대하여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답신하였다. 8월 8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8월 9일 정오까지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지 답신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매수인은 집행위원회 회의가 열릴 때까지 답변을 할 수 없었고, 8월 9일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하였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계약해제에 이의를 제기하며, 매도인은 용선계약 이전에 선박의 상세와 특징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매도인이 계약해제 이전에 먼저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은 자신의 신용장 개설의 거절은 계약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2) 판결

법원은 계약의 성질과 양 당사자 간의 오랜 거래 관계를 고려하여 볼 때, 당 계약의 서면조건은 구두합의로 보충되어 왔을 것이라고 하며, 그러므로 매도인이 말레이시아의 Kemaman으로 물품을 발송하기 위하여 용선한 선박의 상세를 제공하였을 때(6월 31일) 매수인은 신용장을 개설하였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국제학술서적과 CISG의 판례²⁹⁵⁾를 인용하면서 당 상황 하에서 매수인이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은 것은 그의 대금지급의무²⁹⁶⁾를 불이행한 것이므로, 기간 내에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CISG 제25조²⁹⁷⁾와 CISG 제64조 제1항 (a)호²⁹⁸⁾에 따라 명백히 계약의 중대한 위반을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매도인이 CISG 제72조에 따른 계약해제권을 갖는다고 판결하였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도인이 대체거래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배상하여야 하고, 또한 매도인은 가능한 모든 손해경감의무를 지켰다고 판시하였다. 손해배상의 화폐에 대하여는 당사자들이 계약에서 명시한 화폐가 US달러이므로 손해배상액도 US달러로 지불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3) 평가

이 사례에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의 지연은 대금지급의 거절로 간주되었다. 많은 사례들이 신용장 개설은 대금지급에 대한 중대한 의무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례에서도 역시 사전계약해제권을 인정한다고 하였는데, 특이할 점은 신용장 개설의 실패가 중대한 계약위반을 구성하므로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이 신용장 개설에 실패한 시점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

²⁹⁵⁾ Helen Kaminski Pty v. Marting Product Inc, USA., U.S District Court, New York, 23-07-97, www.unilex.info.

²⁹⁶⁾ CISG, 제54조.

²⁹⁷⁾ CISG, 제25조는 본고 제2장 제1절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중대한 계약위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²⁹⁸⁾ 계약 또는 이 협약에 따른 매수인의 어떠한 의무의 불이행이 계약의 중대한 위반에 상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신용장 개설에 대한 부가(추가)기간을 지정하였다는 점이다. 부가(추가)기간의 마지막 날 이에 대하여 매수인이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답신하자 매도인은 신용장 개설을 위한 부가(추가)기간을 며칠 더 지정해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통지를 하였으나 매수인의 응답이 없자 계약을 해제하였다. 부가(추가)기간 지정 후의 계약해제는 중대한 계약위반을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약해제 수단으로서는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본 사례에서 매도인은 그 확실한 방법을 택하였다.

3. <사례 3-9> 대금지급의 실패로 계약해제권이 인정된 사례

U.S.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08 Civ 1687 (BSJ) (HBP), 29-05-2009

원고인	: 매도인 (대한민국)
피고인	: 매수인 (미국)
계약종류	: 여성용 주문제작 의류 매매계약
준거법	: CISG

1) 사실관계

대한민국의 매도인과 미국의 매수인은 2007년 4월부터 동년 10월까지 매도인이 약 500,000벌의 여성용 주문제작의류를 뉴욕에 있는 매수인의 영업장소에 인도하는 일련의 계약을 체결하였다.²⁹⁹⁾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의 약정에 의하여, 매수인은 의류의 수령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07년 7월과 8월에 매도인은 주문의 일부를 선적하였고 매수인은 이를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뒤

²⁹⁹⁾ USA, U.S.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No. 08 Civ 1687 (BSJ) (HBP), 29-05-2009, www.unilex.info.

이어 10월과 11월에, 인도된 물품에 대한 대금지급을 하겠다는 보장을 받은 매도인은 추가적으로 의류를 인도하였다. 이후에 매도인은 5회에 걸쳐서 할인된 금액으로 대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합의를 하였으나, 매수인이 계획된 일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실패하자 매도인은 이후의 모든 인도에 대하여 이행을 정지하였고 2008년 매수인을 고소하였다.

2) 판결

법원은 동 매매계약이 상이한 국가(양국 모두 계약국)에 영업소를 가진 당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매매계약의 준거법으로 CISG를 채택하였다.

분쟁의 본안에 대하여, 법원은 매수인이 CISG 제53조³⁰⁰⁾와 제25조에 따른 인도된 물품에 대한 대금지급에 실패하였으므로 계약위반을 범하였다고 판결하였다. 나아가 CISG 제74조³⁰¹⁾에 근거하여 법원은 매도인에게 2007년 7월, 8월과 10월에 지급된 대금과 계약의 총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여하였다.

매도인은 제조하였으나 인도하지 않은 의류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 받기 원하였다. 법원은 CISG 제71조에 따라 매수인이 해당 의류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므로 원고가 마지막 인도분에 대하여 이를 인도하지 않고 보유할 권한을 가진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CISG 제72조에 근거하여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물품인도를 정지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판시하였다. 원고는 미인도분을 회수하여 이를 재판매하고 계약가격과 재판매가격의 차액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³⁰²⁾

³⁰⁰⁾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인도수령의무.

³⁰¹⁾ 손해배상청구권.

³⁰²⁾ CISG, 제75조~제76조.

3) 평가

먼저 이 사례에서는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이전 분할 이행분에 대한 대금 미지급에서 드러났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례에서, 매수인은 두 차례의 대금 미지급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보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다시 두 차례에 걸쳐 대금을 미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대금의 미지급은 장래의 위반 가능성을 충분하게 확인시켜 준다는 것이다.

또 이 사례에서는 매도인이 CISG 제71조에 의한 이행정지권과 CISG 제72조에 의한 계약해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특별히 언급할 만하다. 당사자에게 협약 72조의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면 이행정지권도 원용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성립할 것인 바,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시간이 촉박하지 않다면 먼저 이행을 정지하고 추이를 살펴본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후의 분쟁해결절차에 있어서 계약해제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때 먼저 이행정지를 행한 사실이 있었지만 보완 혹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약해제를 긍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4. <사례 3-10> 물품의 불인도로 분할이행계약을 해제한 사례

Handelsgericht Zurich, HG950347, 05-02-97

원고인	: 매수인 (독일)
피고인	: 매도인 (프랑스)
계약종류	: 이태리산 해바라기유 매매계약
준거법	: CISG

1) 사실관계

독일의 매수인과 두 프랑스의 매도인은 이탈리아산 해바라기유를 매달 매수인의 고객이 있는 루마니아에 분할 인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³⁰³⁾ 첫 번째 인도분에 대하여 매수인은 대금을 선 지급 하였다. 그러나 매수인은 매도인이 첫 번째 분할인도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행을 위한 부가(추가)기간을 지정하였다. 매도인은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부가(추가)기간 내에도 그 인도를 이행하지 않았다. 부가(추가)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매수인은 계약해제를 선언하였다. 또한 매수인은 선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고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위한 소를 제기하였다.

2) 판결

법원은 매수인이 지정한 이행을 위한 부가(추가)기간 동안에 매도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매수인이 CISG 제73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b)호³⁰⁴⁾에 의해 유효한 계약해제 선언을 하였다고 판결하였다. 매도인이 첫 번째 분할부분에 대한 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장래에 분할부분에 대해 중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할 것이라고 매수인이 추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형성하게 한다.³⁰⁵⁾ 그러므로 법원은 매수인이 계약해제에 따라 선지급부분에 대해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였다.³⁰⁶⁾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법원은 매수인이 선 지급한 부분에 대한 손실과,

³⁰³⁾ Switzerland, Handelsgericht Zurich, No. HG 95 0347, 05-02-97, www.unilex.info.

³⁰⁴⁾ 인도불이행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제47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부가(추가)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매도인이 그 지정된 기간 내에 인도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선언한 경우(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³⁰⁵⁾ CISG, 제73조 제2항.

³⁰⁶⁾ CISG, 제81조 제2항.

그에 따른 이익의 상실 분 까지도 배상받을 권리를 인정하였다.³⁰⁷⁾ 더욱이, 법원은 매수인이 US달러(지급화폐)와 독일마르크의 환율변동에 의하여 입은 간접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마지막으로, CISG 제84조³⁰⁸⁾에 따라 매수인은 기 지급한 부분에 대한 이자를 대금을 지급한 날짜로부터 기산하여 받을 권리를 가진다. 법원은 매수인이 기 지급한 금액을 상환 받고 그 이자까지도 지급받도록 판결하였다.

3) 평가

분할이행계약에서 장래의 분할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어느 분할분의 이행에서 일방의 의무 불이행이 상대방에게 장래의 분할분에 대하여도 중대한 계약위반이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본 사례에서는 대금을 지급하였는데도 첫 번째 분할인도가 이행되지 않았던 것을 이유로 장래의 분할부분에 대하여 계약해제가 인정되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무조건적으로 계약해제가 인정된 것이 아니고 매수인이 부가(추가)기간을 지정하였는데 부가(추가)기간 이내에 미 이행분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단 한 번의 불 인도는(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장래의 중대한 계약위반을 추단하도록 하는 데에는 조금 미흡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먼저 이행정지권 행사 혹은 부가(추가)기간을 지정하고 나서 그 후에도 불이행이 있다면 그 때 계약해제를 선언하는 것이 안전한 계약해제 수단이라고 언급한 <사례 3-8>에서처럼, 부가(추가)기간을 지정하고 그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매수인의 판단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³⁰⁷⁾ CISG, 제74조.

³⁰⁸⁾ CISG, 제84조 제1항 : 매도인이 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대금이 지급된 날로부터 그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여야 한다.

5. <사례 3-11>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분할이행계약 해제사례

Schiedsgericht der Börse für Landwirtschaftliche Produkte, Wien, S2/97,
10-12-1997

신청인	: 매도인 (오스트리아)
피신청인	: 매수인 (폴란드)
계약종류	: 보리의 매매계약
준거법	: 오스트리아법

1) 사실관계

오스트리아의 매도인과 폴란드의 매수인은 보리의 매매에 관한 두 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다.³⁰⁹⁾ 이 계약들은 준거법으로 오스트리아 법에 따르기로 하였다. 그리고 물품의 품질검사는 오스트리아의 전문기관에 의해 행하여지기로 하였다. 보리는 두 차례에 걸쳐서 1월과 2월에 분할인도 되었다. 그러나 매수인은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하다며 물품을 인수받기를 거절하였는데, 이는 폴란드 전문 기관의 감정에 따른 것이었다. 부가(추가)기간을 지정하였으나 결과를 얻지 못하자 매도인은 계약의 해제를 선언하고 손해배상과 이자를 요구하는 중재의 절차를 시작하였다.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반소하였다.

2) 판정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영업소가 계약국인 상이한 국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계약이 CISG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평결하였다. 더구나 당사자들은

³⁰⁹⁾ Austria, Schiedsgericht der Börse für Landwirtschaftliche Produkte, Wien, NO. S2/97, 10-12-1997. www.unilex.info.

명시적으로 오스트리아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였는데 오스트리아 법은 CISG를 포함하고 있었다.

물품의 품질결함에 대하여 조사하기 이전에 중재판정부는 처음 두 번의 인도에 대하여 물품의 품질 부적합을 근거로 하여 매수인이 장래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중재판정부는 먼저 두 개의 분리된 계약은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된다고 판단하였으며, 그러므로 이 계약은 CISG 제73조 제2항의 분할이행계약에 따른다고 하였다.

분할인도계약에 의한 물품인도의 경우, 한 당사자의 한 분할부분의 의무 이행의 실패가 상대방에게 장래의 분할부분에 대하여 중대한 계약위반이 일어날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되는 경우, 상대방은 CISG 제 73조 제2항에 따라 장래의 분할부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에 따르면 "상당한 근거"라는 용어는 계약위반의 높은 가능성을 의미한다.³¹⁰⁾

처음 두 분할이행부분이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합치하지 않아 이것이 매도인의 중대한 계약위반이 된다면 매도인의 적극적인 이행협상이나 조치(공급자나 대리인의 변경과 같은)가 없다면 이러한 계약위반이 장래의 분할부분에 대하여도 일어날 것이라는 높은 가능성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매수인이 인도된 분할부분에 대한 물품의 계약부적합에 대하여 적절한 시간 내에 통지를 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CISG 제73조에 따른 장래의 분할부분에 대한 계약해제를 선언할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물품의 계약부적합에 대하여는 당사자들이 제공한 증거를 검토한 후 중재판정부는 물품에 하자가 있으며 오스트리아 전문 기관에 의한 검정은 부

³¹⁰⁾ 그러나 CISG 제72조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심각한 수준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정확하다는 매수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결과적으로 매수인이 CISG 제73조 제2항을 원용할 수 없는 반면, 매도인은 두 계약에 대하여 CISG 제64조 제1항 (b)호³¹¹⁾에 의하여 이의 해제를 선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왜냐 하면 매수인이 CISG 제60조³¹²⁾에 따른 물품의 인도수령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이후의 인도에 대하여 명백한 거절의사를 표명하였기 때문이다. 나아가 매도인은 그가 잃은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3) 평가

결과적으로 본 사례에서 매수인의 분할이행계약에서 장래인도분의 계약해제는 부정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분할이행계약의 장래인도분 계약해제의 요건 중 하나인 계약적합성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즉, 분할인도계약에 의한 물품인도의 경우, 물품 계약적합성 면에서 매도인의 중대한 계약위반이 있었다면, 매수인의 계약부적합에 대한 통지가 있었는에도 그에 대한 매도인의 반대의 선언이나 조치가 없다면 그러한 계약위반은 장래의 분할부분에 대하여 불이행이 일어날 수 있다는 높은 개연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반대의 선언이나 조치에는 물품의 공급자나 대리인의 변경과 같이 실질적으로 물품의 부적합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6. <사례 3-12> 지급거절이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인정된 사례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9887, 00-08-1999

311) 매수인이 협약 제63조 제1항에 따라 매도인에 의하여 지정된 부가(추가)기간 내에 대금의 지급 또는 물품의 인도수령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매수인이 그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선언한 경우(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12) 매수인의 인도수령의무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구성된다. (a) 매도인에 의한 인도를 가능케 하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었던 모든 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b) 물품을 수령하는 것.

신청인 : 매도인 (루마니아)
피신청인 : 매수인 (독일)
계약종류 : 화학물질 분할매매계약
준거법 : CISG

1) 사실관계

루마니아의 매도인과 독일의 매수인은 화학물질을 몇 달에 걸쳐 분할 인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³¹³⁾ 자신의 고객으로부터 물품의 저급한 품질에 대한 몇 차례의 불만을 접수한 매수인은 물품수령을 거부하였다. 매도인은 이를 회수하기를 거부하였고 매수인은 이 물품을 그 누구에게도 판매하려고 하지 않았다. 매도인이 중재절차를 시작하며 대금지급을 요구하자, 매수인은 인도의 지연, 물품의 계약부적합과 장래인도분의 불 인도를 이유로 그러한 요구를 거절하였다.

2) 판정

중재판정부는 우선 준거법으로서 CISG가 적용된다고 결정하였다.

본안에 대하여, 중재판정부는 물품이 제때 인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인은 CISG 제33조³¹⁴⁾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러므로 매수인은 CISG 제45조에서 제52조까지의 구제권³¹⁵⁾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한편 계

³¹³⁾ ICC, ICC Court of Arbitration, NO. 9887, 00-08-1999, www.unlex.info.

³¹⁴⁾ 매도인은 다음과 같은 시기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 (a) 어느 기일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거나 또는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 그 기일,
- (b) 어느 기일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거나 또는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기일을 선택하여야 하는 사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그 기간 내의 어떠한 시기, 또는
- (c)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후 상당한 기간 내.

³¹⁵⁾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권.

약해제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행을 위한 부가(추가)기간을 지정해야 했으므로, 매수인은 인도된 물품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물품의 계약부적합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중재판정부는 매수인이 수령한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였고, CISG 제38조³¹⁶⁾가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물품의 검사를 행하였으며, 첫 번째 통지가 물품수령 후 12일 후에 포워딩업자에게 행하여졌고 약 20일 이후 전문가에 의한 검토와 상세한 통지를 행하여 CISG 제39조³¹⁷⁾가 요구하는 적절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할 것을 충족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매수인은 계약해제를 선언하지 않았으므로, 인도된 물품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더구나, 매수인이 대금지급에 실패하였고 이것이 장래의 분할부분에 대하여 중대한 계약위반이 일어날 것이라고 매도인이 추단하는 것에 상당한 근거를 형성하므로 매도인은 CISG 제73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선언할 권리를 가진다. 중재판정부는 CISG 제25조에 의한 중대한 계약위반이라는 개념은 주의 깊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나, 대금지급의 거절은 중대한 계약위반을 구성한다고 판결하였다.

³¹⁶⁾ CISG, 제38조 : (1) 매수인은 그 사정에 따라 실행 가능한 짧은 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또는 물품이 검사되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까지 연기될 수 있다.

(3) 물품이 매수인에 의한 검사의 합리적인 기회도 없이 매수인에 의하여 운송 중에 목적지가 변경되거나 또는 전송(轉送)되고, 또한 계약 체결 시에 매도인이 그러한 변경이나 전송의 가능성을 알았거나 또는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물품이 새로운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까지 연기될 수 있다.

³¹⁷⁾ CISG, 제39조 : (1) 매수인이 물품의 불일치를 발견하였거나 또는 발견하였어야 한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불일치의 성질을 기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품의 불일치에 의존하는 권리를 상실한다.

(2)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이 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인도된 날로부터 늦어도 2주 이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부적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동 부적합에 의존하는 권리를 상실한다. 다만 이러한 기간의 제한이 계약상의 보증기간과 모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과적으로 CISG 제81조 제1항³¹⁸⁾에 의하여 중재판정부는 양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로부터 면하게 되었음을 평결하였다.

3) 평가

<사례 3-12>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대금지급의 실패가 분할이행계약에서 장래의 중대한 계약위반을 추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이는 앞선 사례에서도 몇 차례 발견할 수 있었던 분할이행계약의 해제사유였으며, 주목할 것은 물품의 품질에 계약 부적합성이 존재하였으나 지급거절이 계약해제 혹은 이행정지를 선언하지 않고 이행을 정지한 매수인 때문에 매도인에게 분할이행계약의 해제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례를 통하여 계약해제의 선언 및 이행정지의 통지에 대한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즉 CISG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이행청구권과 같이 상대방에 대한 청구로서 이루어지는 구제수단 이외에, 대금감액권과 이행정지권 등의 당사자 일방의 선언으로 이루어지는 구제권에 대하여서는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7. 소결론

1) 이행기일전 계약해제의 전제조건

(1) 계약해제의 요건

CISG 제72조에 따른 계약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두 가지 구별된 전제조건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장래에 중대한 계약위반이 있을

³¹⁸⁾ 본고 제2장 제1절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계약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것이라는 징후(prognosis)와 관련되어 있다. 즉, 장래에 상대방이 중대한 계약위반을 할 것이라는 것이 명백(clear)하여야 한다. 이 중대한 계약위반의 징후는 CISG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계약위반의 내용과 동일하다. PICC는 동 원칙 제7.3.3조에서 당사자 일방의 이행이 있어야 할 일자가 도래하기 전에도 그의 중대한 불이행이 있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고 있는데, 이 때 예견되는 불이행은 이행기에 놓인 때의 상황과 동일시되어야 한다고 해석된다.³¹⁹⁾ 매수인의 경우 물품의 심각한 부적합이나 납기지연인도와, 매도인의 경우 대금지급의 지연 혹은 지급불능의 상태 등의 경우 이행기일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 3-7>에서 물품의 계약적합성과 관련하여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할 경우 그 정도가 중대하다면 계약해제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당 사례에서는 건본의 인도지연으로 인하여 물품의 인도지연이 예상되고, 목적물이 계절상품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인도지연은 중대한 계약위반을 형성하므로 매수인에게 이행기일전 계약해제권이 인정되었다. <사례 3-8>과 <사례 3-9>에서는 매수인의 중대한 계약위반에 대한 예견으로 매도인의 계약해제권이 인정되었다. 대금지급의 불이행은 매수인의 중대한 계약위반을 구성하며, 특히 <사례 3-9>에서는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신용장을 개설할 것을 계약에서 규정하였으므로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계약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매도인이 이행을 위한 부가(추가)기간을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매도인은 CISG 제63조를 통하여 계약해제를 원용할 수 있다.

<사례 3-9>에서는 특이하게도 이행정지권에서 계약해제로 이르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계약에 의하면, 매수인은 물품의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매수인이 네 차례의 물품

³¹⁹⁾ 중대한 계약위반에 관하여 자세히는 본고 제2장 제1절의 3. 계약해제권을 참고.

수령 후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매도인은 이후의 인도 의무 이행을 정지하였으며 법원은 나아가 CISG 제72조를 통하여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2) 이행거절

동조 제3항은 상대방이 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경우, 피해당사자는 계약해제권을 갖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³²⁰⁾ 이는 이행거절이 완벽한 형태의 계약위반³²¹⁾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행거절에 의하여 피해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진지하고 중독적으로 표시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위반당사자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든다.³²²⁾ 그러므로 이행거절에 의한 CISG 제72조 제3항을 원용하여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통지의 의무도 따를 필요가 없다. 실제로 당사자의 의무에 대한 이행거절은 당사자의 부정확한 클레임이나 부당한 요구³²³⁾와 함께 요청되어지기도 한다. Honnold는 이러한 상황을 한 당사자가 자신은 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무조건적인 선언을 하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새로운 계약조건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보면서, 그에 대처하기 위하여 CISG 제72조 제3항에서 이행거절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계약해제를 규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

³²⁰⁾ 이행거절 당사자가 그러한 이행거절의 선언을 하였더라도 추후 마음을 바꾸어 이행기 이내에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고, 그렇기에 이행거절당사자의 불이행 여부가 절대적으로 분명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때 피해당사자는 계약해제권을 갖는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 피해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지 않은 경우에 이행거절당사자가 마음을 바꾸어 이행을 한다면 피해당사자는 그러한 이행을 수령하여야 한다(Honnold, *Uniform Law*, p.438).

³²¹⁾ Hornung, *Commentary on Article 72*, p.727.

³²²⁾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p.267.

³²³⁾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거나, 계약이 무효이거나 혹은 체결되지도 않았다는 클레임이나, 대금에 관한 부당한 감액 혹은 증액, 부가(추가)기간의 요구, 체결된 계약에 대한 교정 요구 등을 들 수 있다(Hornung, *Commentary on Article 72*, p.727).

았다.³²⁴⁾

이러한 이행거절과 관련하여 주의할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상대방의 계약의 변경(amendment)을 위한 협상의 필요성에 대한 통지를 이행거절로 간주하게 되면 오히려 스스로가 계약위반을 범할 위험에 처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CISG 제72조에 따른 한 당사자의 이행기일전 계약해제가 사실은 부당한 것이었다면, 이행기가 도과하였을 때 당사자는 자신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계약위반을 범하게 됨은 물론, 이행기 이전에도 그러한 계약해제의 표시가 이행거절로 간주되어 역으로 계약해제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계약해제 이전의 통지

장래의 중대한 계약위반을 예견한 당사자는 CISG 제72조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이행에 관하여 적절한 보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통지를 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시간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는 통지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본 통지의 목적은 계약위반을 할 가능성이 있는 당사자가 그에 대한 적절한 보장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³²⁵⁾으로, 만약 위반당사자에게 그러한 의사가 없다면 통지가 큰 실효성을 갖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한으로 인하여 피해당사자는 CISG 제71조의 통지요건³²⁶⁾과 달리, 그 이행보장을 언제까지 기다리는 것이 합리적인지 판단하기가 곤란할 수 있기 때문이다.³²⁷⁾ 그러나 CISG는 반드시 통지가 계약해제권

324) 만약 당사자가 계약의 변경을 위한 협상의 필요성을 통지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을 것이다(Honnold, *Uniform Law*, pp.438~439).

325) Hornung, *Commentary on Article 72*, pp.722~723.

326) CISG 제71조의 이행정지권의 통지는 그 행사와 동시에 행하여지므로, 이행기일전의 계약해제에서처럼 그 행사를 위하여 기다릴 필요가 없다.

행사를 연기시킨다고는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현대의 통신기술로 보았을 때 이러한 통지가 피해당사자의 법적 조치를 취할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는 않을 것이며³²⁸⁾, 본 절에서 이행기일전 계약해제의 요건과 관련하여 언급한 위험(hazard)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사전에 그러한 의도와 행사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동조항의 통지의무는 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³²⁹⁾ 즉, 상대방이 이행거절을 선언한 경우 혹은 무응답 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통지할 필요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위반당사자가 통지에 따라 이행보장을 제공하고 피해당사자가 상대방에 의하여 제공된 이행보장을 적절한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피해당사자의 계약해제권은 소멸한다.

3) 장래 분할부분의 계약해제

CISG 제73조는 분할이행계약에서의 계약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은 개별인도분의 계약해제, 제2항은 장래 분할부분의 계약해제, 제3항은 상호의존성에 의한 전체의 계약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조에서 특별히 중요시되는 부분은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래의 분할부분 계약해제를 위한 요건이다. 당사자는 어느 분할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의 계약위반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러한 계약위반이 장래의 분할부분에 대해 중대한 계약위반이 되리라고 판단하는 충분한 근거가 될 때 장래의 분할부분에 대

³²⁷⁾ Hornung은 그러한 절차를 짧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Hornung, Commentary on Article 72, p.723).

³²⁸⁾ Honnold, *Uniform Law*, p.440

³²⁹⁾ CISG, 제72조 제3항.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때 이미 일어난 계약위반이 중대한 계약위반일 필요는 없다. 다만 그러한 의무위반이 장래의 분할부분에 대한 중대한 계약위반의 발생을 추단하는 데에 충분한 근거가 되어야 한다. <사례 3-10>을 통하여 매수인이 부가(추가)기간을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는 장래의 분할부분에 대하여 중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할 것이라고 매수인이 추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형성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사례 3-11> 및 <사례 3-12>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 혹은 지급실패에 대하여 매도인이 계약해제권을 행할 권리를 인정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특이한 점은, <사례 3-11>은 원래는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근거로 CISG 제73조 제2항을 통하여 계약해제권을 행사하였으나, 물품의 부적합에 대한 타당한 입증을 하지 못하여 매도인에게 계약해제권이 부여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례에서 중재판정부는 특별히 언급할 만한 평결을 두 가지 내렸는데, 첫 번째는 처음 분할이행부분이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합치하지 않아 이것이 매도인의 중대한 계약위반에 해당된다면, 공급자나 대리인의 변경과 같은 매도인에 의한 반대의 선언이나 조치가 없다면 이러한 계약위반이 장래의 분할부분에 대해서도 일어날 것이라는 높은 가능성을 제공하게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통지와 관련하여, 인도된 분할부분에 대하여 계약부적합에 대하여 적절한 시간 내에 통지를 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는 장래의 분할부분에 대한 계약해제를 선언할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례 3-11>에서 볼 수 있듯이 적절한 시간 내에 따로 계약해제의 통지를 하지 않아도 분할이행계약에서의 장래의 분할분에 대한 계약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조항을 통하여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계약해제권을 행사하여야 함에 유념하여야 한다.

제 4 장 이행기일전 구제권 적용상의 문제점과 실무적 대응방안

본고의 서론에서 전술한 바 있지만 한 당사자에게 자신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는데 상대방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위협이 존재한다면, 당사자는 자신의 의무 이행에 대한 대가를 기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때 당사자는 CISG 혹은 PICC를 원용하여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구제권은 특히 그 행사의 요건에 주의하여 원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으로 계약위반을 범하고 마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실제로, 많은 사례들에서 소송이나 중재와 같은 분쟁해결절차의 진행 중에 상대방의 불이행 혹은 계약위반을 근거로 스스로의 의무 불이행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이행정지권과 같은 이행기일전 구제권을 행사하였는데 결국 이것이 당사자의 이행거절이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반대로 계약을 해제당하는 판결 혹은 판정도 다수 발견된다.

이는 실무자들이 CISG와 같은 국제거래법에 익숙하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CISG가 그러한 이행기일전 구제권들의 행사에 요구되는 전제조건을 구체화하여 명시해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제권의 적용 기준이 당사자로서는 모호할 수도 있고,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과 그 효력에 관하여도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장래의 계약위반의 위협을 안고 있는 당사자가 결국 상대방의 이행기까지 무력하게 기다리다가 실제로 계약위반이 일어난 후에야 원

용 가능한 다른 구제권들을 행사하는 방법밖에 없다면 이는 대단히 불합리한 일일 뿐만 아니라 계약의 상호 대가적 의존관계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처사일 수밖에 없다.

이행기일전 구제권을 원용하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는 계약위반의 예견과 관련한 문제점이 있다. 본 사안에서 계약위반은 미래의 시점에 일어날 것인데 반하여 계약위반의 예견은 현재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게다가 CISG는 계약위반의 예견에 관하여 그 정의나 시점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다. CISG의 여러 해석과 사례들을 통하여 볼 때 예견이란 단순히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에 대한 우려는 아니다. 그러한 위협은 예를 들면 파업, 화재나 자연재해에 의한 생산설비의 손실 등과 같은 이행상의 장애나 물품의 획득, 생산과 관련한 원자재의 획득이나 제3자로부터 적절히 부여받아야 할 권한 및 인가 획득의 실패, 재료나 부속의 결함과 대금지급 능력의 의심 즉, 지급불능, 지급정지, 파산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 혹은 계약 이행을 준비하는 과정, 당사자 사이의 이전 계약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 혹은 분할이행계약에서 과거의 분할분에서 발생하였던 계약위반이 미래의 위협으로 대두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어떠한 계약위반의 유형도 위협의 예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상대방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은 위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위에 열거한 예들이 반드시 CISG의 이행기일전 구제권에서 요구하는 미래의 계약위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CISG의 해석은 그러한 사안들이 계약 내·외의 제 사정안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본고에서 연구한 이행기일전 구제권인 이행정지권, 이행기일전 계약해제권, 분할이행계약에서의 계약해제권은 각각 요구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구제권을 원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계약위반 예견의 시점은 당연히 현재가 될 것이나, 그러한 계약 위반은 미래에 발생할 것이어야 한다. 또 당사자는 그러한 계약위반의 위협 사유가 계약 체결 후에 발생한 것이거나, 그 이전에 존재하였더라도 그것을 알지 못하였거나 아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을 경우에만 이행기 일전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1 절 이행정지권

1. 이행정지권 적용상의 문제점

당사자가 계약위반을 예견할 때마다 이행을 정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상대방이 그의 계약상 의무를 실질적으로 위반할 진정한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는 그의 권리를 보장받고 계약의 유지를 위한 이행보장을 제공받기 위해 이행정지를 행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행정지를 행사할 때는 통지와 같은 요건 뿐 아니라 이행정지를 행사하기 위한 요건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행사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행정지의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상대방 의무의 실질적인 부분’의 판단 문제가 발생한다. 즉, 판단의 확실성의 정도(degree of certainty)가 이행정지의 전제조건에 합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행정지를 한 당사자는 차후에 이행정지가 상대방 의무의 실질적인 부분의 의혹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이 밝혀진다면 근거 없이 자신의 의무의 이행을 일방적으로 정지한 것이 되어 오히려 계약위반을 범한 상태에 처하게 되고 심한 경우 이것이 이행거절로 인식되어 역으로 계약해제의 사유를 제공한 것이 될 수도 있는 바, 이행을 정지하고자 할 때 그 근거가 이행정지사유에 합당한 것인지를

숙고하여야 한다.

또한 이행정지가 행사된 후 상대방이 그의 이행을 위한 보장을 제공하였을 때 이 보장이 이행을 재개할 적절한 것인지 판단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이행보장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 당사자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행보장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행이 정지된 기간 동안 늦추어진 계약의 일정은 어떻게 조정하여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2. 실무적 대응방안

많은 사례에서 이행정지의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이행정지권을 원용할 수 없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이행을 정지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물품의 발송 전후에 관계없이 반드시 그 의도와 이행의 사실을 상대방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지는 당 이행정지가 기초하고 있는 근거를 명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상대방이 통지를 받고 그의 의무의 어떤 부분에서 보장이 필요할 것인지, 이행정지에 대하여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신속히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이행정지의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제무역에서의 신의성실을 준수할 의무로서 행하여야 할 것이지만, 손해경감 차원에서도 이행정지의 통지를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적합한 보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행정지 사유와 의도를 밝히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행정지사유가 되는 실질적 의무 위반은 상대방의 이행을 위한 능력이나 신용도의 중대한 결함, 혹은 상대방의 이행을 위한 행위가 포함된다. 또한 현재의 상황이 미래의 실질적 의무의 위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주관적인 위협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즉, 같은 상황에 놓인 다른 합리적인 당사자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매수인의 경우 신용장의 개설은 많은 사례에서 이를 중대한 의무로 보고 있는바, 신용장 개설의 실패는 이행정지사유는 물론 계약해제의 사유로까지 간주될 수 있다. 또한 이행정지권이나 이행기 일전 계약해제권은 분할이행계약에서 특히 많이 원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계약이 분할 이행되는 것이라면 이전 이행의 태만, 지연된 이행, 불이행과 같은 계약위반은 이행정지의 사유가 될 정당한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이행정지후 상대방이 그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적절한 보장을 제공하면 이행정지권은 소멸하게 된다. 또한, 이행정지사유가 제거되면 이행은 재개되어야 한다.³³⁰⁾ 제공된 이행보장이 적절한지 여부는 불이행의 위협이 무엇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 판별해야할 것이다. 예를 들어 *Mansonville Columbia v. Kurtz GmbH*의 사례에서와 같이 이행정지 사유가 매수인의 신용장 미개설이었다면 매도인은 신용장이 개설된 후에는 부당한 지체 없이 이행을 계속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이행정지권을 행사한 경우, 그 사유가 파업, 원재료 미확보 등에 의한 것이었다면 파업의 타결이나 재료확보를 위한 공급자나 대리인의 재선정은 이행 재개를 위한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행정지가 행사되었다가 상대방의 적절한 보장 제공으로 인하여 재개되었을 때 계약 기간의 재조정 문제에 대하여 CISG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때 이행을 정지하였던 당사자가 계약일자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³³¹⁾

³³⁰⁾ *Mansonville Plastics (B.C) Ltd. v. Kurtz GmbH, Canada, British Columbia Supreme Court, C993594, 21-08-2003. www.unilex.info.*(매수인이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아 매도인은 그 의무의 이행을 정지하였으며 인도의 재개는 6주 후에 이루어졌다. 신용장은 이행의 정지로부터 2주 후에 개설 되었으므로 매도인의 이행정지기간은 신용장이 개설된 2주째에 종료되었어야 한다).

³³¹⁾ UCC는 이행거절의 철회와 관련한 조항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UCC Art. 2-611 (3) Retraction reinstates the repudiating party's rights under the contract with due excuse and allowance to the aggrieved party for any delay occasioned by the repudiation).

마지막으로, 이행정지권을 원용하고자 하는 매수인은 특히 분할이행계약의 경우, 상대방의 기인도분에 부적합이 있었다면 이를 발견하였거나 발견하지 않을 수 없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그 부적합의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CISG 제39조에 의하여 그렇지 아니한 매도인은 동 물품의 부적합을 원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분할이행계약에서 이전 인도분의 물품불일치를 이유로 이행정지를 행사하고자 한다면 각 인도분에서의 불일치나 부적합에 대한 통지를 그러한 부적합을 발견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 2 절 계약해제권

1. 계약해제권 적용상의 문제점

이행기일전에 계약해제를 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도 CISG 제71조의 이행정지권을 원용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와 마찬가지로 미래의 의무위반에 대한 예견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계약해제를 위해서는 미래의 의무위반이 ‘중대할 것’이 요구되는데, 협약 제49조 및 제64조에 따른 이행기의 계약해제와 달리 실제로 계약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사자는 그 판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지 않은 계약해제는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되어 역으로 계약해제를 당할 위험이 있는데, 이때 계약위반의 정도는 이행정지를 잘못 원용하였을 때와 비교하였을 때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당사자는 중대한 계약위반이 있을 것임을 예견(이 때 예견은 확실히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하더라도 계약해제를 주저할 수도 있다.

또한 이행기일전에 당사자가 원용할 수 있는 구제권의 두 가지, 즉 이행

정지와 계약해제권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둘 중 어느 구제수단을 택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와 마주치게 된다.

2. 실무적 대응방안

상대방이 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경우 당사자는 계약해제권을 갖는다. 이 때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해제의 사실을 통지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는 상대방이 장래에 중대한 계약위반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계약해제 의사에 대한 통지를 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한 그렇게 하여야 한다.

중대한 계약위반은 계약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의미하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계약위반 당사자가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들도 동일한 상황에서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중대한 계약위반의 유형 역시 계약 및 제반사정하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중대한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조심스러운 수밖에 없는데 계약 및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당 위반이 중대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사자들은 계약상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항들을 명시적으로 삽입하거나,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항의 중요성을 사전에 통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행기일전 계약해제를 행사할 수 있는 예로는, 매도인의 공급자가 매도인에 대하여 판매금지를 선언함으로써 계약상의 인도를 불가능하게 한 경우, 이전의 지급의무를 불이행하고 담보제공의 요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의 지급불능 등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생산시설의 소실, 물품의 인

도 또는 대금의 지급을 불가능하게 하는 수출금지 기타 행정처분 또는 정책의 발효 등을 들 수 있다.³³²⁾

그러나 여전히 중대한 계약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제 사정이 고려되어야 하는 바, 이는 당사자들의 몫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전술한 대로 당사자들은 계약서상에 중대한 계약위반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을 미리 협의하고 명기하는 것이 요구되어진다.

이행기일전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이행거절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행에 관하여 적절한 보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시간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인도지연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물품의 인도가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중대한 사항이고 양 당사자가 그것을 모두 알고 있었고, 매수인에게 남은 시간이 촉박하다면, 매수인은 사전통지 없이 계약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³³³⁾ 하지만 예와 같이 시간이 촉박한 사안이 아니라면 당사자는 계약해제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통지는 계약해제의 원인을 언급하고 미래의 중대한 계약위반의 불안에 대하여 충분히 명료하게 언급하여야 한다.³³⁴⁾

또한 이행거절은 계약해제의 절대적인 사유가 된다고 하였으나, 단순히 계약조건 변경의 희망 또는 필요성을 통지하는 상대방의 의사는 이행거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³³⁵⁾

CISG 제73조 제2항을 원용하여, 당사자가 분할이행계약의 장래 부분에

332)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상의 본질적 계약위반”, 『법학논총』 제23권 제2호, 한양대학교출판부, 2006, 23면.

333) 그러나 계약해제의 통지는 행해져야 할 것이다.

334) 또한 현대의 통신기술로 생각하여 볼 때, 시간이 크게 촉박한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적어도 며칠정도의 여유가 있고 해당 계약에서 시간이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면 당사자는 계약위반의 의사에 대하여 합리적인 통지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335) Honnold, *Uniform Law*, p.438.

대하여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유의할 것은 위협이 되는 불이행이 중대한 계약위반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그러한 의무불이행이 장래의 분할 부분에 대한 중대한 계약위반의 발생을 추단하는데 충분한 근거가 되어야 한다. 기 이행분의 물품부적합에 대하여 통지하였는데 상대방이 그에 대한 아무런 대응도 없거나 무응답 하는 경우³³⁶⁾, 지정한 부가(추가)기간 내에 매도인이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매수인의 대금지급에 있어서 그 지급이 심각하게 연체된 경우³³⁷⁾ 당사자는 그러한 계약위반이 장래의 분할 부분에 대해서도 발생할 것이라는 높은 가능성을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분할이행계약에서 장래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계약위반이 발생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계약해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행기일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시간상 여유가 있다면 이행정지권을 먼저 행사하고 이후에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즉 이행정지권을 먼저 행사하고, 상대방에게 이행정지의 통지를 행하여 상대방이 이행을 위한 보장을 제공할 기회를 준 다음 그러한 보장의 제공에 실패하였을 때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다. 장래의 계약위반을 예견하는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중대한 계약위반의 위협이므로 이행정지를 행사할 충분한 근거가 될 것이므로 이 때 이행정지를 위한 요건에 대하여 우려할 필요는 없다. 또한 이행정지권은 행사 후 통지의 요건이 있긴 하지만 이행기일 전 계약해제권과 비교하면 사전통지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이행정지를 행한 후 이행정지의 통지와 함께 특정 기일까지 이행의 보장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지정한 기간까지 이행보장이 제공되지 않았을 때 계약을 해제하는 형태로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336) 만약 매도인이 이를 회피하고자 한다면 공급자나 대리인의 변경(물품부적합의 원인이 공급자나 대리인에 의한 것이라면)과 같이 반대의 선언이나 조치를 행하여야 할 것이다.

337) 매수인이 계약해제를 피하고자 한다면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하거나, 그가 실질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용의가 있음을 매도인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제 3 절 계약해제시의 손해배상청구권

1. 계약해제 시 손해액의 산정

본고 제2장 제2절에서 언급하였듯이, 계약해제 후의 손해액산정방법은 대체거래의 유무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대체거래가 있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은 계약가격과 대체거래가격의 차액³³⁸⁾인데 이 때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손해에 대하여는 CISG 제74조에 근거하여 배상받을 수 있다.

대체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시가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계약가격과 시가와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³³⁹⁾ 그리고 이 경우에도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추가적인 손해에 대하여는 CISG 제74조에 의하여 배상받을 수 있다. 이 때 시가는 물품의 인도가 행하여졌어야 할 장소에서의 지배적인 물품가격이 되고, 그 장소에서 아무런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물품의 운송비용의 차이를 적절히 감안한 다른 장소에서의 가격이 된다. 또한, 시가는 물품의 인도·수량이 있기 전에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계약해제시의 시가를 적용하고 물품의 인도·수량이 있는 후에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물품의 인도·수량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2. 실무적 대응방안

CISG 제77조³⁴⁰⁾에 의하면 피해당사자는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계약위

338) <매도인의 경우> 계약가격 - 재매각가격 + 추가손해배상액 = 매도인의 손해배상청구금액

<매수인의 경우> 대체품매입가격 - 계약가격 + 추가손해배상액 =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금액

339) <매도인의 경우> 계약가격 - 시가 + 추가손해배상액 = 매도인의 손해배상청구금액

<매수인의 경우> 시가 - 계약가격 + 추가손해배상액 =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금액

340)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이익의 손실을 포함하여 그 위반으로부터 야기된 손실을 경감하기

반으로 인한 손실을 경감하기 위하여 그 사정에 따라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당사자가 경감되었어야 하는 손실의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감액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해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행기일전에 상대방의 중대한 계약위반이 예견 가능하여 계약해제 후에 대체거래나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혹은 이행정지권을 행사하는 것도 손해경감의 방법 중 하나로 보는 견해도 있다.³⁴¹⁾ CISG 초안의 주해서도 이와 유사한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상대방이 중대한 계약위반을 범할 것이 분명하다면 당사자는 손해경감 차원에서 이행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대체거래를 하거나 다른 수단을 취하여야 할 것을 요구³⁴²⁾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의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손해경감의무를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³⁴³⁾

위하여 그 사정에 따라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당사자는 경감되었어야 하는 손실의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감액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³⁴¹⁾ A. H., Kritzer, *Guide to Practical Applicat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90, p.608.

³⁴²⁾ 사무국주석, Art.73, para.4.

³⁴³⁾ 손해경감의무는 계약해제 시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CISG는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손해경감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계약위반을 주장하고 그에 대한 구제권을 원용하는 당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감될 수 있는 손실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이행정지나 신속한 대체거래를 위한 이행기일전 계약해제는 손해경감의 한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구제권의 행사 자체로만 손해경감의무가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동 구제권들을 행사하는 동안에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 손실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ICC Court of Arbitration, NO. 8786, 01-1997, UNILEX, 매수인은 계약에서 약정한 기간 내에 납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매도인에게 대금금액을 위한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매도인은 이에 무응답 하였고, 결국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였다. ICC 중재판정부는 그러한 협상을 위한 매수인의 노력이 가능한 한 계약해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므로 매수인은 손해경감의무를 충족하였다고 보았다).

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국제상사계약 특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 이행과정에서 한 당사자가 이행기일전에 상대방의 계약위반을 예견할 수 있을 때 그에 대한 구제방안의 법리와 적용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당사자는 계약과 협약에서 명시된 자신의 의무를 그의 이행기에 이행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계약위반의 위험으로 인하여 당사자는 자신의 의무이행에 대한 대가를 기대할 수 없음에도, 즉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할 것임이 예견되거나 사전에 그를 추단할 충분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CISG에서는 그러한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이행기일전 구제권으로 이행정지권, 이행기일전 계약해제권, 분할인도계약의 계약해제권을 규정하고 있고, PICC는 예견되는 불이행이 명백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중대한 불이행이 예견되는 경우 이행보장을 요구하고 자신의 의무이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행기일전 구제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제수단은 행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전제조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원용하고자 하는 당사자로서는 혼란이 생길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 부적절하게 동 구제수단들을 행사하면 오히려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되어 스스로가 계약위반을 범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당사자는 각 구제권들이 요구하는 행사의 전제조건과 이행정지권과 같은 경우 통지의 요건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 보았듯이, 각 구제권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CISG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행정지권은 매매계약 체결 후 상대방이 의무의 실질적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판명되는 경우에 당

사자가 자신의 의무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권이다. 이행정지권의 발생요건은 상대방이 의무의 실질적 부분을 불이행할 것이 예견되는 것이다. 이러한 예견은 실질적 확실성을 요구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평가시 불이행이 발생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족하다. 이행정지를 행사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이행정지의 의사 및 행사를 상대방에게 가능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행정지로 인해 당사자는 그의 의무 이행을 정지할 수 있으며, 장애가 없어지거나 상대방이 이행에 관한 적절한 보장을 제공하면 의무의 이행은 계속되어야 한다. 특히 매도인은 자신만의 특별한 이행정지권으로 이미 물품을 발송하였을 때 이행정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송한 물품이 매수인에게 교부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운송정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둘째, CISG 제7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행기일전의 계약해제권과 관련하여, 장애에 상대방의 중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명백할 때 당사자는 이행기일 이전에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하기 이전에 상대방이 이행에 관하여 적절한 보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통지를 행하여야 한다. 계약해제사유가 상대방의 이행거절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통지를 행할 필요도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셋째, CISG 제73조에 의하여 당사자는 분할이행계약에서 그 일부의 이행에 관하여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 계약해제권을 가질 수 있다. 분할인도계약이란 하나의 통일적인 매매계약으로서 적어도 2회 이상에 걸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규정하거나 이를 허용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분할이행에 대하여 분할인도에 관한 해제권은 인도된 개별부분에 한정되나, 개별인도부분이 다른 부분, 즉 장애의 인도부분이나 기 인도된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규정하여 그에 대하여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어느 분할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의 계약위반이 존재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그 의무위반이 장래의 분할부분에 대해 중대한 계약위반이 되리라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 장래의 분할부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관련성에 의하여 이미 행하여진 인도 또는 장래의 인도에 대하여도 동시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넷째, CISG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라 이행기 전 혹은 장래의 분할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하면 CISG 제 81조에 따른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때 당사자들은 계약상 의무를 면하게 되고 상대방이 이미 계약을 이행하였다면 당사자는 이행 받은 것을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계약해제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상분쟁해결조항은 소멸하지 않는다.

각 구제권은 다음과 같은 실익을 가지고 있다. 이행정지권의 경우 가능한 계약해제의 발생을 회피함으로써 인하여 CISG의 계약해제권과 비교하였을 때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 실익이 있다. 즉 국제물품매매거래는 상이한 국가에 소재한 당사자들 간의 거래이므로 이행정지권이 계약의 유지·이행을 도모함에 의하여 계약해제의 발생에 따른 복잡한 절차와 시간,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행정지권을 행사함으로써 당사자가 예견되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무방비하게 기다리지 않고 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계약해제의 경우, 전술한 이행정지권의 실익과는 일정 부분 상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계약해제가 불가피한 경우, 즉 이행기가 도래하여서 실제로 계약해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전계약해제권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대체거래를 통하여 갑작스러운 계약해제의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음은 물론³⁴⁴⁾, 대체거래가격과 계약가격과의 차액을 통하여 손해배상액을 조기에 산정할 수 있다는 실익을 가지고 있다. 또, 적절하게 행사

344) 매도인의 경우, 계약을 해제하지 않으면 계약한 물품을 재매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적절한 계약해제 없이 특정(特定)물품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계약위반행위이다.

된 이행기일전 계약해제권은 당사자 뿐 아니라 상대방의 손해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한계로는 첫째, 판례를 분석함에 있어서 부족한 편수의 판례에만 의존하여 다양한 사례를 고찰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각 구제권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으므로, 특히 이행정지권과 계약해제권의 기준과 경계를 설정하는 것과 같은 법리적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향후 지속적인 법리연구 및 새로운 사례의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1) 단행본

- 법무부, (200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사례연구 I」.
_____, (2006),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사례연구 II」.
_____, (2005),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해설」.
석광현, (2010),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박영사.
이기수·신창섭, (2005), 「국제거래법」, 세창출판사.
이용근, (2008), 「무역실무」, 삼영사.
양영환·오원석·박광서, (2008), 「무역상무」, 삼영사.
오세창, (2004), 「국제상거래계약법」, 학문사.
_____, ·박성호, (2009), 「무역계약의 기초」, 두남.
오원석, (2003), 「국제비즈니스계약」, 삼영사.
_____, 역 (J.O. Honnold 저), (2004), 「UN통일매매법」, 삼영사.
_____, ·하강현, (2004), 「국제물품매매법」, 박영사.
_____, ·박성철, (2005), 「무역상무의 이해」, 문영사.
옥선중·박영태·김웅진, (2008), 「최신 무역계약론」, 두남.
윤광운·박정기·김인유, (2005), 「국제거래법」, 삼영사.
최준선, (2008), 「국제거래법」, 제6판, 삼영사.

2) 연구논문 및 자료

- 강호경, (2002), “비엔나협약의 해석”, 「국제무역연구」 제8권 제2호, 한국무역통상학회.
- 김진우, (2009), “국제물품거래에서의 매수인의 대금감액권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제50조를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제18권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 _____, (2010), “CISG 제72조에 따른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 「법학논고」 제32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사동천, (2007), “매수인의 물품부적합 통지의무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CISG를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제16권제2호, 국제거래법학회.
- _____, (2005), “유엔국제물품매매법(CISG)상 구제수단간의 우열 - PICC, PECL, 기타 몇몇 국내법과의 비교를 겸하여 -”, 「국제거래법연구」 제13집, 국제거래법학회.
- 석광현, (2006),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상의 본질적 계약위반”, 「법학논총」 제23권 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심종석, (2005), “국제통일계약규범하에서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CISG, PICC, PECL의 규정체계 및 판결례를 중심으로”, 「경영법률」 제 16집 제1호, 한국경영법률학회.
- _____, (2008), “국제상사계약에 있어 계약불이행의 결정기준과 그 적용사례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3권 제5호, 한국무역학회.
- 안병수, (2006),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매수인에 대한 구제권의 비교법적 고찰”, 「무역학회지」 제31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 양석완, (2010), “운송유지권의 효력과 원용가능성에 관한 법적 쟁점”, 「한국해법학회지」 제32권 제1호, 한국해법학회.

- 오석웅, (2006), “CISG에 있어서 본질적 계약위반과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법학연구」 제22집, 한국법학회.
- _____, (2009), “CISG에 있어서 이행기 전 계약해제요건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35집, 한국법학회.
- _____, (2008),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 계약당사자의 이행의무규정의 검토와 UNIDROIT 원칙 2004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31집, 한국법학회.
- 오세창, (2003), “CISG와 UNIDROIT 원칙상의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위한 해석원칙의 비교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8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 오원석, (2002), “국제물품매매에서 계약의 근본적 위반의 효과와 문제점”, 「국제상학」 제11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 _____, (2002), “국제물품매매에서 물품에 대한 매도인의 계약적합의무”, 「무역학회지」 제27권 제3호, 무역학회.
- _____, (2003),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물품검사시기”, 「무역상무연구」 제20권, 한국무역상무학회.
- _____, · 이병문, (2008),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매도인의 계약적합성물품 인도 의무에 관한 비교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7권, 한국무역상무학회.
- 이천수, (2002), “CISG상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 「국제무역연구」 제8권 제1호, 한국무역통상학회.
- _____, (2002), “국제물품매매협약에 관한 유엔 협약상 매도인의 의무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산업경제학회.
- _____, · 노승재, (2005),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3호, 국제지역학회.
- _____, · 이양기, (2002), “비엔나협약에서 계약위반에 대한 당사자의 구제권

- 에 관한 연구”, 「동서논문집」 제8집, 동서대학교.
- _____, · _____, (2003), “CISG에서 당사자의 구제권 선택 및 행사상의 제 문제”, 「산업경제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산업경제학회.
- 이호선, (2004), “CISG상 구제조치에 관하여”, 「중재」 제311호, 대한상사중재원.
- 최준선, (2004), “UN국제물품매매협약의 의의와 해석원칙”, 「비교사법」 11권, 한국비교사법학회.
- _____, · 박상기, (2002), “CISG상의 계약위반과 UNIDROIT 원칙의 계약불이행에 관한 비교연구”, 「무역학회지」 제27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 하강현, (2007), “국제물품매매에서 물품의 일치성에 관한 고찰”, 「무역학회지」 제32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 _____, (2008), “국제물품매매에서 이행기전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권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제3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 _____, (1998),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이행기전의 계약해제에 관한 고찰”, 「국제거래법연구」 제7집, 국제거래법학회.
- _____, (1998),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의 이행정지에 관한 고찰”, 「무역학회지」 제23권 제2호, 무역학회.
- 허해관, (2009), “국제물품매매협약상 상대방의 계약위반이 예견됨에 따른 대응수단”, 「무역학회지」 제34권 제2호, 무역학회.

2. 국외문헌

1) 단행본

- Andersen, C., (2007), *Uniform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Sales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 Bianca, C. M. & Bonnel, M. J., ed,(1987),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The 1980 Vienna Sales Convention*, Giuffrè.
- Bonnel, M. J.,(1994), *An International Restatement of Contract Law :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Transnational Juris Publications.
- Bortolotti, F., (2008), *Drafting and Negotiatio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 Practical Guide*, ICC Publication No. 671.
- DiMatteo, L., (2005), *International Sales Law- A Critical Analysis of CISG Jurisprud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derlein, F. & D. Maskow, (1992), *International Sales Law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Oceana Publication.
- Flechtner, H. M., et al, editors, (2008), *Drafting Contracts under the CISG*, Oxford University Press.
- Ferrari, F., Flechtner, H., & Brand, R. A., ed.(2004), *The Draft UNCITRAL Digest and Beyond: Cases Analysis and Unresolved Issues in the U.N. Sales Convention*, Sellier European Law Publishers.

- Gabriel, H., (1994), *Practitioner's Guide to The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and the Uniform Commercial Code(UCC)*, Oceana Publications.
- Goode, R., (2007), *Transnational Commercial Law - Text, Cases, and Materials*, Oxford University Press.
- Huber, P., & A. Mullis, (2007), *The CISG - A new textbook for students and practitioners*, Sellier. European law publishers.
- Houtte, H. V., (2002), *The Law of International Trade*, Sweet & Maxwell.
- Honnold, J. O., (1989), *Documentary History of the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Kluwer.
- Honnold, J. O., (1999),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3rd Edi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 Janssen, A. & Meyer, O.(eds.), (2009), *CISG Methodology*, Sellier European Law Publishers.
- Kritzer, A. H., (1990), *Guide to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Kluwer law and Texatioin Publishers.
- Pace International Law Review, (1999), *Review of the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1998*, Kluwer Law International.
- Pace International Law Review, (2002), *Review of the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2000-2001*, Kluwer Law International.
- Schlechtriem, P. & I. Schwenzer, editors, (2005), *Commentary on the UN*

-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second ed.*,
Clarendon Press.
- Schwenzer I., & C. Fonntoulakis, (2007), *International Sales Law*,
Routledge-Cavendish Publishing.
- Spanogle, J. A. & Winship, P., (2000), *International Sales Law A
Problem-Oriented Coursebook*, Thomson West.
- Stone, R., (1997), *Principles of Contract Law*, Cavendish Publishing
Limited.
- Treitel, G. H., (1988),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A Comparative
Account*, Oxford, Clarendon Press.
- UNCITRAL, (2008), *Digest of Case Law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nd ed. United
Nations Publication.
- UNIDROIT, (2004),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2004*.
- Zeller. B. (2007), *CISG and the Unification of International Trade Law*,
Routledge-Cavendish Publishing.

2) 연구논문 및 자료

- Babiak, A. (1992), "Defining 'Fundamental Breach'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Temple Int'l & com. L. J.* Vol 6.
- Bergsten, E. E. & A. J., Miller, (1979), "The Remedy of Reduction of
Pric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 27.
- Bridge, M. G., (2005), "Issues Under Articles 64, 72, 73 of the United

-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Journal of Law and Commerce*, vol. 25.
- Corney, G., (1993), "Obligations and Remedies Under the 1980 Vienna Sales Convention", *Queensland Law Society Journal*, vol. 23.
- Enderlein, F., (1996), "Right and Obligations of the Seller under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Peter Sarcevic & Paul Volken(Ed.), International Sale of Goods, Dubrovnik Lectures*, Oceana Publications, Inc., New York.
- _____, & Maskow, (1992), "International Sales Law ; United Nations Conventi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Oceana Publications.
- Fumston, M. P., (1992), "Breach of Contract",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 40.
- Garro, A. M., (1995), "Gap-Filling Role of the UNIDROIT Principles in International Sales Law: Some Comments on the Interplay Between The Principles and the CISG", *Tulane Law Review*, Vol. 69.
- Holdsworth, J. L., (2001), "Practical Applicat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http://www.cisg.law.pace.edu/cisg/biblio/holdsworth.html>.
- Katz, A. W., (2005),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Under the CISG",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Vol. 25.
- Kazimierska, A., (1999), "The remedy of Avoidance under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http://www.cisg.law.pace.edu/biblio/Kazimierska.html>.

- Keily, T., (1999), "Good Faith and the Vienna Convention of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Vindobona Journal on International Law Arbitration (I)*, Pace Essay Submission.
- Koneru, P., (1997), "The International Interpret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n Approach Based on General Principles", *Minnesota Journal of Global Trade*, Vol. 6.
- Knapp, V., (1987), "Damages Based on Current Price",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the 1980 Vienna Sales Convention, C.M. Bianca & C.M. Bonnel, ed., Giuffre, Milan.
- Lee, R .G.,(1993),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Journal of Business Law*, vol. 132.
- Liu, C. (2005), "Suspension or Avoidance Due to Anticipatory Breach: Perspectives from Arts. 71/72 CISG, the UNIDROIT Principles, PECL and Case Law" Renmin University of China.
- Lorenz, A., (2010), "Fundamental Breach under the CISG", www.cisg.law.pace.edu/cisg/biblio/lorenz.
- Nicolas, B., (1989), "The Vienna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ales", *Law Quarterly Review*, Vol. 105.
- Peter, A. P., (2002), "The Remedies of Specific Performance, Price Reduction and Additional Time (Nachfrist) under the CISG: Are these worthwhile changes or additions to English Sales Law", *Pace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12.
- Schlechtriem, P., (1984), "From the Hague to Vienna - Progress in

- Unification of the Law of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The Transnational Law of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N. Horn & C. M. Schmitthoff ed.,
- Schlechtriem, P., (2007), "Calculation of Damages in the Event of Anticipatory Breach under the CISG" <http://www.cisg.law.pace.edu/cisg/biblio/schlechtriem20.html>.
- Sieg, E., (2007), "Anticipatory Breach : Remarks on the Manner in Which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may be Used to Interpret or Supplement Articles 71 and 72 of the CISG" in : *An International Approach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1980) as Uniform Sales Law*, Cambridge, Felemegas, J. ed.
- Silveira, M. A., (2005), "Anticipatory Breach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Nordic Journal of Commercial Law*, vol. 2.
- Sondahl, E., (2003), "Understanding the Remedy of Price Reduction – A Means to Fostering a More Uniform Applic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Journal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and Arbitration*.
- Tallon, D., (1992), "Damages, Exemption Clause and Penalties",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 40.
- Torsello, M., (2005), "Substantive and Jurisdictional Aspects of International Contract Remedies: A Comment on Avery Katz's

-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Under the CISG'',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Vol. 25.
- Vilus, J., (1986), "Provisions Common to the Obligations of the Seller and the Buyer" i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Dubronik Lectures*, Oceana Publications, Peter S. & Paul V. ed.
- Ziegler, A., (2006), "The Right of Suspension and Stoppage in Transit (and Notification Thereof)", *Journal of Law and Commerce*, Vol. 25.
- Australia : Supreme Court of Queensland, Civil Jurisdiction 10680 of 1996, 17/11/2000, Unilex.
- Austria : Schedsgericht der Börse für Landwirtschaftlich Produkte, Wien, S2/97, 10/12/1997, Unilex.
- Belarus : Belarusi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24/13-95, 05/10/1995, Unilex.
- Belgium : Rechtbank van Koophandel, Hasselt, AR 3641/94, 01/03/1995, Unilex.
- Canada : British Columbia Supreme Court, C993594, 21-08-2003, Unilex.
- Germany : Amtsgericht Frankfurt am Main, 34 C 1074/90-91, 31/01/1991, Unilex.
- Germany : Bundesgerichtshof, XZR 111/64, 27/11/2007, Unilex.
- ICC : ICC Court of Arbitration, 8786, 00/01/1997, Unilex.
- ICC : ICC Court of Arbitration, 9887, 00/08/1999, Unilex.
- ICC : ICC Court of Arbitration, 11849, 00/00/2003, Unilex.
- Mexico : Centro de Arbitraje de Mexico, 30/11/2006, Unilex.
- Netherlands : Netherlands Arbitration Institute, 2319, 15/10/2002, Unilex.

Switzerland : Handelsrecht Zurich, 950347, 05/02/97, Unilex.

United States : U.S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08
Civ 1687, 29/05/2009, Unilex.

3. 관련 Web Site

Global Sales Law <http://www.globalsaleslaw.org>

Pace University <http://cisg.law.pace.edu>

UNCITRAL <http://www.uncitral.org>

UNIDROIT <http://www.unidroit.org>

UNILEX <http://www.unilex.info>



<부록> CISG 체약국목록 78개국 2011년01월 현재

체약국	서명일자	가입일자	발효일자
가나	1980-04-11		
가봉		2004-12-15	2006-01-01
그루지야		1994-08-16	1995-09-01
그리스		1998-01-12	1999-02-01
기니		1991-01-23	1992-02-01
네덜란드	1981-05-29	1990-12-13	1992-01-01
노르웨이	1981-05-26	1988-07-20	1989-08-01
뉴질랜드		1994-09-22	1995-10-01
대한민국		2004-02-17	2005-03-01
덴마크	1981-05-26	1989-02-14	1990-03-01
도미니카 공화국		2010-06-07	2011-07-01
독일	1981-05-26	1989-12-21	1991-01-01
라이베리아		2005-09-16	2006-10-01
라트비아		1997-07-31	1998-08-01
러시아 연방		1990-08-16	1991-09-01
레바논		2008-11-21	2009-12-01
레소토	1981-06-18	1981-06-18	1988-01-01
루마니아		1991-05-22	1992-06-01
룩셈부르크		1997-01-30	1998-02-01
리투아니아		1995-01-18	1996-02-01
마케도니아		2006-11-22	1991-11-17
멕시코		1987-12-29	1989-01-01
모리타니		1999-08-20	2000-09-01
몬테네그로		2006-10-23	2006-06-03
몰도바		1994-10-13	1995-11-01
몽골		1997-12-31	1999-01-01
미국	1981-08-31	1986-12-11	1988-01-01
베네수엘라	1981-09-28		
벨기에		1996-10-31	1997-11-01
벨라루스		1989-10-09	1990-11-01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1994-01-12	1992-03-06

불가리아		1990-07-09	1991-08-01
브룬디		1998-09-04	1999-10-01
세르비아		2001-03-12	1992-04-27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2000-09-12	2001-10-01
스웨덴	1981-05-26	1987-12-15	1989-01-01
스위스		1990-02-21	1991-03-01
스페인		1990-07-24	1991-08-01
슬로바키아		1993-05-28	1993-01-01
슬로베니아		1994-01-07	1991-06-25
시리아		1982-10-19	1988-01-01
싱가포르	1980-04-11	1995-02-16	1996-03-01
아르메니아		2008-12-02	2010-01-01
아르헨티나		1983-07-19	1988-01-01
아이슬란드		2001-05-10	2002-06-01
알바니아		2009-05-13	2010-06-01
에스토니아		1993-09-20	1994-10-01
에콰도르		1992-01-27	1993-02-01
엘살바도르		2006-11-27	2007-12-01
오스트레일리아		1988-03-17	1989-04-01
오스트리아	1980-04-11	1987-12-29	1989-01-01
온두라스		2002-10-10	2003-11-01
우간다		1992-02-12	1993-03-01
우루과이		1999-01-25	2000-02-01
우즈베키스탄		1996-11-27	1997-12-01
우크라이나		1990-01-03	1991-02-01
이라크		1990-03-05	1991-04-01
이스라엘		2002-01-22	2003-02-01
이집트		1982-12-06	1988-01-01
이탈리아	1981-09-30	1986-12-11	1988-01-01
일본		2008-07-01	2009-08-01
잠비아		1986-06-06	1988-01-01
중국	1981-09-30	1986-12-11	1988-01-01
체코 공화국		1993-09-30	1993-01-01
칠레	1980-04-11	1990-02-07	1991-03-01
캐나다		1991-04-23	1992-05-01

콜롬비아		2001-07-10	2002-08-01
쿠바		1994-11-02	1995-12-01
크로아티아		1998-06-08	1991-10-08
키르기스스탄		1999-05-11	2000-06-01
키프로스		2005-03-07	2006-04-01
터키		2010-07-07	2011-08-01
파라과이		2006-01-13	2007-02-01
페루		1999-03-25	2000-04-01
폴란드	1981-09-28	1995-05-19	1996-06-01
프랑스	1981-08-27	1982-08-06	1988-01-01
핀란드	1981-05-26	1987-12-15	1989-01-01
헝가리	1980-04-11	1983-06-16	1988-01-01

http://www.uncitral.org/uncitral/en/uncitral_texts/sale_goods/1980CISG_status.html

의 자료를 연구자가 재구성하였음. 가나다순.

